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 | | | |
|---|------|--|------------------------|
| 선 | 기관의장 | | |
| 람 | | | 제2005호 2026. 6. 15.(월) |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고시 제9호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92번길 11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4호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1·2·3·4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5호 도시관리계획(불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20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경과조치 고시 ——— 12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42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23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과 [032-560-4143]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2005호 2026. 6. 15.(월)

차 례

- | | |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91호 |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 인가 공람공고 | ———— 153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92호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 ———— 156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95호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160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고시 제202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92번길 1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 6. 15.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 내용

| 공동주택 명칭 | 공동주택 소재지 | 금연구역 지정번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 | 금연구역 지정일자 |
|----------------|----------------------|-----------|----------------------|--------------|
| 검단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92번길 11 | 제 100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26년 6월 15일 |

※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2026년 9월 15일부터 실시 (과태료 금액 : 5만원)

○ 내용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0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114호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1·2·3·4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1·2·3·4단계)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476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6.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41-12번지 일원

I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금회 변경되는 부분만 표시하며 인천검단지구 준공1·2·3·4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는 별도 첨부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규모 |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광로 | 3 | 23 | 40 (40~52) | 주간선도로 | 7,167 (2,138) | 동측행정구역계 (원당동 8-2답) | 중 2-495 (마전동 499-3도) | 일반도로 | | 인고118 (98.6.12) | 교통광장 81 중복결정 |
| 변경 | 광로 | 3 | 23 | 40 (40~52) | 주간선도로 | 7,167 (2,138) | 동측행정구역계 (원당동 8-2답) | 중 2-495 (마전동 499-3도) | 일반도로 | | 인고118 (98.6.12) | 교통광장 81 중복결정 |
| 기정 | 소로 | 1 | 205 | 10 | 특수도로 | 48 | 광 3-23 (원당동 1044도) | 중 2-460 (원당동 1039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변경 | 소로 | 1 | 205 | 10 | 국지도로 | 48 | 광 3-23 (원당동 1044도) | 중 2-460 (원당동 1039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광로 3-23 | 광로 3-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원당동 1044번지 (원당동 1041-13번지 일원) · 일부 폭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 75.0m - 폭원 : 42 ~ 45m(기정) → 45m(변경) (면적: 증 184.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당대로 접속부 차로운영개선을 통한 적정 가감속완화차로 확보 |
| 소로 1-205 | 소로 1-2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원당동 1041-12번지 · 기능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도로 → 국지도로 · 사용형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전용도로 → 일반도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 |

(나) 자동차정류장(변경 없음)

(2) 공간시설(변경)

(가) 광장(변경 없음)

(나) 공원(변경 없음)

(다)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m ²)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1 | 녹지 | 경관 녹지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1-13공 | 3,728.4 | 감)184.2 | 3,544.2 | 국고2015-760 (15.10.27) | |

■ 녹지 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1 | 녹지 | · 위치: 원당동 1041-13번지 · 도로폭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 3,728.4m ² → 3,544.2m ² 감) 184.2m ² | · 원당대로 접속부 차로운영개선을 통한 적정 가감속완화차로 확보를 위한 녹지 면적 축소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4) 방재시설(변경 없음)

(5) 환경기초시설(변경 없음)

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IV.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1·2·3·4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구역명 | 위 치 | | 면 적(m ²) | | 비 고 |
|------------------------|--------------------------------|---------------------------|----------------------|-------------|-----|
| | 전체 | 1,2,3,4단계 | 전체 | 1,2,3,4단계 | |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불로동, 원당동, 마전동 일원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일원 | 11,109,137.3 | 6,148,168.1 | -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1-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1-1-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구 분 | 면적(m ²) | 구성비(%) | 비고 | |
|------|---------------------|-------------|------|--|
| 합 계 | 6,148,168.1 | 100.0 | | |
| 주거지역 | 소 계 | 4,344,225.6 | 70.7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60,474.9 | 1.0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11,067.0 | 5.1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2,678.6 | 1.5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212,054.8 | 52.2 | |
| | 준주거지역 | 667,950.3 | 10.9 | |
| 상업지역 | 소 계 | 309,839.8 | 5.0 | |
| | 일반상업지역 | 309,839.8 | 5.0 | |
| 녹지지역 | 소 계 | 1,494,102.7 | 24.3 | |
| | 보전녹지지역 | 305,982.2 | 5.0 | |
| | 자연녹지지역 | 1,188,120.5 | 19.3 | |

2-1-1-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적(m ²)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1 |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 인천시 서구 원당동 산82-1입 일원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 제1항에 따름 | 18,383 | 국고제2021-1171호 (21.10.26.) | |

2-1-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1-2-1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광로 | 3 | 23 | 40 (40~52) | 주간선도로 | 7,167 (2,138) | 동측행정구역계 (원당동 8-2답) | 중 2-495 (마전동 499-3도) | 일반도로 | | 인고118 (98.6.12) | 교통광장 81 중복결정 |
| 변경 | 광로 | 3 | 23 | 40 (40~52) | 주간선도로 | 7,167 (2,138) | 동측행정구역계 (원당동 8-2답) | 중 2-495 (마전동 499-3도) | 일반도로 | | 인고118 (98.6.12) | 교통광장 81 중복결정 |
| 기정 | 대로 | 2 | 61 | 30 (20~39) | 주간선도로 | 11,972 (1,364) | 평동 6-3 시계 (당하동 966도) | 광 3-23 (당하동 859-1도) | 일반도로 | | 인고94-172 (’94.4.15) | |
| 기정 | 대로 | 2 | 78 | 33.5 (33.5~54.3) | 주간선도로 | 4,153 (5,496) | 남측 지구계 (당하동 478-1답) | 광 3-27 (불로동 505-6답)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3호 문화공원 중복결정 |
| 기정 | 대로 | 3 | 154 | 26.5 (26.5~29.5) | 보조간선도로 | 465 | 대 2-78 (원당동 1017도) | 동측 지구계 (원당동 산1-1입)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408 | 20 (20~22) | 집산도로 | 1,571 | 대 2-78 (당하동 1277도) | 중 1-413 (원당동 1087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하천1 중복결정 |
| 기정 | 중로 | 1 | 409 | 20 | 집산도로 | 379 | 대 2-78 (당하동 1277도) | 중 1-411 (당하동 1273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410 | 20 | 국지도로 | 332 | 중 1-411 (당하동 1273도) | 중 1-513 (당하동 1271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411 | 23.5 (23.5~30.5) | 보조간선도로 | 1,287 | 광 3-23 (당하동 1228도) | 대 2-61 (당하동 661-17대)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하천2 중복결정 |
| 기정 | 중로 | 1 | 412 | 23.5 | 보조간선도로 | 541 | 대 2-78 (당하동 1238도) | 중 1-411 (당하동 1234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413 | 23.5 (23.5~30) | 보조간선도로 | 1,061 | 대 2-78 (당하동 1238도) | 대 3-153 (원당동 2-8답)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하천1 중복결정 중로 2-944호선 중복결정 |
| 기정 | 중로 | 1 | 414 | 20 (20~26) | 집산도로 | 470 | 광 3-23 (원당동 1036도) | 중 1-413 (원당동 1087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하천1 중복결정 |
| 기정 | 중로 | 1 | 415 | 21 | 집산도로 | 304 | 대 2-78 (원당동 1017도) | 중 1-418 (원당동 1025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416 | 20 (20~21) | 집산도로 | 434 | 대 2-78 (원당동 1017도) | 중 1-417 (원당동 1019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중로 | 1 | 417 | 23.5 (23.5-29.5) | 보조간선도로 | 994 | 광 3-23 (원당동 1044도) | 대 2-78 (원당동 1017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418 | 23.5 (23.5-30.6) | 집산도로 | 538 | 광 3-23 (원당동 1036도) | 중 1-421 (원당동 1023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419 | 23.5 (20.25-26.5) | 집산도로 | 1,179 | 동측지구계 (원당동 11-2답) | 대 3-154 (원당동 988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420 | 20 | 집산도로 | 31 | 중 1-419 (원당동 1013도) | 대 김포3-8 (원당동 1010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421 | 20 (20-26) | 집산도로 | 364 | 대 2-78 (원당동 1017도) | 중 1-419 (원당동 1013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422 | 20 | 집산도로 | 393 | 대 2-78 (원당동 1017도) | 중 1-417 (원당동 1019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423 | 26.5 | 집산도로 | 436 | 중 1-421 (원당동 1023도) | 대 3-154 (원당동 988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425 | 20 (20-23) | 국지도로 | 835 | 중 1-426 (불로동 1012도) | 중 1-426 (불로동 1012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426 | 23.5 (20-35) | 보조간선도로 | 1,703 | 대 2-78 (불로동 1013도) | 북측지구계 (불로동 192-2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427 | 20 (20-23) | 국지도로 | 765 | 중 1-429 (불로동 555전) | 중 1-426 (불로동 1012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428 | 23.5 (23.5-29.5) | 보조간선도로 | 970 (637) | 중 1-426 (불로동 1012도) | 중 1-429 (불로동 531-6답)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502 | 20 | 집산도로 | 606 | 광 3-23 (마전동 520-5도) | 대 2-61 (당하동 847-1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503 | 20 | 집산도로 | 610 | 대 2-61 (당하동 835-4구) | 남측지구계 (당하동 1003-9구)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512 | 23.5 (20.5-29.5) | 보조간선도로 | 1,368 (603) | 중 1-411 (당하동 1234도) | 중1-504 (당하동 750-11잡)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1 | 513 | 21 | 집산도로 | 614 | 대 2-61 (당하동 656-2답) | 중1-512 (당하동 1255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449 | 16 (16-19) | 집산도로 | 436 | 대2-78 (당하동 1277도) | 중 1-408 (당하동 1307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하천1 중복결정 |
| 기정 | 중로 | 2 | 450 | 16 | 집산도로 | 386 | 대2-78 (당하동 1277도) | 중 2-449 (당하동 1315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451 | 16 (16-18) | 집산도로 | 467 | 대2-78 (당하동 1277도) | 중 1-411 (당하동 1273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452 | 16 | 국지도로 | 314 | 중 1-412 (당하동 1244도) | 중 2-451 (당하동 1319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453 | 15 | 국지도로 | 483 | 중 1-413 (원당동 1087도) | 중1-414 (원당동 1062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하천1 중복결정 |
| 기정 | 중로 | 2 | 454 | 16.5 | 집산도로 | 435 | 대2-78 (원당동 1017도) | 중 1-414 (원당동 1062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455 | 16.5 | 집산도로 | 85 | 광 3-23 (원당동 1036도) | 중 2-454 (원당동 1066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456 | 16.5 | 집산도로 | 266 | 대2-78 (당하동 1238도) | 광 3-23 (당하동 1228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중로 | 2 | 457 | 16.5 | 국지도로 | 238 | 중 1-418 (원당동 1025도) | 중 2-458 (원당동 1029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458 | 16.5 | 집산도로 | 167 | 광 3-23 (원당동 1036도) | 중 1-415 (원당동 1027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459 | 16.5 | 국지도로 | 273 | 중 2-457 (원당동 1034도) | 중 2-458 (원당동 1029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460 | 16.5 | 국지도로 | 515 | 중 1-416 (원당동 1037도) | 중 1-416 (원당동 1037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461 | 16.5 | 국지도로 | 214 | 중 2-460 (원당동 1039도) | 중 2-460 (원당동 1039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462 | 15 | 국지도로 | 248 | 중 1-419 (원당동 1013도) | 동측지구계 (원당동 1010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463 | 19 | 국지도로 | 423 | 중 1-425 (불로동 1003도) | 동측지구계 (불로동 1004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464 | 16 | 국지도로 | 458 | 중 1-425 (불로동 1003도) | 동측지구계 (불로동 966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465 | 16 | 국지도로 | 382 | 중 1-426 (불로동 1012도) | 중 2-464 (불로동 966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466 | 16 | 국지도로 | 330 | 중 1-427 (불로동 974도) | 중 1-428 (불로동 968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496 | 16 | 국지도로 | 213 | 중1-502 (마전동 203-1입) | 서측지구계 (당하동 910-4장)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498 | 15 | 국지도로 | 489 | 중1-503 (당하동 산92-1입) | 남측지구계 (당하동 768-1답)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819 | 15 | 국지도로 | 291 | 중1-503 (당하동 805-1도) | 중2-498 (당하동 765-33대)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820 | 15 | 국지도로 | 206 | 대2-61 (당하동 834-5장) | 중2-498 (당하동 772-7입)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823 | 16.5 | 국지도로 | 485 | 중 1-426 (원당동 1012도) | 중 2-823 (원당동 1010도) | 일반도로 | | 국고19-967 (20.1.16) | |
| 기정 | 중로 | 2 | 824 | 16.5 | 국지도로 | 607 | 중 1-426 (불로동 1012도) | 불로동 1-427 (불로동 1007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2 | 825 | 15 | 국지도로 | 167 | 4호 경관녹지 (당하동 765-1답) | 중 2-498 (당하동 772-7입) | 일반도로 | | 국고19-967 (20.1.16) | |
| 기정 | 중로 | 3 | 551 | 12.5 | 국지도로 | 262 | 중 2-450 (당하동 1285도) | 소3-242 (당하동 1286-12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3 | 552 | 12.5 | 국지도로 | 300 | 중 1-413 (당하동 1279도) | 중 2-450 (당하동 1285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3 | 553 | 13 | 국지도로 | 326 | 중 3-555 (당하동 1245도) | 중 3-553 (당하동 1247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3 | 554 | 13 | 국지도로 | 20 | 중 3-555 (당하동 1245도) | 중 3-553 (당하동 1247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3 | 555 | 12.5 | 국지도로 | 262 | 중 1-412 (당하동 1244도) | 중 1-411 (당하동 1234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3 | 556 | 13 | 국지도로 | 22 | 중 1-419 (원당동 1013도) | 중3-557 (원당동 996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3 | 557 | 13 | 국지도로 | 183 | 중 2-462 (원당동 994도) | 소 3-239(원당) (원당동 1009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중로 | 3 | 559 | 13 | 국지도로 | 206 | 중 1-426 (불로동 1012도) | 불로동 1-427 (불로동 974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3 | 572 | 12 | 국지도로 | 180 | 중1-502 (마전동 522-5대) | 소 1-209(마전) (마전동 545-4대)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
| 기정 | 중로 | 3 | 576 | 13.5 | 국지도로 | 295 | 북측지구계 (불로동 958도) | 소 1-203(불로) (불로동 960도) | 일반도로 | | 국고19-967 (20.1.16) | |
| 기정 | 소로 | 1 | 209 | 10 | 국지도로 | 162 | 22호 경관녹지 (마전동 542답) | 22호 경관녹지 (마전동 산81-14입)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마전 |
| 기정 | 소로 | 1 | 201 | 11 | 국지도로 | 227 | 중 1-426 (불로동 1012도) | 중 1-425 (불로동 1003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불로 |
| 기정 | 소로 | 1 | 202 | 11 (8~11) | 국지도로 | 216 | 소 2-217(불로) (불로동 999-11도) | 중 3-559 (불로동 992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불로 |
| 기정 | 소로 | 1 | 203 | 11 | 국지도로 | 82 | 중 1-426 (불로동 1012도) | 중 3-576 (불로동 958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불로 |
| 기정 | 소로 | 1 | 204 | 11 | 국지도로 | 203 | 중 3-559 (불로동 922도) | 소 2-205(불로) (불로동 990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불로 |
| 기정 | 소로 | 1 | 206 | 11 | 국지도로 | 224 | 중 1-429 (불로동 556-6전) | 중 1-427 (불로동 974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불로 |
| 기정 | 소로 | 1 | 201 | 10 | 특수도로 | 106 | 원당동 1082-3대 (원당동 1082-3대) | 4호 어린이공원 (원당동 1067-6공)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하천1 증복결정 |
| 기정 | 소로 | 1 | 202 | 10 | 특수도로 | 56 | 당하동 1241-1대 (당하동 1241-1대) | 2호 일반광장 (당하동 1235-5잡)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하천2 증복결정 |
| 기정 | 소로 | 1 | 203 | 10 | 국지도로 | 23 | 중 2-456 (당하동 1236도) | 2호 일반광장 (당하동 1235-5잡)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1 | 204 | 10 | 특수도로 | 108 | 13호 경관녹지 (당하동 1235-11공) | 광 3-23 (당하동 1228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1 | 205 | 10 | 특수도로 | 48 | 광 3-23 (원당동 1044도) | 중 2-460 (원당동 1039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변경 | 소로 | 1 | 205 | 10 | 국지도로 | 48 | 광 3-23 (원당동 1044도) | 중 2-460 (원당동 1039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1 | 206 | 10 | 특수도로 | 193 | 중 2-460 (원당동 1039도) | 3호 일반광장 (원당동 1043잡)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1 | 207 | 10 | 특수도로 | 41 | 광 3-23 (원당동 1044도) | 중 2-460 (원당동 1039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1 | 208 | 10 | 특수도로 | 50 | 대 2-78 (원당동 1017도) | 중 2-460 (원당동 1039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1 | 209 | 10 | 특수도로 | 93 | 중 2-458 (원당동 1029도) | 대 2-78 (원당동 1017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1 | 210 | 10 | 특수도로 | 94 | 중 1-419 (원당동 1013도) | 대 (김포)3-8 (원당동 1010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1 | 214 | 10 | 특수도로 | 160 | 중 2-460 (원당동 1039도) | 중 1-417 (원당동 1019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8-335 (18.06.18) | 원당 |
| 기정 | 소로 | 1 | 215 | 10 | 국지도로 | 22 | 중 2-824 (불로동 1007도) | 소 1-216 (불로동 1006-5도) | 일반도로 | | 국고19-967 (20.1.16) | 원당 |
| 기정 | 소로 | 1 | 216 | 10 | 특수도로 | 19 | 대 2-78 (불로동 1013도) | 소 1-215(원당) (불로동 1006-4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9-967 (20.1.16) | 원당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소로 | 1 | 217 | 10 | 특수도로 | 26 | 대 2-78 (블로동 1013도) | 중 2-824 (블로동 1007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9-967 (20.1.16) | 원당 |
| 기정 | 소로 | 1 | 218 | 10 | 특수도로 | 14 | 대 2-78 (블로동 1013도) | 중 2-823 (블로동 1009-3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9-967 (20.1.16) | 원당 |
| 기정 | 소로 | 1 | 219 | 10 | 특수도로 | 60 | 중1-414 (원당동 1062도) | 7호 어린이공원 (원당동 1065-1공) | 보행자도로 | | 국고19-967 (20.1.16) | 원당 |
| 기정 | 소로 | 1 | 201 | 10 | 국지도로 | 13 | 대 2-61 (당하동 661-12도) | 남측지구계 (당하동 660-4답)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1 | 202 | 11 | 국지도로 | 63 | 중 1-408 (당하동 1307도) | 동측지구계 (당하동 416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1 | 203 | 11 | 국지도로 | 140 | 대2-78 (당하동 1277도) | 6호 소공원 (당하동 1276-3공)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1 | 204 | 12.5 | 국지도로 | 161 | 대2-78 (당하동 1238도) | 중 1-412 (당하동 1244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1 | 205 | 11 | 국지도로 | 84 | 중 2-451 (당하동 1319도) | 2호 어린이공원 (당하동 1318-9공)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1 | 206 | 10 | 특수도로 | 149 | 중 1-411 (당하동 1273도) | 4호 근린공원 (당하동 1272-1공)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1 | 208 | 11 (8~11) | 국지도로 | 74 |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당하동 391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1 | 209 | 11 | 국지도로 | 733 | 중 1-411 (당하동 1234도) |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당하동 354답)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1 | 211 | 11 | 국지도로 | 195 | 중1-503 (당하동 789대) | 중2-819 (당하동 794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1 | 212 | 11 | 국지도로 | 144 | 중1-503 (당하동 788대) | 당하동 820-2대 (당하동 820-2대)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1 | 213 | 10 | 특수도로 | 65 | 광 3-23 (당하동 1228도) |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9-967 (20.1.16)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01 | 8 | 국지도로 | 63 | 소 1-202(블로) (블로동 998도) | 소 2-202(블로) (블로동 994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블로 |
| 기정 | 소로 | 2 | 202 | 8 | 국지도로 | 67 | 중 3-559 (블로동 992도) | 소 1-202(블로) (블로동 998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블로 |
| 기정 | 소로 | 2 | 203 | 8 | 국지도로 | 60 | 소 2-205(블로) (블로동 990도) | 소 1-204(블로) (블로동 980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블로 |
| 기정 | 소로 | 2 | 204 | 8 | 국지도로 | 60 | 소로 2-205(블로) (블로동 990도) | 소 1-204(블로) (블로동 980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블로 |
| 기정 | 소로 | 2 | 205 | 8 | 국지도로 | 283 | 중 3-559 (블로동 992도) | 소 3-207(블로) (블로동 979-1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블로 |
| 기정 | 소로 | 2 | 206 | 8 | 국지도로 | 60 | 소 2-205(블로) (블로동 990도) | 소 1-204(블로) (블로동 980)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블로 |
| 기정 | 소로 | 2 | 207 | 8 | 국지도로 | 60 | 소 2-205(블로) (블로동 990도) | 소 1-204(블로) (블로동 980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블로 |
| 기정 | 소로 | 2 | 208 | 8 | 특수도로 | 94 | 중 3-576 (블로동 958도) | 중 1-426 (블로동 1012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블로 |
| 기정 | 소로 | 2 | 209 | 8 | 국지도로 | 249 | 중 1-426 (블로동 194-9도) | 소 2-209(블로) (블로동 961-7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블로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소로 | 2 | 210 | 8 | 국지도로 | 24 | 소 2-209(불로) (불로동 961-7도) | 북측지구계 (불로동 196-14입)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불로 |
| 기정 | 소로 | 2 | 217 | 8 | 특수도로 | 10 | 중 3-559 (불로동 992도) | 소 1-202(불로) (불로동 258-1전) | 보행자도로 | | 국고-18-335 (18.06.18) | 불로 |
| 기정 | 소로 | 2 | 201 | 8 | 국지도로 | 443 | 중 1-414 (원당동 1062도) | 중2-201(원당) (원당동 1080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03 | 8 | 국지도로 | 68 |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04 | 8 | 국지도로 | 61 |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05 | 8 | 국지도로 | 50 |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07 | 8 (8~11) | 국지도로 | 383 | 광 3-23 (당하동 1044도) | 소 2-208(원당) (원당동 1057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08 | 8 | 국지도로 | 126 |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원당동 산87묘)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09 | 8 | 국지도로 | 89 |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10 | 8 | 국지도로 | 73 |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11 | 8 | 국지도로 | 53 |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12 | 8 | 국지도로 | 18 |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원당동 산87묘)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15 | 8 | 국지도로 | 246 | 중3-557 (원당동 996도) | 중 2-462 (원당동 994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16 | 8 | 국지도로 | 72 | 중3-557 (원당동 996도) | 소 2-215(원당) (원당동 999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17 | 8 | 국지도로 | 101 | 소 2-216(원당) (원당동 1006도) | 소 2-219(원당) (원당동 998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18 | 8 | 국지도로 | 84 | 소 2-215(원당) (원당동 999도) | 소 2-219(원당) (원당동 998도) | 보행자 우선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19 | 8 | 국지도로 | 153 | 중 3-557 (원당동 996도) | 소 2-215(원당) (원당동 999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20 | 8 | 국지도로 | 225 | 중 2-462 (원당동 994도) | 소 2-221(원당) (원당동 990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21 | 8 | 국지도로 | 268 | 중 2-462 (원당동 994도) | 소 2-220(원당) (원당동 992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22 | 8 | 국지도로 | 20 | 중2-454 (원당동 1066도) |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23 | 8 | 국지도로 | 20 | 중2-454 (원당동 1066도) |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2 | 201 | 8 | 국지도로 | 110 | 소 2-202(당하) (당하동 1296도) | 소 2-204(당하) (당하동 1294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02 | 8 | 국지도로 | 91 | 중 2-449 (당하동 1315도) | 소 2-204(당하) (당하동 1296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소로 | 2 | 203 | 8 | 국지도로 | 108 | 소 2-202(당하) (당하동 1296도) | 소 2-204(당하) (당하동 1303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04 | 8 | 국지도로 | 137 | 중 2-450 (당하동 1285도) | 중3-551 (당하동 1287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05 | 8 | 국지도로 | 133 | 소 2-204(당하) (당하동 1294도) | 소 2-206(당하) (당하동 1294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06 | 8 | 국지도로 | 113 | 중3-551 (당하동 1287도) | 소 2-204(당하) (당하동 1296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07 | 8 | 국지도로 | 101 | 소 2-204(당하) (당하동 1303도) | 소 2-206(당하) (당하동 1294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08 | 8 | 국지도로 | 38 |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당하동 188구)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09 | 8 | 국지도로 | 61 |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원당동 332-2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10 | 8 | 국지도로 | 327 |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11 | 8 | 국지도로 | 41 | 소 2-212(당하) (당하동 1259도) |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12 | 8 | 국지도로 | 199 |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13 | 8 | 국지도로 | 42 | 소 2-212(당하) (당하동 1259도) |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14 | 8 | 국지도로 | 40 |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원당동 188-1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15 | 8 | 국지도로 | 171 |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30 | 8 | 국지도로 | 58 | 소 2-231(당하) (당하동 817답) | 소 1-212(당하) (당하동 817답)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31 | 8 | 국지도로 | 202 | 소 1-212(당하) (당하동 815답) | 소 1-212(당하) (당하동 820-4대)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32 | 8 | 국지도로 | 237 | 중2-450 (당하동 1285도) | 중2-450 (당하동 1285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2 | 238 | 8 | 국지도로 | 20 | 소 2-203(당하) (당하동 1293도) | 중 3-551 (당하동 1293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85 | 6 | 국지도로 | 357 | 중 1-502 (마전동 526-4답) | 남서측지구계 (마전동 산199-9입) | 일반도로 | | 국고19-967 (20.1.16) | 마전 |
| 기정 | 소로 | 3 | 286 | 6 (2~6) | 국지도로 | 160 | 소3-285(마전) (마전동 526-7도) | 남서측지구계 (마전동 산197-8입) | 일반도로 | | 국고19-967 (20.1.16) | 마전 |
| 기정 | 소로 | 3 | 201 | 6 | 특수도로 | 124 | 중 2-464 (불로동 966도) | 소 1-201(불로) (불로 967-4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불로 |
| 기정 | 소로 | 3 | 202 | 6 | 특수도로 | 13 | 중 1-426 (불로동 1012도) | 소 3-225(불로) (불로동 998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불로 |
| 기정 | 소로 | 3 | 203 | 6 | 특수도로 | 20 | 중 3-559 (불로동 992도) | 1호 연결녹지 (불로동 1000-1공)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불로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204 | 6 | 특수도로 | 20 | 소 2-205(불로) (불로동 990도) | 1호 연결녹지 (불로동 1000-1공)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불로 |
| 기정 | 소로 | 3 | 205 | 6 | 특수도로 | 20 | 중 1-427 (불로동 974도) | 소 1-204(불로) (불로동 980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불로 |
| 기정 | 소로 | 3 | 206 | 6 | 특수도로 | 20 | 소 2-205(불로) (불로동 990도) | 1호 연결녹지 (불로동 1000-1공)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불로 |
| 기정 | 소로 | 3 | 207 | 6 | 특수도로 | 20 | 중 1-427 (불로동 974도) | 소 2-205(불로) (불로동 990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불로 |
| 기정 | 소로 | 3 | 219 | 6 | 국지도로 | 49 | 중 1-426 (불로동 1012도) | 북측지구계 (불로동 201-3종)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불로 |
| 기정 | 소로 | 3 | 220 | 6 | 특수도로 | 44 | 소 1-206(불로) (불로동 984도) | 1호 연결녹지 (불로동 976공)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불로 |
| 기정 | 소로 | 3 | 225 | 6 | 국지도로 | 9 | 소 1-202(불로) (불로동 998도) | 소 3-202(불로) (불로동 999-6도) | 일반도로 | | 국고19-967 (20.1.16) | 불로 |
| 기정 | 소로 | 3 | 232 | 5 | 특수도로 | 140 | 중 1-425 (불로동 1003도) | 25호 어린이공원 (불로동 1002-4공) | 보행자도로 | | 국고19-967 (20.1.16) | 불로 |
| 기정 | 소로 | 3 | 246 | 3 | 특수도로 | 189 | 중 2-463 (불로동 1004도) | 7호 근린공원 (불로동 1005-3공) | 보행자도로 | | 국고24-541 (24.10.15) | 불로 |
| 기정 | 소로 | 3 | 203 | 6 | 특수도로 | 156 | 광 3-23 (원당동 337-7답) | 중 2-453 (원당동 1064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04 | 6 | 국지도로 | 13 |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 소 3-205(원당) (원당동 1067-12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05 | 6 | 특수도로 | 7 | 소 3-204(원당) (원당동 1067-13도) | 소 1-201(원당) (원당동 1067-11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06 | 6 | 특수도로 | 20 | 중 2-454 (원당동 1066도) |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08 | 6 | 특수도로 | 39 | 광 3-23 (원당동 1036도) | 중 2-457 (원당동 1034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09 | 6 | 특수도로 | 30 | 중 2-457 (원당동 1034도) | 소 3-210(원당) (원당동 1033-6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10 | 6 | 특수도로 | 191 | 중 2-459 (원당동 1032도) | 중 2-458 (원당동 1029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11 | 6 | 특수도로 | 30 | 중 2-459 (원당동 1032도) | 소 3-210(원당) (원당동 1033-6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12 | 6 | 특수도로 | 33 | 중 2-459 (원당동 1032도) | 중 1-415 (원당동 1027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13 | 6 | 특수도로 | 15 | 중 1-418 (원당동 1025도) | 소 3-214(원당) (원당동 1031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14 | 6 | 국지도로 | 17 | 중 2-459 (원당동 1032도) | 소 3-213(원당) (원당동 1030-9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15 | 6 | 특수도로 | 44 | 광 3-23 (원당동 1044도) | 중 2-460 (원당동 1039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16 | 6 | 특수도로 | 42 | 중 2-460 (원당동 1039도) | 소 1-206(원당) (원당동 1043-8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17 | 6 | 특수도로 | 32 | 중 2-461 (원당동 1042도) | 소 1-206(원당) (원당동 1043-8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18 | 6 | 특수도로 | 32 | 중 1-416 (원당동 1037도) | 중 2-461 (원당동 1042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219 | 6 | 특수도로 | 115 | 중 1-423 (원당동 1015도) | 3호 근린공원 (원당동 1016공) | 보행자도로 | | 국고18-335 (18.06.18)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20 | 6 | 특수도로 | 21 | 6호 근린공원 (원당동 986공) |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21 | 6 | 특수도로 | 15 | 소 3-239(원당) (원당동 1009도) | 소 1-210(원당) (원당동 1000-4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22 | 6 | 특수도로 | 30 | 소 2-215(원당) (원당동 999도) | 대 김포3-8 (원당동 1010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23 | 6 | 특수도로 | 40 | 소 2-217(원당) (원당동 1004도) | 소 2-218(원당) (원당동 1002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24 | 6 | 특수도로 | 40 | 중 3-557 (원당동 996도) | 소 2-217(원당) (원당동 1004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25 | 6 | 특수도로 | 22 | 중 1-419 (원당동 1013도) | 중 3-557 (원당동 996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26 | 6 | 특수도로 | 20 | 소 2-219(원당) (원당동 998도) | 중 2-462 (원당동 994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27 | 6 | 특수도로 | 20 | 중 2-462 (원당동 994도) | 소 2-220(원당) (원당동 992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28 | 6 | 특수도로 | 40 | 소 2-220(원당) (원당동 992도) | 소 2-221(원당) (원당동 990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29 | 6 | 특수도로 | 22 | 대 3-154 (원당동 988도) | 소 3-238(원당) (원당동 992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30 | 6 | 특수도로 | 115 | 중 1-423 (원당동 1015도) | 3호 근린공원 (원당동 1016공)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35 | 6 | 특수도로 | 7 | 중 2-454 (원당동 1066도) | 소 3-240(원당) (원당동 1071-4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36 | 6 | 특수도로 | 7 | 중 2-454 (원당동 1066도) | 소 3-241(원당) (원당동 1067-8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37 | 7 | 국지도로 | 67 | 대3-154 (원당동 988도) | 7호 근린공원 (원당동 986공) | 일반도로 | | 국고19-967 (20.1.16)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38 | 6 | 국지도로 | 5 | 소2-220(원당) (원당동 992도) | 소3-229(원당) (원당동 989-1도) | 일반도로 | | 국고19-967 (20.1.16)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39 | 6 | 국지도로 | 8 | 중3-557 (원당동 996도) | 소3-221(원당) (원당동 1000-10도) | 일반도로 | | 국고19-967 (20.1.16) | 원당 |
| 기정 | 소로 | 3 | 203 | 6 | 국지도로 | 13 | 소 2-201(당하) (당하동 1294도) | 소 3-246(당하) (당하동 1292-5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05 | 6 | 특수도로 | 22 | 중 3-551 (당하동 1287도) | 대 2-78 (당하동 1277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06 | 6 | 특수도로 | 15 | 중 2-450 (당하동 1285도) | 소 2-205(당하) (당하동 1294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07 | 6 | 특수도로 | 22 | 중 3-551 (당하동 1287도) | 소 2-207(당하) (당하동 1294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08 | 6 | 특수도로 | 12 | 대 2-78 (당하동 1277도) | 소 3-241(당하) (당하동 1286-3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09 | 6 | 특수도로 | 38 | 대 2-78 (당하동 1277도) | 중 3-552 (당하동 1281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10 | 6 | 특수도로 | 20 |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 5호 근린공원 (당하동 1256-10공)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230 | 4 | 특수도로 | 40 | 소 2-212(당하) (당하동 1259도) |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31 | 6 | 특수도로 | 22 | 중1-503 (당하동 789-2대) | 소 1-211(당하) (당하동 781대)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32 | 6 | 특수도로 | 29 | 소 1-211(당하) (당하동 787-2답) | 21호 경관녹지 (당하동 783-3답)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33 | 6 | 특수도로 | 199 | 중1-503 (당하동 792-2대) | 21호 경관녹지 (당하동 861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34 | 6 | 특수도로 | 7 | 소 3-235(당하) (당하동 861전) | 소 3-233(당하) (당하동 821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35 | 6 | 국지도로 | 13 | 소 1-212(당하) (당하동 820-2대) | 소 3-234(당하) (당하동 861전)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36 | 6 | 국지도로 | 8 | 소 2-231(당하) (당하동 820-11대) | 21호 경관녹지 (당하동 1003-9구) | 일반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37 | 6 | 특수도로 | 20 | 중 2-450 (당하동 1285도) | 소 2-232(당하) (당하동 1283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38 | 6 | 특수도로 | 20 | 중 2-450 (당하동 1285도) | 소 2-232(당하) (당하동 1283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5-760 (15.10.27)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39 | 5 | 특수도로 | 123 | 4호 근린공원 (당하동 1272-1공) | 중 1-513 (당하동 1271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9-967 (20.1.16)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40 | 5 | 특수도로 | 123 | 4호 근린공원 (당하동 1272-1공) | 중 1-513 (당하동 1271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8-335 (18.06.18)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42 | 6 | 국지도로 | 10 | 중3-551 (당하동 1293도) | 소3-245(당하) (당하동 1286-13도) | 일반도로 | | 국고19-967 (20.1.16)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43 | 6 | 국지도로 | 10 | 중3-553 (당하동 1247도) | 소3-247(당하) (당하동 1246-1도) | 일반도로 | | 국고19-967 (20.1.16)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45 | 6 | 특수도로 | 10 | 중2-449 (당하동 1315도) | 소3-242 (당하동 1286-12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9-967 (20.1.16)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47 | 6 | 특수도로 | 11 | 중3-555 (당하동 1245도) | 소3-243 (당하동 1251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9-967 (20.1.16)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51 | 6 | 국지도로 | 10 | 중 3-553 (당하동 1247도) | 소3-252(당하) (당하동 1246-5도) | 일반도로 | | 국고19-967 (20.1.16) | 당하 |
| 기정 | 소로 | 3 | 252 | 6 | 특수도로 | 11 | 중 1-411 (당하동 1234도) | 소3-251(당하) (당하동 1252도) | 보행자도로 | | 국고19-967 (20.1.16) | 당하 |

주) ()는 지구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광로 3-23 | 광로 3-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원당동 1044번지 (원당동 1041-13번지 일원) · 일부 폭원 변경 - 연장 : 75.0m - 폭원 : 42 ~ 45m(기정) → 45m(변경) (면적: 증 184.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당대로 접속부 차로운영개선을 통한 적정 가감속완화차로 확보 |
| 소로 1-205 | 소로 1-2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원당동 1041-12번지 · 기능 변경 - 특수도로 → 국지도로 · 사용형태 변경 - 보행자 전용도로 → 일반도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 |

2-1-2-2 공간시설

(1) 광장(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적(m ²) | 최초결정일 | 비고 |
|--------|-----|----------------|---------------------|---------------------|--------------------------|-----|
| 합 계 | | | - | 5,458.4 | - | 3개소 |
| 2 | 광장 | 일반광장 (근린광장)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35-5 잡 | 2,581.4 | 국고2015-760 (15.10.27) | |
| 3 | 광장 | 일반광장 (근린광장)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3 잡 | 1,702.0 | 국고2015-760 (15.10.27) | |
| 4 | 광장 | 일반광장 (근린광장)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33 잡 | 1,175.0 | 국고2015-760 (15.10.27) | |

(2) 공원(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적(m ²) | 최초결정일 | 비고 |
|--------|-----------|------------|------------------------|--------------------------|--------------------------|---|
| 합계 | | | - | 1,021,181.5 | - | 24개소 |
| 소계 | | | - | 960,545.4 | - | 10개소 |
| 1 | 새별공원 | 근린공원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0 공 일원 | 34,663.6 | 국고2015-760 (15.10.27) | |
| 2 | 아라센트럴파크 | 근린공원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6 공 | 55,690.3 | 국고2015-760 (15.10.27) | |
| 3 | 도담공원 | 근린공원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 공 | 28,592.8 | 국고2015-760 (15.10.27) | |
| 4 | 아라노을공원 | 근린공원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1 공 일원 | 48,206.9 | 국고2015-760 (15.10.27) | |
| 5 | 맑은물빛공원 | 근린공원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69-3 공 일원 | 32,687.5 | 국고2015-760 (15.10.27) | |
| 6 | 아라보타닉파크 | 근린공원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96 공 일원 | 105,061.2 (219,475.2) | 국고2015-760 (15.10.27) | 대로2-78 중복결정 17,001m ² |
| 7 | 산들바람공원 | 근린공원 | 인천시 서구 불로동 1005-3 공 | 223,676.5 | 국고2015-760 (15.10.27) | |
| 8 | 고인들공원 | 근린공원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65-1 공 | 60,852.9 | 국고2015-760 (15.10.27) | |
| 11 | 여울빛공원 | 근린공원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78 공 일원 | 93,949.2 (104,337.2) | 국고2015-760 (15.10.27) | 대로2-78 중로1-427 중로1-428 중복결정 2,309.9m ² |
| 12 | 황화산숲길공원 | 근린공원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57-1 공 | 277,164.5 | 국고2015-760 (15.10.27) | |
| 소계 | | | - | 43,950.0 | - | 10개소 |
| 1 | 가람풍경공원 | 어린이공원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82-12 공 | 2,912.3 | 국고2015-760 (15.10.27) | |
| 2 | 해든공원 | 어린이공원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9 공 | 8,251.8 | 국고2015-760 (15.10.27) | |
| 3 | 동글동글나이트공원 | 어린이공원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94-1 공 | 2,283.2 | 국고2015-760 (15.10.27) | |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m ²) | 최초결정일 | 비고 |
|--------|----------|--------|------------------------|---------------------|--------------------------|-------------------------------------|
| 4 | 재미한창공원 | 어린이공원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7-6 공 | 1,763.9 | 국고2015-760 (15.10.27) | |
| 5 | 웃목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4 공 | 4,699.1 | 국고2015-760 (15.10.27) | |
| 6 | 아랫목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01 공 | 2,159.9 | 국고2015-760 (15.10.27) | |
| 7 | 바래미공원 | 어린이공원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5-1 공 | 3,794.0 | 국고2015-760 (15.10.27) | |
| 8 | 해달별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67-5 공 | 5,540.4 | 국고2015-760 (15.10.27) | |
| 14 | 공원 | 어린이공원 | 인천시 서구 당하동1337-9공 | 4,213.9 | 국고2015-760 (15.10.27) | |
| 25 | 아이꿈공원 | 어린이공원 | 인천시 서구 불로동 1002-4 공 | 8,331.5 | 국고2019-967 (20.1.6) | |
| 소계 | | | - | 2,216.7 | - | 2개소 |
| 6 | 광명큰나무공원 | 소공원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6-3 공 | 941.0 | 국고2019-967 (20.1.6) | |
| 7 | 아름드리공원 | 소공원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46-9 공 | 1,275.7 | 국고2019-967 (20.1.6) | |
| 소계 | | | - | 12,677.6 | - | 1개소 |
| 1 | 두물머리공원 | 수변공원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8-1 공 일원 | 12,677.6 | 국고2015-760 (15.10.27) | 유수지② 6,256m ² 중복결정 |
| 소계 | | | - | 1,791.8 | - | 1개소 |
| 1 | 활력공원 | 문화공원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1 공 | 1,791.8 | - | |

주) ()는 전체 면적임

(3) 녹지(변경)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m ²) | 최초결정일 | 비고 |
|----|--------|-----|--------|---------------------|---------------------|--------------------------|------|
| 합계 | | | | - | 281,767.3 | - | 22개소 |
| 소계 | | | | - | 35,719.5 | - | 7개소 |
| 기정 | 3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7 공 | 3,388.9 | 국고2015-760 (15.10.27) | |
| 기정 | 4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시 서구 원당동1058 공 일원 | 3,585.2 | 국고2015-760 (15.10.27) | |
| 기정 | 5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29-5 공 | 1,957.9 | 국고2015-760 (15.10.27) | |
| 기정 | 6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 공 | 7,749.0 | 국고2015-760 (15.10.27) | |
| 기정 | 7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시 서구 원당동 987-2 공 | 8,700.0 | 국고2015-760 (15.10.27) | |
| 기정 | 12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35-1공 | 6,317.5 | 국고2015-760 (15.10.27) | |
| 기정 | 13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27-2공 | 4,021.0 | 국고2015-760 (15.10.27) | |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종류 | 위 치 | 면적(m ²) | 최초결정일 | 비고 |
|-----------|----------|-----------|-------------|----------------------------|------------------------|----------------------------------|--------------------------------------|
| 소계 | | | | - | 234,138.9 | - | 14개소 |
| 기정 | 1 | 녹지 | 경관녹지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1-13공 | 3,728.4 | 국고2015-760 (15.10.27) | |
| 변경 | 1 | 녹지 | 경관녹지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1-13공 | 3,544.2 | 국고2015-760 (15.10.27) | |
| 기정 | 2 | 녹지 | 경관녹지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63-2 공 일원 | 47,817.8 | 국고2015-760 (15.10.27) | |
| 기정 | 6 | 녹지 | 경관녹지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33-1공 | 40,444.5 (64,670.5) | 국고2018-335 (18.06.18) | 중로1-504 중복결정 780m ² |
| 기정 | 7 | 녹지 | 경관녹지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50-1공 | 9,774.9 (12,897.9) | 국고2019-967 (20.1.6) | |
| 기정 | 8 | 녹지 | 경관녹지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4-1공 일원 | 7,139.7 | 국고2019-967 (20.1.6) | |
| 기정 | 9 | 녹지 | 경관녹지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82공 일원 | 26,536.7 (26,970.7) | 국고2019-967 (20.1.6) | |
| 기정 | 10 | 녹지 | 경관녹지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094-4 공 일원 | 33,269.4 | 국고2019-967 (20.1.6) | |
| 기정 | 11 | 녹지 | 경관녹지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8-1 공 일원 | 14,927.3 | 국고2019-967 (20.1.6) | |
| 기정 | 12 | 녹지 | 경관녹지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41 공 일원 | 10,403.3 | 국고2019-967 (20.1.6) | |
| 기정 | 13 | 녹지 | 경관녹지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35-11 공 일원 | 11,407.3 | 국고2019-967 (20.1.6) | |
| 기정 | 14 | 녹지 | 경관녹지 | 인천시 서구 원당동 989-2 공 일원 | 7,970.5 (29,306.5) | 국고2019-967 (20.1.6) | |
| 기정 | 21 | 녹지 | 경관녹지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48공 일원 | 13,946.1 | 국고2019-967 (20.1.6) | |
| 기정 | 22 | 녹지 | 경관녹지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22공 일원 | 6,308.4 | 국고2019-967 (20.1.6) | |
| 기정 | 29 | 녹지 | 경관녹지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67-7 공 | 464.6 | 국고2019-967 (20.1.6) | |
| 소계 | | | | - | 11,908.9 | - | 1개소 |
| 기정 | 1 | 녹지 | 연결녹지 | 인천시 서구 불로동 1000-1 공 일원 | 11,908.9 | 국고2015-760 (15.10.27) | |

주) ()는 전체 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1 | 녹지 | · 감) 184.2m ² | · 원당대로 접속부 차로운영개선을 통한 적정 가감속완화차로 확보를 위한 면적 변경 |

2-1-2-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학교(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 합계 | | - | - | 243,550.2 | - | 17개소 |
| 초등학교 소계 | | - | - | 112,716.3 | - | 8개소 |
| 1 | 학교 | 초등학교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6 학 | 14,000.0 | 국고2015-760 (15.10.27) | |
| 2 | 학교 | 초등학교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 학 | 14,000.0 | 국고2015-760 (15.10.27) | |
| 3 | 학교 | 초등학교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94-2 학 | 14,001.0 | 국고2015-760 (15.10.27) | |
| 4 | 학교 | 초등학교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2 학 | 14,026.6 | 국고2015-760 (15.10.27) | |
| 5 | 학교 | 초등학교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5 학 | 14,024.5 | 국고2015-760 (15.10.27) | |
| 6 | 학교 | 초등학교 | 인천시 서구 불로동 1002-3 학 | 14,999.9 | 국고2015-760 (15.10.27) | |
| 7 | 학교 | 초등학교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75-5 학 | 15,004.3 | 국고2015-760 (15.10.27) | |
| 8 | 학교 | 초등학교 | 인천시 서구 불로동 306-25 학 일원 | 12,660.0 | 인고133 (99.10.11) | 목향 초등학교 (존치시설) |
| 중학교 소계 | | - | - | 72,826.9 | - | 5개소 |
| 1 | 학교 | 중학교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8 학 | 14,000.0 | 국고2015-760 (15.10.27) | |
| 2 | 학교 | 중학교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3 학 | 14,000.2 | 국고2015-760 (15.10.27) | |
| 3 | 학교 | 중학교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73-2 학 | 14,996.3 | 국고2015-760 (15.10.27) | |
| 4 | 학교 | 중학교 | 인천시 서구 불로동 306-22 학 일원 | 14,930.0 | 북부교육청106 (00.11.30) | 불로중학교 (존치시설) |
| 6 | 학교 | 중학교 | 인천시 서구 불로동 1002-1 학 | 14,900.4 | 국고2019-967 (20.1.6) | |
| 고등학교 소계 | | - | - | 46,007.0 | - | 3개소 |
| 1 | 학교 | 고등학교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학 | 15,007.0 | 국고2015-760 (15.10.27) | |
| 2 | 학교 | 고등학교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1학 | 15,000.3 | 국고2015-760 (15.10.27) | |
| 3 | 학교 | 고등학교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67-3 학 | 15,999.7 | 국고2015-760 (15.10.27) | |
| 특수학교 소계 | | - | - | 12,000.0 | - | 1개소 |
| 1 | 학교 | 특수학교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48-7학 일원 | 12,000.0 | 국고2015-760 (15.10.27) | |

2-1-2-4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 | 연장(km) | 폭원(m) | 면적(m ²) | 최초결정일 | 비 고 |
|--------|-----|--------|---------------------|------------------------------|--------|--------|-------|---------------------|-----------------------|-----|
| | |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 | | | |
| 합계 | - | - | - | - | - | 3.43 | - | 137,310.0 | - | 2개소 |
| 1 | 계양천 | 지방2급하천 | 계양구 목상동(당하동 964-7구) | 서구 원당동 17-6답 | 매천 합류점 | 2.09 | 24~50 | 102,090.7 | 인고252(03.12.29) | |
| 2 | 매천 | 소하천 | 서구 당하동 1228도 | 서구 당하동 1304천 | - | 1.27 | 15~35 | 31,907.8 | 인고80(99.6.23) | |
| 5 | 계양천 | 지방2급하천 | 서구 원당동 1082천 | 서구 검단 ~ 인천,경기도경계(원당동 745-3구) | - | 0.07 | 50~82 | 3311.5 | 인고2021-1171(21.10.26) | |

※ 천1에 도로중복 면적 5,724㎡(도로중복 4,906㎡, 보행자전용도로 중복 818㎡) 포함
 - 도로중복 : 중로1-408, 중로1-413, 중로1-414, 중로2-449, 중로2-453
 - 보행자중복 : 소로1-201(원당), 소로3-244(당하)
 ※ 천2에 도로중복 면적 2,652㎡(도로중복 2,092㎡, 보행자전용도로 중복 560㎡) 포함
 - 도로중복 : 광로3-23, 대로2-78, 중로1-411
 - 보행자중복 : 소로 1-202(원당), 소로1-213(당하)

(2) 우수지(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m ²) | 최초결정일 | 비 고 |
|--------|-----|--------|---------------------|---------------------|----------------------|------------|
| 합 계 | - | - | - | 17,212.0 | - | 2개소 |
| 1 | 우수지 | 저류시설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2-5 유 | 10,956.0 | 국고2015-760(15.10.27) | |
| 2 | 우수지 | 저류시설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8유 | 6,256.0 | 국고2015-760(15.10.27) | 수변공원① 중복결정 |

2-1-2-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가) 오수중계펌프장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m ²) | 최초결정일 | 비고 |
|--------|---------|---------------------|---------------------|-------------|----|
| 1 | 오수중계펌프장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8-2 잡 | 4,620 | 인고4(05.1.5) | |

2-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2-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2-1-1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필지 | | | 비고 |
|------|---------|---------|--------------|---------------|---|---|
| | | | 번호 | 위치 | 면적(㎡) | |
| E1 | ① | 1,712.3 | 1 | 당하동 1260-12 대 | 244.8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60-11 대 | 245.2 | |
| | | | 3 | 당하동 1260-10 대 | 244.8 | |
| | | | 4 | 당하동 1260-9 대 | 244.0 | |
| | | | 5 | 당하동 1260-8 대 | 243.9 | |
| | | | 6 | 당하동 1260-7 대 | 244.8 | |
| | | | 7 | 당하동 1260-6 대 | 244.8 | |
| | ② | 1,178.3 | 1 | 당하동 1260-4 대 | 234.5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60-3 대 | 235.0 | |
| | | | 3 | 당하동 1260-2 대 | 235.0 | |
| | | | 4 | 당하동 1260-1 대 | 236.5 | |
| | | | 5 | 당하동 1260 대 | 237.3 | |
| | ③ | 1,107.6 | 1 | 당하동 1229-10 대 | 223.9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29-9 대 | 221.0 | |
| | | | 3 | 당하동 1229-8 대 | 221.0 | |
| | | | 4 | 당하동 1229-7 대 | 220.9 | |
| | | | 5 | 당하동 1229-6 대 | 220.8 | |
| | ④ | 2,659.4 | 1 | 당하동 1258-2 대 | 241.9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58-3 대 | 241.7 | |
| | | | 3 | 당하동 1258-4 대 | 241.9 | |
| | | | 4 | 당하동 1258-5 대 | 242.2 | |
| | | | 5 | 당하동 1258-6 대 | 241.6 | |
| | | | 6 | 당하동 1258-7 대 | 237.6 | |
| | | | 7 | 당하동 1258-12 대 | 241.0 | |
| | | | 8 | 당하동 1258-11 대 | 241.8 | |
| | | | 9 | 당하동 1258-10 대 | 241.9 | |
| | | | 10 | 당하동 1258-9 대 | 243.1 | |
| | | | 11 | 당하동 1258-8 대 | 244.7 | |
| | ⑤ | 973.9 | 1 | 당하동 1264-4 대 | 243.6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64-5 대 | 243.2 | |
| | | | 3 | 당하동 1264-3 대 | 246.0 | |
| | | | 4 | 당하동 1264-2 대 | 241.1 | |
| | ⑥ | 885.3 | 1 | 당하동 1264-6 대 | 219.5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64-7 대 | 221.9 | |
| | | | 3 | 당하동 1264-8 대 | 222.6 | |
| 4 | | | 당하동 1264 대 | 221.3 | | |
| ⑦ | 3,248.8 | 1 | 당하동 1261-7 대 | 250.4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61-8 대 | 249.9 |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m ²) | 필 지 | | | 비 고 | | | |
|------|--------------|---------------------|--------------|---------------|---|-----|--------------|-------|---|
| | | | 번호 | 위치 | 면적(m ²) | | | | |
| | | | 3 | 당하동 1261-9 대 | 250.3 | | | | |
| | | | 4 | 당하동 1261-10 대 | 250.5 | | | | |
| | | | 5 | 당하동 1261-11 대 | 249.6 | | | | |
| | | | 6 | 당하동 1261-12 대 | 249.5 | | | | |
| | | | 7 | 당하동 1261 대 | 250.5 | | | | |
| | | | 8 | 당하동 1261-6 대 | 250.4 | | | | |
| | | | 9 | 당하동 1261-5 대 | 248.9 | | | | |
| | | | 10 | 당하동 1261-4 대 | 249.1 | | | | |
| | | | 11 | 당하동 1261-3 대 | 249.4 | | | | |
| | | | 12 | 당하동 1261-2 대 | 248.6 | | | | |
| | | | 13 | 당하동 1261-1 대 | 251.7 | | | | |
| | | | ⑧ | 2,285.2 | 1 | | 당하동 1231-5 대 | 254.2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 | 2 | | 당하동 1231-6 대 | 254.0 | |
| 3 | 당하동 1231-7 대 | 254.0 | | | | | | | |
| 4 | 당하동 1231-8 대 | 253.9 | | | | | | | |
| 5 | 당하동 1231 대 | 254.0 | | | | | | | |
| 6 | 당하동 1231-4 대 | 252.5 | | | | | | | |
| 7 | 당하동 1231-3 대 | 254.1 | | | | | | | |
| 8 | 당하동 1231-2 대 | 254.2 | | | | | | | |
| 9 | 당하동 1231-1 대 | 254.3 | | | | | | | |
| ⑨ | 1,104.2 | 1 | 당하동 1256-4 대 | 220.6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 | | 2 | 당하동 1256-3 대 | 220.7 | | | | | |
| | | 3 | 당하동 1256-2 대 | 220.7 | | | | | |
| | | 4 | 당하동 1256-1 대 | 220.2 | | | | | |
| | | 5 | 당하동 1256 대 | 222.0 | | | | | |
| ⑩ | 1,104.3 | 1 | 당하동 1267-4 대 | 221.5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 | | 2 | 당하동 1267-3 대 | 219.6 | | | | | |
| | | 3 | 당하동 1267-2 대 | 220.9 | | | | | |
| | | 4 | 당하동 1267-1 대 | 220.3 | | | | | |
| | | 5 | 당하동 1267 대 | 222.0 | | | | | |
| ⑪ | 714.4 | 1 | 당하동 1269-6 대 | 240.4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 | | 2 | 당하동 1269-5 대 | 237.3 | | | | | |
| | | 3 | 당하동 1269-4 대 | 236.7 | | | | | |
| ⑫ | 666.8 | 1 | 당하동 1269-2 대 | 221.8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 | | 2 | 당하동 1269-1 대 | 221.8 | | | | | |
| | | 3 | 당하동 1269 대 | 223.2 | | | | | |
| ⑬ | 2,227.4 | 1 | 당하동 1262-9 대 | 248.5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 | | 2 | 당하동 1262-8 대 | 247.2 | | | | | |
| | | 3 | 당하동 1262-7 대 | 247.3 | | | | | |
| | | 4 | 당하동 1262-6 대 | 247.3 | | | | | |
| | | 5 | 당하동 1262-5 대 | 247.3 | | | | | |
| | | 6 | 당하동 1262-4 대 | 247.2 | | | |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m ²) | 필 지 | | | 비 고 |
|------|---------|---------------------|--------------|--------------|---------------------|---|
| | | | 번호 | 위치 | 면적(m ²) | |
| E2 | | | 7 | 당하동 1262-3 대 | 246.9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8 | 당하동 1262-2 대 | 247.2 | |
| | | | 9 | 당하동 1262-1 대 | 248.5 | |
| | ⑭ | 1,044.2 | 1 | 당하동 1229-4 대 | 260.9 | |
| | | | 2 | 당하동 1229-3 대 | 261.1 | |
| | | | 3 | 당하동 1229-2 대 | 261.1 | |
| | | | 4 | 당하동 1229-1 대 | 261.1 | |
| | ① | 2,399.0 | 1 | 원당동 1048 대 | 240.2 | |
| | | | 2 | 원당동 1048-1 대 | 240.0 | |
| | | | 3 | 원당동 1048-2 대 | 240.2 | |
| | | | 4 | 원당동 1048-3 대 | 240.6 | |
| | | | 5 | 원당동 1048-4 대 | 240.0 | |
| | | | 6 | 원당동 1048-5 대 | 240.0 | |
| | | | 7 | 원당동 1048-6 대 | 240.1 | |
| 8 | | | 원당동 1048-7 대 | 240.5 | | |
| 9 | | | 원당동 1048-8 대 | 238.9 | | |
| 10 | | | 원당동 1048-9 대 | 238.5 | | |
| ② | 1,228.3 | 1 | 원당동 1047-1 대 | 245.5 | | |
| | | 2 | 원당동 1047 대 | 245.9 | | |
| | | 3 | 원당동 1047-2 대 | 245.8 | | |
| | | 4 | 원당동 1047-3 대 | 245.2 | | |
| | | 5 | 원당동 1047-4 대 | 245.9 | | |
| ③ | 1,886.5 | 1 | 원당동 1050-3 대 | 205.9 | | |
| | | 2 | 원당동 1050-2 대 | 249.1 | | |
| | | 3 | 원당동 1050-1 대 | 249.1 | | |
| | | 4 | 원당동 1050 대 | 239.5 | | |
| | | 5 | 원당동 1050-4 대 | 261.8 | | |
| | | 6 | 원당동 1050-5 대 | 224.1 | | |
| | | 7 | 원당동 1050-6 대 | 224.1 | | |
| | | 8 | 원당동 1050-7 대 | 232.9 | | |
| ④ | 2,335.9 | 1 | 원당동 1052-4 대 | 209.6 | | |
| | | 2 | 원당동 1052-3 대 | 242.4 | | |
| | | 3 | 원당동 1052-2 대 | 242.4 | | |
| | | 4 | 원당동 1052-1 대 | 242.4 | | |
| | | 5 | 원당동 1052 대 | 233.4 | | |
| | | 6 | 원당동 1052-5 대 | 256.5 | | |
| | | 7 | 원당동 1052-6 대 | 225.1 | | |
| | | 8 | 원당동 1052-7 대 | 225.3 | | |
| | | 9 | 원당동 1052-8 대 | 225.3 | | |
| | | 10 | 원당동 1052-9 대 | 233.5 |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m ²) | 필 지 | | | 비 고 | |
|------|------|---------------------|-----|---------------|---------------------|---|--|
| | | | 번호 | 위치 | 면적(m ²) | | |
| | ⑤ | 3,116.4 | 1 | 원당동 1056-5 대 | 238.7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 2 | 원당동 1056-4 대 | 239.7 | | |
| | | | 3 | 원당동 1056-3 대 | 240.3 | | |
| | | | 4 | 원당동 1056-2 대 | 240.0 | | |
| | | | 5 | 원당동 1056-1 대 | 240.3 | | |
| | | | 6 | 원당동 1056 대 | 240.3 | | |
| | | | 7 | 원당동 1056-6 대 | 239.0 | | |
| | | | 8 | 원당동 1056-7 대 | 239.7 | | |
| | | | 9 | 원당동 1056-8 대 | 239.6 | | |
| | | | 10 | 원당동 1056-9 대 | 239.7 | | |
| | | | 11 | 원당동 1056-10 대 | 239.6 | | |
| | | | 12 | 원당동 1056-11 대 | 239.6 | | |
| | | | 13 | 원당동 1056-12 대 | 239.9 | | |
| | ⑥ | 2,038.4 | 1 | 원당동 1045 대 | 255.2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 2 | 원당동 1045-1 대 | 254.1 | | |
| | | | 3 | 원당동 1045-2 대 | 253.8 | | |
| | | | 4 | 원당동 1045-3 대 | 254.1 | | |
| | | | 5 | 원당동 1045-4 대 | 253.9 | | |
| | | | 6 | 원당동 1045-5 대 | 254.0 | | |
| | | | 7 | 원당동 1045-6 대 | 256.7 | | |
| | | | 8 | 원당동 1045-7 대 | 256.6 | | |
| | ⑦ | 468.6 | 1 | 원당동 1055-1 대 | 234.2 | • 연접한 2필지 합병가능 및 분할불가 | |
| | | | 2 | 원당동 1055-2 대 | 234.4 | | |
| F1 | ① | 882.0 | 1 | 당하동 1290-2 대 | 294.0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 2 | 당하동 1290-1 대 | 294.0 | | |
| | | | 3 | 당하동 1290 대 | 294.0 | | |
| | ② | 2,189.5 | 1 | 당하동 1290-4 대 | 271.5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 2 | 당하동 1290-5 대 | 274.0 | | |
| | | | 3 | 당하동 1290-6 대 | 274.0 | | |
| | | | 4 | 당하동 1290-7 대 | 274.0 | | |
| | | | 5 | 당하동 1290-8 대 | 274.0 | | |
| | ③ | 3,105.0 | 1 | 당하동 1297-1 대 | 260.0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 2 | 당하동 1297-2 대 | 259.0 | | |
| | | | 3 | 당하동 1297-3 대 | 259.0 | | |
| | | | | 4 | 당하동 1297-4 대 | 259.0 | |
| | | | | 5 | 당하동 1297-5 대 | 259.0 | |
| | | | 6 | 당하동 1297-6 대 | 260.0 | | |
| | | | 7 | 당하동 1297 대 | 258.0 |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m ²) | 필 지 | | | 비 고 |
|------|---------|---------------------|--------------|---------------|---|---|
| | | | 번호 | 위치 | 면적(m ²) | |
| | | | 8 | 당하동 1297-11 대 | 259.0 | |
| | | | 9 | 당하동 1297-10 대 | 258.0 | |
| | | | 10 | 당하동 1297-9 대 | 258.0 | |
| | | | 11 | 당하동 1297-8 대 | 258.0 | |
| | | | 12 | 당하동 1297-7 대 | 258.0 | |
| | ④ | 2,574.0 | 1 | 당하동 1295-1 대 | 259.0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95-2 대 | 258.0 | |
| | | | 3 | 당하동 1295-3 대 | 257.0 | |
| | | | 4 | 당하동 1295-4 대 | 257.0 | |
| | | | 5 | 당하동 1295-5 대 | 258.0 | |
| | | | 6 | 당하동 1295 대 | 256.0 | |
| | | | 7 | 당하동 1295-9 대 | 257.0 | |
| | | | 8 | 당하동 1295-8 대 | 257.0 | |
| | | | 9 | 당하동 1295-7 대 | 257.0 | |
| | | | 10 | 당하동 1295-6 대 | 258.0 | |
| | ⑤ | 1,327.0 | 1 | 당하동 1288-4 대 | 267.0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88-3 대 | 265.0 | |
| | | | 3 | 당하동 1288-2 대 | 265.0 | |
| | | | 4 | 당하동 1288-1 대 | 265.0 | |
| | | | 5 | 당하동 1288 대 | 265.0 | |
| | ⑥ | 1,270.0 | 1 | 당하동 1292 대 | 254.0 | |
| | | | 2 | 당하동 1292-1 대 | 254.0 | |
| | | | 3 | 당하동 1292-2 대 | 254.0 | |
| | | | 4 | 당하동 1292-3 대 | 254.0 | |
| | | | 5 | 당하동 1292-4 대 | 254.0 | |
| | ⑦ | 2,357.8 | 1 | 당하동 1299-1 대 | 261.8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99-2 대 | 262.0 | |
| | | | 3 | 당하동 1299-3 대 | 262.0 | |
| | | | 4 | 당하동 1299-4 대 | 262.0 | |
| | | | 5 | 당하동 1299-5 대 | 262.0 | |
| | | | 6 | 당하동 1299 대 | 262.0 | |
| | | | 7 | 당하동 1299-8 대 | 262.0 | |
| | | | 8 | 당하동 1299-7 대 | 262.0 | |
| 9 | | | 당하동 1299-6 대 | 262.0 | | |
| ⑧ | 2,288.6 | 1 | 당하동 1300-1 대 | 253.8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300-2 대 | 254.0 | | |
| | | 3 | 당하동 1300-3 대 | 254.0 | | |
| | | 4 | 당하동 1300-4 대 | 254.0 | | |
| | | 5 | 당하동 1300 대 | 257.0 | | |
| | | 6 | 당하동 1300-8 대 | 254.0 | | |
| | | 7 | 당하동 1300-7 대 | 254.0 |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m ²) | 필 지 | | | 비 고 |
|------|---------|---------------------|---------------|---------------|---------------------|---|
| | | | 번호 | 위치 | 면적(m ²) | |
| F2 | | | 8 | 당하동 1300-6 대 | 254.0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9 | 당하동 1300-5 대 | 253.8 | |
| | ⑨ | 1,338.3 | 1 | 당하동 1292-7 대 | 268.0 | |
| | | | 2 | 당하동 1292-8 대 | 267.0 | |
| | | | 3 | 당하동 1292-9 대 | 267.0 | |
| | | | 4 | 당하동 1292-10 대 | 268.0 | |
| | | | 5 | 당하동 1292-11 대 | 268.3 | |
| | ⑩ | 1,413.5 | 1 | 당하동 1286-18 대 | 283.0 | |
| | | | 2 | 당하동 1286-17 대 | 283.0 | |
| | | | 3 | 당하동 1286-16 대 | 283.0 | |
| | | | 4 | 당하동 1286-15 대 | 283.0 | |
| | | | 5 | 당하동 1286-14 대 | 281.5 | |
| | ⑪ | 723.7 | 1 | 당하동 1284 대 | 241.7 | |
| | | | 2 | 당하동 1284-1 대 | 241.0 | |
| | | | 3 | 당하동 1284-2 대 | 241.0 | |
| | ⑫ | 1,269.0 | 1 | 당하동 1284-4 대 | 253.0 | |
| | | | 2 | 당하동 1284-5 대 | 254.0 | |
| | | | 3 | 당하동 1284-6 대 | 254.0 | |
| | | | 4 | 당하동 1284-7 대 | 254.0 | |
| | | | 5 | 당하동 1284-8 대 | 254.0 | |
| ⑬ | 1,102.0 | 1 | 당하동 1284-10 대 | 275.0 | | |
| | | 2 | 당하동 1284-11 대 | 275.0 | | |
| | | 3 | 당하동 1284-12 대 | 276.0 | | |
| | | 4 | 당하동 1284-13 대 | 276.0 | | |
| ⑭ | 1,341.0 | 1 | 당하동 1282-7 대 | 269.0 | | |
| | | 2 | 당하동 1282-8 대 | 268.0 | | |
| | | 3 | 당하동 1282-9 대 | 268.0 | | |
| | | 4 | 당하동 1282-10 대 | 268.0 | | |
| | | 5 | 당하동 1282-11 대 | 268.0 | | |
| F2 | ① | 1,929.8 | 1 | 원당동 1071-5 대 | 276.0 | |
| | | | 2 | 원당동 1071-6 대 | 275.8 | |
| | | | 3 | 원당동 1071-7 대 | 276.0 | |
| | | | 4 | 원당동 1071-8 대 | 276.0 | |
| | | | 5 | 원당동 1071-9 대 | 275.0 | |
| | | | 6 | 원당동 1071-10 대 | 275.0 | |
| | | | 7 | 원당동 1071-11 대 | 276.0 | |
| | ② | 731.0 | 1 | 원당동 1071-2 대 | 244.0 | |
| | | | 2 | 원당동 1071-1 대 | 243.0 | |
| | | | 3 | 원당동 1071 대 | 244.0 | |
| ③ | 720.0 | 1 | 원당동 1069-6 대 | 240.0 | | |
| | | 2 | 원당동 1069-5 대 | 240.0 |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m ²) | 필 지 | | | 비 고 |
|------|------|---------------------|-----|---------------|---------------------|---|
| | | | 번호 | 위치 | 면적(m ²) | |
| | | | 3 | 원당동 1069-4 대 | 240.0 | |
| | ④ | 873.0 | 1 | 원당동 1073-1 대 | 291.0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1073-3 대 | 291.0 | |
| | | | 3 | 원당동 1073-2 대 | 291.0 | |
| | ⑤ | 1,986.0 | 1 | 원당동 1075-1 대 | 248.0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1075-2 대 | 248.0 | |
| | | | 3 | 원당동 1075-3 대 | 248.0 | |
| | | | 4 | 원당동 1075-4 대 | 248.0 | |
| | | | 5 | 원당동 1075 대 | 249.0 | |
| | | | 6 | 원당동 1075-7 대 | 248.0 | |
| | | | 7 | 원당동 1075-6 대 | 248.0 | |
| | | | 8 | 원당동 1075-5 대 | 249.0 | |
| | ⑥ | 1,701.0 | 1 | 원당동 1077-1 대 | 283.0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1077-2 대 | 284.0 | |
| | | | 3 | 원당동 1077-3 대 | 283.0 | |
| | | | 4 | 원당동 1077 대 | 284.0 | |
| | | | 5 | 원당동 1077-5 대 | 283.0 | |
| | | | 6 | 원당동 1077-4 대 | 284.0 | |
| | ⑦ | 1,113.0 | 1 | 원당동 1079-1 대 | 278.0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1079-2 대 | 279.0 | |
| | | | 3 | 원당동 1079 대 | 278.0 | |
| | | | 4 | 원당동 1079-3 대 | 278.0 | |
| | ⑧ | 3,688.6 | 1 | 원당동 1067-27 대 | 265.0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1067-26 대 | 263.0 | |
| | | | 3 | 원당동 1067-25 대 | 263.0 | |
| | | | 4 | 원당동 1067-24 대 | 263.0 | |
| | | | 5 | 원당동 1067-23 대 | 263.0 | |
| | | | 6 | 원당동 1067-22 대 | 263.0 | |
| | | | 7 | 원당동 1067-21 대 | 263.0 | |
| | | | 8 | 원당동 1067-20 대 | 263.0 | |
| | | | 9 | 원당동 1067-19 대 | 262.8 | |
| | | | 10 | 원당동 1067-18 대 | 262.8 | |
| | | | 11 | 원당동 1067-17 대 | 263.0 | |
| | | | 12 | 원당동 1067-16 대 | 264.0 | |
| | | | 13 | 원당동 1067-15 대 | 264.0 | |
| | | | 14 | 원당동 1067-14 대 | 266.0 | |
| | ⑨ | 702.0 | 1 | 원당동 1069-2 대 | 234.0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1069-1 대 | 234.0 | |
| | | | 3 | 원당동 1069 대 | 234.0 | |
| | ⑩ | 607.0 | 1 | 원당동 1067-10 대 | 304.0 | • 연접한 2필지 합병가능 |
| | | | 2 | 원당동 1067-9 대 | 303.0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m ²) | 필 지 | | | 비 고 |
|------|---------|---------------------|--------------|--------------|---|---|
| | | | 번호 | 위치 | 면적(m ²) | |
| F3 | ① | 1,089.7 | 1 | 원당동 989-3 대 | 272.0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989-4 대 | 272.0 | |
| | | | 3 | 원당동 989-5 대 | 272.9 | |
| | | | 4 | 원당동 989-6 대 | 272.8 | |
| | ② | 3,364.2 | 1 | 원당동 991-8 대 | 258.4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991-9 대 | 258.9 | |
| | | | 3 | 원당동 991-10 대 | 259.3 | |
| | | | 4 | 원당동 991-7 대 | 259.6 | |
| | | | 5 | 원당동 991-6 대 | 258.7 | |
| | | | 6 | 원당동 991-5 대 | 259.2 | |
| | | | 7 | 원당동 991-4 대 | 259.1 | |
| | | | 8 | 원당동 991-3 대 | 259.4 | |
| | | | 9 | 원당동 991-11 대 | 258.5 | |
| | | | 10 | 원당동 991-12 대 | 258.2 | |
| | | | 11 | 원당동 991-13 대 | 258.3 | |
| | | | 12 | 원당동 991-14 대 | 258.2 | |
| | | | 13 | 원당동 991-15 대 | 258.4 | |
| | ③ | 1,390.3 | 1 | 원당동 991-1 대 | 278.1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991 대 | 278.3 | |
| | | | 3 | 원당동 991-16 대 | 277.9 | |
| | | | 4 | 원당동 991-17 대 | 278.0 | |
| | | | 5 | 원당동 991-18 대 | 278.0 | |
| | ⑤ | 1,792.6 | 1 | 원당동 993-14 대 | 255.2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993-13 대 | 255.2 | |
| | | | 3 | 원당동 993-12 대 | 256.2 | |
| | | | 4 | 원당동 993-11 대 | 256.6 | |
| | | | 5 | 원당동 993-10 대 | 256.4 | |
| | | | 6 | 원당동 993-9 대 | 256.6 | |
| | | | 7 | 원당동 993-8 대 | 256.4 | |
| | ⑥ | 1,824.6 | 1 | 원당동 993-6 대 | 259.9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993-5 대 | 259.8 | |
| | | | 3 | 원당동 993-4 대 | 260.9 | |
| | | | 4 | 원당동 993-3 대 | 261.0 | |
| 5 | | | 원당동 993-2 대 | 260.8 | | |
| 6 | | | 원당동 993-1 대 | 261.1 | | |
| 7 | | | 원당동 993 대 | 261.1 | | |
| ⑦ | 1,328.4 | 1 | 원당동 997-10 대 | 266.8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997-9 대 | 265.6 | | |
| | | 3 | 원당동 997-8 대 | 265.8 | | |
| | | 4 | 원당동 997-7 대 | 264.9 | | |
| | | 5 | 원당동 997-6 대 | 265.3 |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m ²) | 필 지 | | | 비 고 |
|------|---------|---------------------|---------------|--------------|---|---|
| | | | 번호 | 위치 | 면적(m ²) | |
| | ⑧ | 986.0 | 1 | 원당동 997-4 대 | 246.1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997-3 대 | 246.0 | |
| | | | 3 | 원당동 997-2 대 | 246.9 | |
| | | | 4 | 원당동 997-1 대 | 247.0 | |
| | ⑨ | 880.0 | 1 | 원당동 989-7 대 | 294.0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989-8 대 | 292.9 | |
| | | | 3 | 원당동 989-9 대 | 293.1 | |
| | ⑩ | 1,065.0 | 1 | 원당동 1003-2 대 | 266.3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1003-3 대 | 266.1 | |
| | | | 3 | 원당동 1003-5 대 | 266.1 | |
| | | | 4 | 원당동 1003-4 대 | 266.5 | |
| | ⑪ | 2,530.3 | 1 | 원당동 1005-1 대 | 258.5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1005-2 대 | 252.7 | |
| | | | 3 | 원당동 1005-3 대 | 252.6 | |
| | | | 4 | 원당동 1005-4 대 | 252.6 | |
| 5 | | | 원당동 1005-5 대 | 252.7 | | |
| 6 | | | 원당동 1005 대 | 250.4 | | |
| 7 | | | 원당동 1005-14 대 | 252.7 | | |
| 8 | | | 원당동 1005-13 대 | 252.7 | | |
| 9 | | | 원당동 1005-12 대 | 252.6 | | |
| 10 | | | 원당동 1005-11 대 | 252.8 | | |
| ⑫ | 1,173.4 | 1 | 원당동 1005-7 대 | 293.7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1005-8 대 | 293.1 | | |
| | | 3 | 원당동 1005-10 대 | 293.4 | | |
| | | 4 | 원당동 1005-9 대 | 293.2 | | |
| ⑬ | 2,079.0 | 1 | 원당동 1008-4 대 | 258.6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1008-3 대 | 259.0 | | |
| | | 3 | 원당동 1008-2 대 | 259.2 | | |
| | | 4 | 원당동 1008-1 대 | 258.2 | | |
| | | 5 | 원당동 1008 대 | 258.1 | | |
| | | 6 | 원당동 1008-5 대 | 261.7 | | |
| | | 7 | 원당동 1008-6 대 | 262.1 | | |
| | | 8 | 원당동 1008-7 대 | 262.1 | | |
| ⑭ | 1,937.6 | 1 | 원당동 1000 대 | 276.9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1000-28 대 | 277.0 | | |
| | | 3 | 원당동 1000-27 대 | 277.0 | | |
| | | 4 | 원당동 1000-26 대 | 277.0 | | |
| | | 5 | 원당동 1000-25 대 | 277.0 | | |
| | | 6 | 원당동 1000-24 대 | 276.0 | | |
| | | 7 | 원당동 1000-23 대 | 276.7 | | |
| ⑮ | 3,255.9 | 1 | 원당동 1000-22 대 | 274.2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m ²) | 필 지 | | | 비 고 | |
|------|--------------|---------------------|-----|---------------|---------------------|------------------|---|
| | | | 번호 | 위치 | 면적(m ²) | | |
| | | | 2 | 원당동 1000-21 대 | 275.0 |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 3 | 원당동 1000-20 대 | 276.0 | | |
| | | | 4 | 원당동 1000-19 대 | 276.0 | | |
| | | | 5 | 원당동 1000-18 대 | 276.0 | | |
| | | | 6 | 원당동 1000-17 대 | 275.9 | | |
| | | | 7 | 원당동 1000-16 대 | 276.0 | | |
| | | | 8 | 원당동 1000-15 대 | 275.9 | | |
| | | | 9 | 원당동 1000-14 대 | 262.7 | | |
| | | | 10 | 원당동 1000-13 대 | 262.0 | | |
| | | | 11 | 원당동 1000-12 대 | 263.1 | | |
| | | | 12 | 원당동 1000-11 대 | 263.1 | | |
| | | | F4 | ① | 2,958.4 | | 1 |
| 2 | 불로동 995-5 대 | 268.1 | | | | | |
| 3 | 불로동 995-4 대 | 268.2 | | | | | |
| 4 | 불로동 995-3 대 | 268.6 | | | | | |
| 5 | 불로동 995-2 대 | 268.2 | | | | | |
| 6 | 불로동 995-1 대 | 269.4 | | | | | |
| 7 | 불로동 995-7 대 | 269.0 | | | | | |
| 8 | 불로동 995-8 대 | 270.7 | | | | | |
| 9 | 불로동 995-9 대 | 268.6 | | | | | |
| 10 | 불로동 995-10 대 | 268.5 | | | | | |
| 11 | 불로동 995-11 대 | 270.1 | | | | | |
| ② | 1,227.6 | | | 1 | 불로동 993-1대 | 246.4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 2 | 불로동 993-2대 | 244.9 | |
| | | | | 3 | 불로동 993-3대 | 245.0 | |
| | | | | 4 | 불로동 993-4대 | 244.9 | |
| | | | | 5 | 불로동 993-5대 | 246.4 | |
| ③ | 2,225.8 | | | 1 | 불로동 979-17 대 | 276.9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 2 | 불로동 979-16 대 | 278.9 | |
| | | | | 3 | 불로동 979-15 대 | 278.9 | |
| | | | | 4 | 불로동 979-14 대 | 279.1 | |
| | | | | 5 | 불로동 979-13 대 | 278.0 | |
| | | | | 6 | 불로동 979-12 대 | 278.0 | |
| | | | | 7 | 불로동 979-11 대 | 278.0 | |
| | | | | 8 | 불로동 979-10 대 | 278.0 | |
| ④ | 1,725.7 | | | 1 | 불로동 979-8 대 | 247.0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 2 | 불로동 979-7 대 | 246.9 | |
| | | | | 3 | 불로동 979-6 대 | 246.9 | |
| | | | | 4 | 불로동 979-5 대 | 246.9 | |
| | | | | 5 | 불로동 979-4 대 | 246.0 | |
| | | | | 6 | 불로동 979-3 대 | 246.0 | |
| | | | | 7 | 불로동 979-2 대 | 246.0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m ²) | 필 지 | | | 비 고 |
|------|------|---------------------|--------------|--------------|---------------------|---|
| | | | 번호 | 위치 | 면적(m ²) | |
| | ⑤ | 1,198.5 | 1 | 불로동 989-1 대 | 239.0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불로동 989-2 대 | 239.7 | |
| | | | 3 | 불로동 989-3 대 | 240.0 | |
| | | | 4 | 불로동 989-4 대 | 239.9 | |
| | | | 5 | 불로동 989-5 대 | 239.9 | |
| | ⑥ | 2,266.2 | 1 | 불로동 987-2 대 | 282.8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불로동 987-3 대 | 283.0 | |
| | | | 3 | 불로동 987-4 대 | 283.0 | |
| | | | 4 | 불로동 987-5 대 | 284.3 | |
| | | | 5 | 불로동 987-1 대 | 282.9 | |
| | | | 6 | 불로동 987-8 대 | 283.0 | |
| | | | 7 | 불로동 987-7 대 | 283.1 | |
| | | | 8 | 불로동 987-6 대 | 284.1 | |
| | ⑦ | 2,266.0 | 1 | 불로동 985-2 대 | 282.9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불로동 985-3 대 | 283.0 | |
| | | | 3 | 불로동 985-4 대 | 282.8 | |
| | | | 4 | 불로동 985-5 대 | 284.3 | |
| | | | 5 | 불로동 985-1 대 | 282.9 | |
| | | | 6 | 불로동 985-8 대 | 283.0 | |
| | | | 7 | 불로동 985-7 대 | 283.2 | |
| | | | 8 | 불로동 985-6 대 | 283.9 | |
| | ⑧ | 2,266.1 | 1 | 불로동 983-2 대 | 283.0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불로동 983-3 대 | 283.0 | |
| | | | 3 | 불로동 983-4 대 | 282.8 | |
| | | | 4 | 불로동 983-5 대 | 284.3 | |
| | | | 5 | 불로동 983-1 대 | 282.9 | |
| | | | 6 | 불로동 983-8 대 | 283.0 | |
| | | | 7 | 불로동 983-7 대 | 283.0 | |
| | | | 8 | 불로동 983-6 대 | 284.1 | |
| | ⑨ | 2,266.4 | 1 | 불로동 981-2 대 | 282.9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불로동 981-3 대 | 283.0 | |
| | | | 3 | 불로동 981-4 대 | 282.8 | |
| | | | 4 | 불로동 981-5 대 | 284.4 | |
| | | | 5 | 불로동 981-1 대 | 282.9 | |
| | | | 6 | 불로동 981-8 대 | 283.1 | |
| | | | 7 | 불로동 981-7 대 | 283.2 | |
| | | | 8 | 불로동 981-6 대 | 284.1 | |
| | ⑩ | 1,973.6 | 1 | 불로동 991-26 대 | 247.9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불로동 991-25 대 | 247.0 | |
| | | | 3 | 불로동 991-24 대 | 247.0 | |
| 4 | | | 불로동 991-23 대 | 247.0 | | |
| 5 | | | 불로동 991-22 대 | 247.0 |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m ²) | 필 지 | | | 비 고 |
|------|------|---------------------|-------------|--------------|---------------------|---|
| | | | 번호 | 위치 | 면적(m ²) | |
| | | | 6 | 불로동 991-21 대 | 245.4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7 | 불로동 991-20 대 | 246.2 | |
| | | | 8 | 불로동 991-19 대 | 246.1 | |
| | ⑪ | 2,262.8 | 1 | 불로동 991-17 대 | 282.5 | |
| | | | 2 | 불로동 991-16 대 | 282.6 | |
| | | | 3 | 불로동 991-15 대 | 283.0 | |
| | | | 4 | 불로동 991-14 대 | 282.9 | |
| | | | 5 | 불로동 991-13 대 | 282.9 | |
| | | | 6 | 불로동 991-12 대 | 282.8 | |
| | | | 7 | 불로동 991-11 대 | 283.0 | |
| | | | 8 | 불로동 991-10 대 | 283.1 | |
| | ⑫ | 1,737.7 | 1 | 불로동 991-8 대 | 249.4 | |
| | | | 2 | 불로동 991-7 대 | 247.9 | |
| | | | 3 | 불로동 991-6 대 | 248.1 | |
| | | | 4 | 불로동 991-5 대 | 248.2 | |
| 5 | | | 불로동 991-4 대 | 248.4 | | |
| 6 | | | 불로동 991-3 대 | 247.8 | | |
| 7 | | | 불로동 991-2 대 | 247.9 | | |
| F5 | ① | 1,090.3 | 1 | 불로동 961-8 대 | 239.3 | |
| | | | 2 | 불로동 961-9 대 | 239.3 | |
| | | | 3 | 불로동 961-10 대 | 239.9 | |
| | | | 4 | 불로동 961-11 대 | 371.8 | |
| | ② | 1,885.0 | 1 | 불로동 961-3 대 | 314.4 | |
| | | | 2 | 불로동 961-2 대 | 314.1 | |
| | | | 3 | 불로동 961-1 대 | 314.3 | |
| | | | 4 | 불로동 961-4 대 | 313.9 | |
| | | | 5 | 불로동 961-5 대 | 314.3 | |
| | | | 6 | 불로동 961-6 대 | 314.0 | |
| F15 | ① | 1,716.6 | 1 | 당하동 1337-8대 | 245.0 | |
| | | | 2 | 당하동 1337-7대 | 245.0 | |
| | | | 3 | 당하동 1337-6대 | 245.0 | |
| | | | 4 | 당하동 1337-5대 | 245.0 | |
| | | | 5 | 당하동 1337-4대 | 245.0 | |
| | | | 6 | 당하동 1337-3대 | 244.8 | |
| | | | 7 | 당하동 1337-2대 | 246.8 | |
| | ② | 947.0 | 1 | 당하동 1342대 | 316.0 | |
| | | | 2 | 당하동 1342-1대 | 315.0 | |
| | | | 3 | 당하동 1342-2대 | 316.0 | |
| | ③ | 2,953.1 | 1 | 당하동 1340-1대 | 268.0 | |
| | | | 2 | 당하동 1340-2대 | 268.0 | |
| | | | 3 | 당하동 1340-3대 | 268.0 | |
| 4 | | | 당하동 1340-4대 | 268.0 |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필 지 | | | 비 고 | |
|------|------|---------|-----|--------------|-------|-----|---|
| | | | 번호 | 위치 | 면적(㎡) | | |
| | | | 5 | 당하동 1340-5대 | 268.0 | | |
| | | | 6 | 당하동 1340대 | 269.0 | | |
| | | | 7 | 당하동 1340-10대 | 269.0 | | |
| | | | 8 | 당하동 1340-9대 | 269.0 | | |
| | | | 9 | 당하동 1340-8대 | 269.1 | | |
| | | | 10 | 당하동 1340-7대 | 269.0 | | |
| | | | 11 | 당하동 1340-6대 | 268.0 | | |
| | ④ | 2,555.0 | 1 | 당하동 1336대 | 255.0 |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336-1대 | 255.0 | | |
| | | | 3 | 당하동 1336-2대 | 255.0 | | |
| | | | 4 | 당하동 1336-3대 | 255.0 | | |
| | | | 5 | 당하동 1336-4대 | 255.0 | | |
| | | | 6 | 당하동 1336-5대 | 256.0 | | |
| | | | 7 | 당하동 1336-6대 | 256.0 | | |
| | | | 8 | 당하동 1336-7대 | 256.0 | | |
| | | | 9 | 당하동 1336-8대 | 256.0 | | |
| | | | 10 | 당하동 1336-9대 | 256.0 | | |
| | ⑤ | 2,426.9 | 1 | 당하동 1343-8대 | 270.0 | |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343-7대 | 270.0 | | |
| | | | 3 | 당하동 1343-6대 | 268.9 | | |
| | | | 4 | 당하동 1343-5대 | 269.0 | | |
| | | | 5 | 당하동 1343-4대 | 269.0 | | |
| | | | 6 | 당하동 1343-3대 | 269.0 | | |
| | | | 7 | 당하동 1343-2대 | 268.0 | | |
| | | | 8 | 당하동 1343-1대 | 271.0 | | |
| | | | 9 | 당하동 1343대 | 272.0 | | |

2-2-1-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필 지 | | | 비 고 |
|------|------|---------|-----|---------------|-------|---|
| | | | 번호 | 위치 | 면적(㎡) | |
| 근생1 | ① | 1,947.0 | 1 | 당하동 1286 대 | 649.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86-1 대 | 649.0 | |
| | | | 3 | 당하동 1286-2 대 | 649.0 | |
| | ② | 1,876.2 | 1 | 당하동 1286-5 대 | 626.3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86-6 대 | 624.9 | |
| | | | 3 | 당하동 1286-7 대 | 625.0 | |
| | ③ | 1,763.9 | 1 | 당하동 1286-9 대 | 588.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86-10 대 | 588.0 | |
| | | | 3 | 당하동 1286-11 대 | 587.9 | |
| 근생2 | ① | 2,329.0 | 1 | 당하동 1282-2 대 | 777.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82-3 대 | 776.0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m ²) | 필 지 | | | 비 고 |
|------|---------|---------------------|--------------|---------------|---|---|
| | | | 번호 | 위치 | 면적(m ²) | |
| | | | 3 | 당하동 1282-4 대 | 776.0 | |
| 근생3 | ① | 5,114.0 | 1 | 당하동 1280 대 | 1,101.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80-1 대 | 1,003.0 | |
| | | | 3 | 당하동 1280-2 대 | 1,003.0 | |
| | | | 4 | 당하동 1280-3 대 | 1,003.0 | |
| | | | 5 | 당하동 1280-4 대 | 1,004.0 | |
| | ② | 6,408.5 | 1 | 당하동 1280-6 대 | 1,053.5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80-7 대 | 1,052.0 | |
| | | | 3 | 당하동 1280-8 대 | 1,052.0 | |
| | | | 4 | 당하동 1280-9 대 | 1,051.0 | |
| | | | 5 | 당하동 1280-11 대 | 1,100.0 | |
| 근생4 | ① | 3,511.3 | 1 | 당하동 1243 대 | 877.9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43-1 대 | 877.9 | |
| | | | 3 | 당하동 1243-2 대 | 878.5 | |
| | | | 4 | 당하동 1243-3 대 | 877.0 | |
| 근생5 | ① | 1,693.8 | 1 | 당하동 1248 대 | 570.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48-1 대 | 567.0 | |
| | | | 3 | 당하동 1248-2 대 | 556.8 | |
| | ② | 639.5 | 1 | 당하동 1246-10 대 | 639.5 | • 필지분할불가 |
| | | | 1 | 당하동 1250-1 대 | 719.6 | |
| | ③ | 1,438.6 | 2 | 당하동 1250-2 대 | 719.0 | |
| | | | ④ | 615.3 | 1 | 당하동 1246 대 |
| | ⑤ | 2,037.5 | | | 1 | 당하동 1246-2 대 |
| | | | 2 | 당하동 1246-3 대 | 679.8 | |
| | | | 3 | 당하동 1246-4 대 | 678.1 | |
| ⑥ | 2,916.6 | 1 | 당하동 1246-6 대 | 1,000.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46-7 대 | 958.3 | | |
| | | 3 | 당하동 1246-8 대 | 958.3 | | |
| 근생6 | ① | 2,409.1 | 1 | 당하동 1256-6 대 | 603.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56-7 대 | 601.8 | |
| | | | 3 | 당하동 1256-8 대 | 602.1 | |
| | | | 4 | 당하동 1256-9 대 | 602.2 | |
| 근생7 | ① | 1,619.9 | 1 | 당하동 1229-12 대 | 540.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229-13 대 | 539.9 | |
| | | | 3 | 당하동 1229-14 대 | 540.0 | |
| 근생8 | ① | 1,361.5 | 1 | 원당동 989 대 | 746.9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원당동 989-10 대 | 614.6 | |
| | ② | 1,977.9 | 1 | 원당동 995 대 | 659.9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995-1 대 | 659.0 | |
| | | | 3 | 원당동 995-2 대 | 659.0 | |
| | ③ | 565.2 | 1 | 원당동 995-4 대 | 565.2 | • 필지분할불가 |
| | | | ④ | 1,408.9 | 1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m ²) | 필 지 | | | 비 고 |
|------|------|---------------------|---------|--------------|---------------------|---|
| | | | 번호 | 위치 | 면적(m ²) | |
| | | | 2 | 원당동 1000-9 대 | 704.1 | |
| 근생11 | ① | 3,052.0 | 1 | 불로동 999-5 대 | 611.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불로동 999-4 대 | 610.0 | |
| | | | 3 | 불로동 999-3 대 | 611.0 | |
| | | | 4 | 불로동 999-2 대 | 609.1 | |
| | | | 5 | 불로동 999-1 대 | 610.9 | |
| | ② | 2,063.1 | 1 | 불로동 999-7 대 | 516.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불로동 999-8 대 | 516.0 | |
| | | | 3 | 불로동 999-9 대 | 516.0 | |
| | | | 4 | 불로동 999-10 대 | 515.1 | |
| 근생12 | ① | 1,664.1 | 1 | 불로동 957-2 대 | 549.7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불로동 957-3 대 | 548.8 | |
| | | | 3 | 불로동 957-4 대 | 565.6 | |
| | ② | 1,496.0 | 1 | 불로동 957-6 대 | 492.7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불로동 957-7 대 | 502.2 | |
| | | | 3 | 불로동 957-8 대 | 501.1 | |
| 근생24 | ① | 1,966.0 | 1 | 당하동 1346대 | 656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346-1대 | 655 | |
| | | | 3 | 당하동 1346-2대 | 655 | |
| | ② | 1,063.0 | 1 | 당하동 1346-4대 | 531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당하동 1346-5대 | 532 | |
| | ③ | 2,065.0 | 1 | 당하동 1348-6대 | 689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
| | | | 2 | 당하동 1348-5대 | 688 | |
| | | | 3 | 당하동 1348-4대 | 688 | |
| | 근생27 | ① | 3,600.0 | 1 | 원당동 1018-1 대 | 1,800.0 |
| 2 | | | | 원당동 1018-2 대 | 1,800.0 | |

2-2-1-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 고 |
|--------|------|----------|--------------|----------|---|
| | | | 위치 | 면적(㎡) | |
| AA1 | - | 43,894.0 | 당하동 1314-2 대 | 43,89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지 분할 불허, 합병 불허 • 영구임대 (AA5, AA10-2, AA19, AA35-2) • 국민임대 (AA5, AA7, AA10-2, AA19, AA34, AA35-2) • 임대 (AA26, AA27, AA30, AA31) • 행복주택 (AA9, AA35-1) |
| AA2 | - | 68,818.0 | 당하동 1276-2 대 | 68,818.0 | |
| AA3 | - | 40,736.0 | 당하동 1318-8 대 | 40,736.0 | |
| AA4 | - | 57,122.0 | 당하동 1272-2 대 | 57,122.0 | |
| AA5 | - | 32,871.0 | 당하동 1272-4 대 | 32,871.0 | |
| AA6 | - | 40,514 | - | 40,514 | |
| AA7 | - | 35,941 | - | 35,941 | |
| AA8 | - | 18,169.0 | 당하동 1305-1 대 | 18,169.0 | |
| AA9 | - | 47,962.0 | 원당동 1094 대 | 47,962.0 | |
| AA10-1 | - | 82,176.5 | 원당동 1026-1 대 | 82,176.5 | |
| AA10-2 | - | 38,625.0 | 원당동 1026 대 | 38,625.0 | |
| AA11 | - | 76,618.0 | 원당동 1014 대 | 76,618.0 | |
| AA12-1 | - | 42,974.0 | 원당동 987 대 | 42,974.0 | |
| AA12-2 | - | 88,622.0 | 원당동 987-1 대 | 88,622.0 | |
| AA13-1 | - | 42,566.0 | 원당동 1020-6 대 | 42,566.0 | |
| AA13-2 | - | 57,531.0 | 원당동 1020-5 대 | 57,531.0 | |
| AA14 | - | 55,091.5 | 원당동 1020-1 대 | 55,091.5 | |
| AA34 | - | 55,778.0 | 당하동 1327-1 대 | 55,778.0 | |
| AA35-1 | - | 30,257.0 | 당하동 1335-3 대 | 30,257.0 | |
| AA35-2 | - | 42,492.0 | 당하동 1335-2 대 | 42,492.0 | |
| AB1 | - | 34,047.0 | 당하동 1311-1 대 | 34,047.0 | |
| AB2 | - | 57,524.0 | 당하동 1314 대 | 57,524.0 | |
| AB3-1 | - | 41,342.0 | 당하동 1316-2 대 | 41,342.0 | |
| AB3-2 | - | 65,934.0 | 당하동 1316-1 대 | 65,934.0 | |
| AB4 | - | 69,448.0 | 당하동 1318-6 대 | 69,448.0 | |
| AB5 | - | 44,971.0 | 당하동 1274 대 | 44,971.0 | |
| AB6 | - | 45,732.0 | 당하동 1254-1 대 | 45,732.0 | |
| AB9 | - | 31,541.0 | 원당동 1082-3 대 | 31,541.0 | |
| AB10 | - | 31,188.0 | 원당동 1084-1 대 | 31,188.0 | |
| AB11 | - | 21,818.0 | 원당동 1063 대 | 21,818.0 | |
| AB12 | - | 19,487.0 | 원당동 1065-2 대 | 19,487.0 | |
| AB13 | - | 47,099.0 | 원당동 1063-2 대 | 47,099.0 | |
| AB14 | - | 74,574.0 | 원당동 1024 대 | 74,574.0 | |
| AB15-1 | - | 65,087.0 | 원당동 1022-1 대 | 65,087.0 | |
| AB15-2 | - | 59,667.0 | 원당동 1022 대 | 59,667.0 | |
| AB16 | - | 85,540.0 | 원당동 1018 대 | 85,540.0 | |

2-2-1-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 고 |
|------|------|----------|--------------|----------|---------------------------------------|
| | | | 위치 | 면적(㎡) | |
| RC1 | - | 19,759.0 | 원당동 1061-1 대 | 19,759.0 | • 필지 분할 불허 공동주택의 비율 : 70%이상, 80%미만 |
| RC3 | - | 18,448.0 | 당하동 1235 대 | 18,448.0 | • 필지 분할 불허, 공동주택의 비율 : 80%이상, 90%미만 |
| RC4 | - | 19,958.0 | 당하동 1233-1 대 | 19,958.0 | • 필지 분할 불허, 공동주택의 비율 : 80%이상, 90%미만 |

2-2-1-5 상업용지 (변경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필 지 | | | 비 고 |
|------|---------|----------|--------------|---------------|-----------------------------|--|
| | | | 번호 | 위치 | 면적(㎡) | |
| 계 | | | - | | | |
| C1 | ① | 12,975 | 1 | 원당동 1059-2 대 | 4,273.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3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대지분할가능선 지정획지는 그선에 따라 분할가능 |
| | | | 2 | 원당동 1059-1 대 | 4,529.0 | |
| | | | 3 | 원당동 1059 대 | 4,173.0 | |
| C2 | ① | 8,444.0 | 1 | 원당동 1067-4 대 | 1,718.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원당동 1067-3 대 | 1,718.0 | |
| | | | 3 | 원당동 1067-2 대 | 1,717.0 | |
| | | | 4 | 원당동 1067-1 대 | 1,717.0 | |
| | | | 5 | 원당동 1067 대 | 1,574.0 | |
| C3 | ① | 10,010.6 | 1 | 당하동 1237-4 대 | 1,959.9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당하동 1237-3 대 | 2,010.7 | |
| | | | 3 | 당하동 1237-2 대 | 2,013.3 | |
| | | | 4 | 당하동 1237-1 대 | 2,013.1 | |
| | | | 5 | 당하동 1237 대 | 2,013.6 | |
| C4 | ① | 6,190.5 | 1 | 당하동 1235-10 대 | 1,548.9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당하동 1235-9 대 | 1,546.9 | |
| | | | 3 | 당하동 1235-8 대 | 1,547.1 | |
| | | | 4 | 당하동 1235-7 대 | 1,547.6 | |
| C5 | ① | 7,651.0 | 1 | 당하동 1235-2 대 | 2,551.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당하동 1235-3 대 | 2,550.0 | |
| | | | 3 | 당하동 1235-4 대 | 2,550.0 | |
| C6 | ① | 2,392.0 | 1 | 원당동 1030-10 대 | 798.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원당동 1030-11 대 | 798.0 | |
| | | | 3 | 원당동 1030-12 대 | 796.0 | |
| | ② | 3,951.0 | 1 | 원당동 1030-8 대 | 963.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원당동 1030-7 대 | 996.0 | |
| | | | 3 | 원당동 1030-6 대 | 996.0 | |
| | | | 4 | 원당동 1030-5 대 | 996.0 | |
| ③ | 3,698.0 | 1 | 원당동 1030-3 대 | 924.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원당동 1030-2 대 | 925.0 |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m ²) | 필 지 | | | 비 고 |
|------|---------|---------------------|---------------|---------------|-----------------------------|-----------------------------|
| | | | 번호 | 위치 | 면적(m ²) | |
| | | | 3 | 원당동 1030-1 대 | 924.0 | |
| | | | 4 | 원당동 1030 대 | 925.0 | |
| C7 | ① | 1,080.0 | 1 | 원당동 1033-4 대 | 1,080.0 | • 필지분할불가 |
| | ② | 2,182.0 | 1 | 원당동 1033-2 대 | 1,091.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원당동 1033-1 대 | 1,091.0 | |
| | ③ | 2,135.0 | 1 | 원당동 1033-7 대 | 1,067.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2 | | | 원당동 1033-8 대 | 1,068.0 | | |
| ④ | 2,182.0 | 1 | 원당동 1033-10 대 | 1,091.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원당동 1033-11 대 | 1,091.0 | | |
| C8 | ① | 4,951.0 | 1 | 원당동 1035-5 대 | 1,651.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원당동 1035-4 대 | 1,650.0 | |
| | | | 3 | 원당동 1035-3 대 | 1,650.0 | |
| | ② | 3,854.0 | 1 | 원당동 1035-1 대 | 1,927.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2 | | | 원당동 1035 대 | 1,927.0 | | |
| C9 | ① | 5,279.0 | 1 | 원당동 1028 대 | 5,279.0 | • 필지분할불가 |
| | ② | 9,734.5 | 1 | 원당동 1028-2 대 | 9,734.5 | • 필지분할불가 |
| C10 | ① | 3,820.0 | 1 | 원당동 1040-5 대 | 1,274.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원당동 1040-4 대 | 1,273.0 | |
| | | | 3 | 원당동 1040-3 대 | 1,273.0 | |
| | ② | 2,887.0 | 1 | 원당동 1040-1 대 | 1,443.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2 | | | 원당동 1040 대 | 1,444.0 | | |
| C11 | ① | 3,842.0 | 1 | 원당동 1043-7 대 | 960.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원당동 1043-6 대 | 961.0 | |
| | | | 3 | 원당동 1043-5 대 | 960.0 | |
| | | | 4 | 원당동 1043-4 대 | 961.0 | |
| | ② | 2,060.0 | 1 | 원당동 1043-2 대 | 1,030.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원당동 1043-1 대 | 1,030.0 | |
| | ③ | 3,427.0 | 1 | 원당동 1043-10 대 | 1,714.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원당동 1043-11 대 | 1,713.0 | |
| ④ | 2,735.0 | 1 | 원당동 1043-13 대 | 1,367.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원당동 1043-14 대 | 1,368.0 | | |
| C12 | ① | 4,044.0 | 1 | 원당동 1041 대 | 2,022.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원당동 1041-1 대 | 2,022.0 | |
| | ② | 4,702.0 | 1 | 원당동 1041-3 대 | 2,340.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원당동 1041-4 대 | 2,362.0 | |
| | ③ | 5,495.0 | 1 | 원당동 1041-6 대 | 1,832.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원당동 1041-7 대 | 1,831.0 | |
| | | | 3 | 원당동 1041-8 대 | 1,832.0 | |
| | ④ | 4,162.0 | 1 | 원당동 1041-10 대 | 2,081.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2 | | | 원당동 1041-11 대 | 2,081.0 | | |
| C13 | ① | 6,705.8 | 1 | 불로동 1008-3 대 | 1,118.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m ²) | 필 지 | | | 비 고 |
|------|------|---------------------|-----|---------------|---------------------|---|
| | | | 번호 | 위치 | 면적(m ²) | |
| | | | 2 | 불로동 1008-5 대 | 1,117.9 | |
| | | | 3 | 불로동 1008-2 대 | 1,142.9 | |
| | | | 4 | 불로동 1008-6 대 | 1,093.0 | |
| | | | 5 | 불로동 1008-1 대 | 1,117.0 | |
| | | | 6 | 불로동 1008-7 대 | 1,117.0 | |
| C14 | ① | 5,896.1 | 1 | 불로동 1006-1 대 | 1,848.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 가능 |
| | | | 2 | 불로동 1006-2 대 | 2,048.0 | |
| | | | 3 | 불로동 1006-3 대 | 2,000.1 | |
| C15 | ① | 3,248.3 | 1 | 불로동 1006-14 대 | 1,625.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불로동 1006-13 대 | 1,623.3 | |
| | ② | 7,952.2 | 1 | 불로동 1006-6 대 | 1,291.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불로동 1006-7 대 | 1,279.0 | |
| | | | 3 | 불로동 1006-8 대 | 1,278.1 | |
| | | | 4 | 불로동 1006-9 대 | 1,278.0 | |
| | | | 5 | 불로동 1006-10 대 | 1,422.1 | |
| | | | 6 | 불로동 1006-11 대 | 1,404.0 | |
| C16 | ① | 2,806.5 | 1 | 불로동 1009-1 대 | 1,403.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불로동 1009-2 대 | 1,403.5 | |
| | ② | 5,790.9 | 1 | 불로동 1009-5 대 | 1,154.0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
| | | | 2 | 불로동 1009-6 대 | 1,154.0 | |
| | | | 3 | 불로동 1009-7 대 | 1,162.0 | |
| | | | 4 | 불로동 1009-8 대 | 1,160.0 | |
| | | | 5 | 불로동 1009-9 대 | 1,160.9 | |
| C17 | ① | 3,994.6 | 1 | 불로동 1011-3 대 | 1,331.1 |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 가능 |
| | | | 2 | 불로동 1011-2 대 | 1,331.9 | |
| | | | 3 | 불로동 1011-1 대 | 1,331.6 | |

2-2-1-6 업무용지 (변경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업무1 | - | 2,410.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5 대 | 2,410.0 | • 3필지 이내 분할가능 |
| 업무2 | - | 1,700.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4 대 | 1,700.0 | • 3필지 이내 분할가능 |
| 업무3 | - | 23,306.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41-1 대 | 23,306.0 | • 3필지 이내 분할가능 |
| 업무4 | - | 23,306.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41-2 대 | 23,306.0 | • 3필지 이내 분할가능 |
| 업무5 | - | 2,617.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5 대 | 2,617.0 | • 3필지 이내 분할가능 |
| 업무6 | - | 2,768.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8-3 대 | 2,768.0 | • 3필지 이내 분할가능 |
| 업무8 | - | 2,500.0 | 인천시 서구 불로동 1002-5 대 | 2,500.0 | • 3필지 이내 분할가능 |
| 업무9 | - | 1,685.0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75-8 대 | 1,685.0 | • 3필지 이내 분할가능 |
| 업무10 | - | 1,787.0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75-7 대 | 1,787.0 | • 3필지 이내 분할가능 |
| 업무11 | - | 2,098.7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75-3 대 | 2,098.7 | • 3필지 이내 분할가능 |
| 업무12 | - | 3,361.7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75-2 대 | 3,361.7 | • 3필지 이내 분할가능 |
| 업무13 | - | 4,199.8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75-1 대 | 4,199.8 | • 3필지 이내 분할가능 |
| 업무16 | - | 19,268.9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22-1대 | 19,268.9 | • 3필지 이내 분할가능 |
| 업무17 | - | 16,723.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29대 | 16,723.0 | • 3필지 이내 분할가능 |

2-2-1-7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1) 유치원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유1 | - | 5,340.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5 학 | 5,340.0 | |
| 유2 | - | 1,236.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2 학 | 1,236.0 | |
| 유3 | - | 2,147.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94-3 학 | 2,147.0 | |
| 유4 | - | 4,202.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5-4 학 | 4,202.0 | |
| 유5 | - | 1,210.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56-11 대 | 1,210.0 | |
| 유7 | - | 5,339.4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67-6 학 | 5,339.4 | |
| 유11 | - | 2,700.3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03 대 | 2,700.3 | |

(2) 초등학교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초1 | - | 14,000.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6 학 | 14,000.0 | |
| 초2 | - | 14,000.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 학 | 14,000.0 | |
| 초3 | - | 14,001.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94-2 학 | 14,001.0 | |
| 초4 | - | 14,026.6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2 학 | 14,026.6 | |
| 초5 | - | 14,024.5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5 학 | 14,024.5 | |
| 초6 | - | 14,999.9 | 인천시 서구 불로동 1002-3 학 | 14,999.9 | |
| 초7 | - | 15,004.3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75-5 학 | 15,004.3 | |
| 초8 | - | 12,660 | 인천시 서구 불로동 306-25학 일원 | 12,660 | 목향초등학교 |

(3) 중학교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중1 | - | 14,000.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8 학 | 14,000.0 | |
| 중2 | - | 14,000.2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3 학 | 14,000.2 | |
| 중3 | - | 14,996.3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73-2 학 | 14,996.3 | |
| 중4 | - | 14,930 | 인천시 서구 불로동 306-22학 일원 | 14,930 | 불로중학교 |
| 중6 | - | 14,900.4 | 인천시 서구 불로동 1002-1 학 | 14,900.4 | |

(4) 고등학교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고1 | - | 15,007.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 학 | 15,007.0 | |
| 고2 | - | 15,000.3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1 학 | 15,000.3 | |
| 고3 | - | 15,999.7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67-3 학 | 15,999.7 | |

(5) 교육연구시설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교육1 | - | 15,411.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350-2대 일원 | 15,411.0 | 인천영어마을 |
| 교육2 | - | 6,878.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549학 일원 | 6,878.0 | 서구영어마을 |

(6) 특수학교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특1 | - | 12,000.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48-7대 | 12,000.0 | |

2-2-1-8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1) 주차장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주2 | - | 1,225.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02 차 | 1,225.0 | |
| 주3 | - | 901.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88-6 차 | 901.0 | |
| 주5 | - | 1,419.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82-1 차 | 1,419.0 | |
| 주6 | - | 2,846.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8-7 차 | 2,846.0 | |
| 주7 | - | 2,255.3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6-2 차 | 2,255.3 | |
| 주8 | - | 3,477.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7-5 차 | 3,477.0 | |
| 주9 | - | 2,311.2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50 차 | 2,311.2 | |
| 주10 | - | 1,921.8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35-6 차 | 1,921.8 | |
| 주11 | - | 1,055.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33-5 차 | 1,055.0 | |
| 주12 | - | 1,175.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33-12 차 | 1,175.0 | |
| 주13 | - | 1,682.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3-9 차 | 1,682.0 | |
| 주14 | - | 3,784.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38-1 차 | 3,784.0 | |
| 주15 | - | 1,868.9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8-11 차 | 1,868.9 | |
| 주16 | - | 1,761.1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58 차 | 1,761.1 | |
| 주17 | - | 3,092.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00-7 차 | 3,092.0 | |
| 주18 | - | 778.7 | 인천시 서구 원당동 997 차 | 778.7 | |
| 주20 | - | 1,811.6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97 차 | 1,811.6 | |
| 주21 | - | 2,183.4 | 인천시 서구 불로동 1011-4 차 | 2,183.4 | |
| 주22 | - | 970.3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57-5 차 | 970.3 | |
| 주23 | - | 1,730.4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75-10 차 | 1,730.4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주36 | - | 1,313.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48-2차 | 1,313.0 | |
| 주47 | - | 1,060.7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73차 | 1,060.7 | |
| 주53 | - | 653.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42-3차 | 653.0 | |
| 주54 | - | 2,601.8 | 인천시 서구 불로동 1008-4 차 | 2,601.8 | |

(2) 종교시설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종2 | - | 1,964.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1 종 | 1,964.0 | |
| 종3 | - | 1,330.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0-1 종 | 1,330.0 | |
| 종4 | - | 1,659.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92 종 | 1,659.0 | |
| 종5 | - | 3,414.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8 종 | 3,414.0 | |
| 종6 | - | 2,263.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6-1 종 | 2,263.0 | |
| 종8 | - | 2,695.1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3 종 | 2,695.1 | |
| 종9 | - | 3,280.3 | 원당동 1000-6 종 | 3,280.3 | |
| 종10 | - | 1,486.9 | 인천시 서구 불로동 975-9 종 | 1,486.9 | |
| 종12 | - | 4,498 | 인천시 서구 불로동 196-6종 일원 | 4,498 | 불로동 성가 정 성당 |
| 종16 | - | 1,340.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48-1대 | 1,340.0 | |

(3) 문화복합용지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문복1 | - | 4,899.4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38 대 | 4,899.4 | |

(4) 문화재용지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문1 | - | 18,383.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산82-1임 일원 | 18,383.0 | |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위1 | - | 1,919.1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6-3 주 | 1,919.1 | 가스충전소 |
| 위5 | - | 1,443.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33-3대 | 1,443.0 | 주유소 |
| 위6 | - | 1,470.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33-4대 | 1,470.0 | 가스충전소 |

(6) 가스공급설비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가2 | - | 25.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1-14 잡 | 25.0 | |
| 가3 | - | 25.0 | 인천시 서구 불로동 1000-2 잡 | 25.0 | |

(7) 하수도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오1 | - | 4,620.0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8-2 잡 | 4,620.0 | 오수중계펌프장 |

(8) 유수지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저1 | - | 10,956.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2-5 유 | 10,956.0 | 저류시설 |
| 저2 | - | 6,256.0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8 유 | 6,256.0 | 저류시설 (수변공원1 중복결정) |

(9) 하천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천1 | - | 102,090.7 |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1 천 일원 | 102,090.7 | 계양천(지방2급) |
| 천2 | - | 31,907.8 |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32 천 일원 | 31,907.8 | 소하천(매천) |

※ 천1에 도로중복 면적 5,724㎡(도로중복 4,906㎡, 보행자전용도로 중복 818㎡) 포함

※ 천2에 도로중복 면적 2,652㎡(도로중복 2,092㎡, 보행자전용도로 중복 560㎡) 포함

(10) 도시지원시설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필 지 | | | 비 고 |
|------|------|------------|-----|--------------|----------|---------------|
| | |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 도시14 | - | 51,917.4 | 1 | 당하동 1351-1 대 | 26,208.1 | • 필지간 공동건축 가능 |
| | | | 2 | 당하동 1351-2 대 | 13,117.8 | |
| | | | 3 | 당하동 1351-3 대 | 12,591.5 | |
| 도시15 | - | 54,919.0 | 1 | 당하동 1355-1 대 | 11,861.7 | • 필지간 공동건축 가능 |
| | | | 2 | 당하동 1355-2 대 | 14,593.5 | |
| | | | 3 | 당하동 1355-4 대 | 13,322.4 | |
| | | | 4 | 당하동 1355-3 대 | 15,141.4 | |
| 도시16 | - | 35,550 | 1 | 당하동 1325-1대 | 3,338 | • 필지간 공동건축 가능 |
| | | | 2 | 당하동 1325대 | 9,895 | |
| | | | 3 | 당하동 1325-3대 | 9,431 | |
| | | | 4 | 당하동 1325-2 대 | 12,886 | |

(11) 물류유통시설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필 지 / 획 지 | | | 비 고 |
|-------|------|------------|-----------|--------------|----------|------------------------------|
| | |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 물류1-1 | - | 54,474.6 | 1 | 당하동 1312 대 | 14,804.6 | • 필지/획지간 공동건축 가능 |
| | | | 2 | 당하동 1312-1 대 | 20,963.0 | |
| | | | 3 | 당하동 1312-2 대 | 18,707.0 | |
| 물류1-2 | - | 37,016.0 | 1 | 당하동 1312-3 대 | 15,693.0 | • 필지/획지간 공동건축 가능 |
| | | | 2 | 당하동 1312-4 대 | 21,323.0 | |
| 물류2 | - | 37,505.0 | - | 당하동 1350대 | 37,505.0 | |
| 물류3 | - | 66,064.0 | - | 당하동 1333대 | 66,064.0 | • 대지분할가능선 지정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가능 |

(12) 통신시설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통신1 | - | 94.7 | 원당동 1020-8 잡 | 94.7 | |

2-2-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2-2-2-1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도 면 번 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E1~E2, F1~F5, F15 | E1~E2, F1~F5, F15 | 용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의 용도는 교육용 근린생활시설 및 독립된 가구의 거주공간과 욕실, 취사시설의 설치를 불허함 “일반형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표시는 RD1(일반형), RD2(점포형) 로 구분하며, <별표 1-1>에 따라 허용용도로 지정된 점포겸용 주택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행지침 1편 [1-1-5-9](점포겸용 주택)’의 규정을 따름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기준 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1-1><별표 1-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높 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3층 이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의 1층 전체를 건물의 주출입구, 계단, 주차장, 조경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이용할 경우 해당 층을 층수산정에서 제외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제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
| | | 배 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완충녹지 등에 면하여 1미터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시 주방향은 채광, 통풍, 일조권, 진출입구 등을 고려함 |
| |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벽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함 -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점포겸용주택 건축물의 1층을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할 경우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함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목재, PC콘크리트 판, 내후성 강판, 벽돌, 점토 판, 유리, 무광 금속판재, 외장합판 등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의 본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료 -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재료 - 사용된 재료의 물성을 유지하고 있는 공업 생산재 - 상기 재료가 조합된 공업 생산제품 - 첨단기술에 의해 생겨난 재료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내·외장재는 환경 친화적 자재 및 천연자연자재 사용을 권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친화적 자재’라 함은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서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를 말함 - ‘천연자연재료’는 건축 재료로 사용한 후에도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로 흙, 목재, 석재, 천연직물 등이 있으며 환경부하 저감 재료도 이에 포함함 1층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를 불허함. 단, 경사지 등 지형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 이상으로의 차이가 20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함 |

| 도 면 번 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E1~E2, F1~F5, F15 | E1~E2, F1~F5, F15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겸용 주택의 경우에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적용함 -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10분의 4이내에서 허용하며,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옥상녹화를 권장함 -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경사도는 1:1 ~ 1:3 범위로 하고,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하며 또한,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 또는 모임, 외쪽형식의 경사지붕으로 설치함 -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하며, 옥상녹화를 권장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가능 함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어 설치함 -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 지붕 상부의 돌출을 불허하며 단, 점포겸용 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지붕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계단탑, 물탱크탑을 제외한 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은 4.5미터 혹은 평균 1개 층고 이하로 허용하며, 각종설비(실외기 및 안테나 등)는 전면가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 지붕에 설치함 -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함 • 담장, 대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며,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투시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함 |
| | | 색 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3편 [3-6 도시색채]'의 기준을 적용함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8 옥외광고물]' 기준을 적용함 - 점포겸용 주택의 광고물은 가로형 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하고, 지상1층 상단 정면에 한하여 설치하며 단, 지하층을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하층 출입구 상단에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음 |
| | | 건축선 가구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별표 1-1>에 따름 |



<별표 1-1>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최고층수·세대수

| 구 분 | | 단독주택용지 | |
|-----------|----------|---|--|
| 도면 표시 | | RD1 (일반형) | RD2 (점포형) |
| 건축물 용도 | 허용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사진관, 표구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노래연습장 ※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 • 위치 : 1층 또는 지하 1층 • 규모 : 총 연면적(지하 1층 포함)의 40% 이하 |
| | 불허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
| 건폐율(%) | | • 50% 이하 | • 60% 이하 |
| 기준용적률(%) | | • 80% 이하 | • 180% 이하 |
| 최고층수 | | • 2층 이하 | • 4층 이하 |
| 해당블록 | | • E1~E2 | • F1~F5, F15 |
| 1필지당 가구수 | | • 2가구 이하 | • 5가구 이하 |

<별표 1-2>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면적, 용적률

| 필지번호 | 필지면적(㎡) | 세대수(호) | 인구수(인) | 평균면적(㎡) | 용적률(%) |
|------|----------|--------|--------|---------|---------|
| E1 | 20,912.1 | 87 | 218 | 240 | 80% 이하 |
| E2 | 13,473.1 | 56 | 140 | 241 | 80% 이하 |
| F1 | 23,181.4 | 88 | 220 | 263 | 180% 이하 |
| F2 | 14,051.4 | 53 | 133 | 265 | 180% 이하 |
| F3 | 24,697.0 | 93 | 232 | 266 | 180% 이하 |
| F4 | 24,374.8 | 91 | 228 | 268 | 180% 이하 |
| F5 | 2,975.3 | 10 | 25 | 298 | 180% 이하 |
| F15 | 10,598.6 | 40 | 100 | 265 | 180% 이하 |

2-2-2-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도 면 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근생1~ 근생8, 근생11~ 근생12, 근생24, 근생27 | 근생1~ 근생8, 근생11~ 근생12, 근생24, 근생27 | 용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 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축물의 용도표시는 NL1(간선형), NL2(일반형), NL3(수변형), NL4(교육특화형)로 구분함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기준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기준용적률은 <별표 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높 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 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배 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NL3(수변형)은 3층 이상 건축한계선과 2층이하 벽면지정선을 지정하여 입면 다양성을 도모함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 및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인접 주거지역 건축물과의 경관상 조화를 고려하여 지붕형태를 결정하도록 함 NL3(수변형)의 지붕은 옥상공간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평지붕으로 설치하되, 지붕수평투영면적의 20퍼센트 이내 면적에서 경사구배 10분의 4이상의 경사지붕을 설치할 수 있음 경사지붕 및 평지붕 조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2-1-5-3]의 내용에 따름 외벽의 재료,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함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함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함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1.2미터 이하의 담장, 대문 등을 설치 할 수 있음 |

|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외기의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을 설계할 때부터 냉방기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가능한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를 지양함 - 1층부에 실외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실외기에 부속되는 배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 위치와 연계하여 덕트나 샤프트를 설치함 - 노대에 냉방기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가능한 건축물 정면의 후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외기가 보이지 않도록 차폐함 - 차폐시설은 형태 · 재료 · 색채적 요소의 특화를 통해 디자인 요소로서 계획하고 입면 재료와 유사성을 가지도록 하여 건축물과 일체감이 있게 조성함 - 노대에 많은 수의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층별로 실외기를 설치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 쓰레기 적치장 및 분리수거장 등은 가로환경, 미관, 악취, 방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보행동선에서 차폐 및 분리하고 각 건물별로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함 - 설치장소는 해당 건물의 주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설치하며, 작업동선이 효율적이고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폐기물 발생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적재함을 구비하여야 함 |
| | | 색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채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3편 [3-6도시색채]'의 기준을 따름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3편 [3-8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름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별표 2-1>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구분 | 근린생활시설용지 | |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NL1(간선형) |
| | 권장용도 | - |
|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 |
| 기준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0% 이하 | |
| 최고층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 |
| 해당블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생3~5 | |

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별표 2-1>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속)

| 구 분 | | 근린생활시설용지 |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NL2(일반형) |
| | 권장용도 | - |
|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 건폐율(%) | | • 60% 이하 |
| 기준용적률(%) | | • 200% 이하 |
| 최고층수 | | • 4층 이하 |
| 해당블록 | | • 근생1, 근생6~8, 근생11~12, 근생24, 근생27 |

주) NL2(일반형) 근린생활시설 중 근생13(정승빌딩)의 경우 존치되는 동안에는 존치결정 당시 설치된 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며, 신축 및 개축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기준을 적용

<별표 2-1>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속)

| 구 분 | | 근린생활시설용지 |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NL3(수변형) |
| | 권장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잡화, 의류, 완구, 서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중 상점(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
|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 건폐율(%) | | • 60% 이하 |
| 기준용적률(%) | | • 200% 이하 |
| 최고층수 | | • 4층 이하 |
| 해당블록 | | • 근생2 |

2-2-2-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도 면 번 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B1 AA1~ AA6, AA8~ AA17, AA19~ AA24, AA34~ AA35, AB1~ AB6, AB9~ AB18 | B1 AA1~ AA6, AA8~ AA17, AA19~ AA24, AA34~ AA35, AB1~ AB6, AB9~ AB18 | 용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 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표시는 RL(연립주택용지), RM(아파트용지)로 표시함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 '주택법'제2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부대복리시설 중 단지내 상가, 분산상가 등은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함 |
| | | 건폐율 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적률, 건폐율, 세대수 등은<별표 3-2> <별표 3-3>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높이 계획을 참조함. 단 주택건설사업권자(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여된 세대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음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별표 4-2> <별표 4-3>에서 규정한 내용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확정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봄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최고층수를 지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층수를 계획하도록 유도함, 단 건축물 1개동 내에서의 층수 변화의 경우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기 위하여 3개층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계획할 것을 권장함 인접 주거동간(주거동의 외벽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주거동 중 가장 낮은 층이 15층 이하일 경우에는 인접 주거동간에 2개층이상 층수변화를 주어야하며 단, 가장 낮은 층이 10층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 | 높 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최고층수를 지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층수를 계획하도록 유도함, 단 건축물 1개동 내에서의 층수 변화의 경우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기 위하여 3개층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계획할 것을 권장함 인접 주거동간(주거동의 외벽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주거동 중 가장 낮은 층이 15층 이하일 경우에는 인접 주거동간에 2개층이상 층수변화를 주어야하며 단, 가장 낮은 층이 10층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 | 건축기준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내 공지(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에 따른 기준용적률의 완화항목과 내용은 '시행지침 제1편 [1-2-4-2]'의 규정을 따름 |
| | | 배 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층(10층이하)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28]'의 규정을 따름 "중층(11층~15층)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29]'의 규정을 따름 "탑상형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30]'의 규정을 따름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그 조성방법은 다음사항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각배치구간에 관한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32]'의 기준에 따름 - 단, 대지형상이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함 "통경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33]'의 규정을 따름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1-1-5-34]'의 규정을 따름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단지의 특화요소로서 "부대복리시설"의 위치를 계획하여야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단지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함 |

| 도 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배 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근린생활시설”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소에 집중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함.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 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보행자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함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함)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음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할 것을 권장함 • 건축물의 배치를 위한 단차 발생시 1.5미터 이하의 단차는 구배 50퍼센트 이하의 자연 법면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1.5미터를 초과하는 단차는 자연법면과 옹벽설치가 가능하며, 옹벽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미터 높이를 초과하는 옹벽은 설치를 불허함 - 단, 대지의 형상 및 주변여건 등으로 인해 4.5미터를 초과하는 옹벽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3미터이상 높이의 옹벽설치시 벽면디자인 또는 벽면녹화를 함 - 옹벽 및 법면이 계단식으로 반복될 경우 연속하여 3단 이상의 조성은 불허함 • 옹벽과 마주보는 주거동 최저층 세대의 실내바닥높이가 옹벽 상단부 높이보다 높게하여 옹벽에 의해 최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단, 옹벽과 주거동의 이격거리가 옹벽 높이의 3배 이상이며 옹벽전면부에 식재 또는 벽면녹화 등의 경관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단위세대로 사용가능 함 |
| |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 층의 호수 및 길이(이하 ‘주거동의 길이’라 함)를 제한하며 단,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은 예외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층 이하의 주거동은 8호 이하 또는 100미터 이하로 함 - 11층 이상 15층 이하의 주거동은 6호 이하 또는 60미터 이하로 함 - 16층 이상의 주거동은 4호 이하 또는 60미터 이하로 함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의 경우 판상형 아파트 주거동의 길이는 60미터 이내로 계획하며, 탑상형 아파트는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5호 조합 이내로 계획함 • 주거동의 입면은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 간에는 재질 변화, 색채 변화, 외관의 디자인 변화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함께 적용하여 입면변화를 이루며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외관디자인 등이 지붕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함 • 연립주택용지내 6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4호 간격으로 분절된 입면형태를 권장함 • 공동주택용지내 1개 주동의 입면적은 3,500 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되, 25층 이상 입면적은 20% 범위 내 완화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의 입면적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1-1-5-3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지붕의 형태는 크게 경사지붕, 곡선지붕, 평지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으로 설치할 경우 경사도는 10분의 4 이상 10분의 7 이하로 함 - 10층 이하 아파트의 지붕(옥탑부 포함)은 경사지붕을 권장함 - 11층 이상 아파트의 지붕은 평지붕의 옥상녹화를 권장함 • 향후 생활여건의 변화, 주민의 다양한 거주환경요구 등의 증가에 따라 기존주택의 개선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건축구조 및 설비구조의 “융통형 구조”로 할 것을 권장하며, 그 구조기준은 다음과 같음 |

| 도 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구조 - 단위세대의 평면 변화가 용이한 구조 -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 -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 • “필로티”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에 의한 옥외공간의 단절, 보행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 해소가 필요한 곳에는 필로티 구조 설치를 권장함 - 필로티구조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1-1-5-37]’의 규정을 따름 • 담장 및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내 담장 조성시 담장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며,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투시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함 - 보행자 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방음벽 설치시,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료와 형태를 결정함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함 • 발코니의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저층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개방형 발코니, 돌출형 발코니, 측면 발코니 등 다양한 유형을 활용하여 입면을 변화있게 계획하는 것을 권장함 - 마감 재료는 외벽과 차이를 두어 조성하도록 권장함 • 기타 건축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 아파트(10층 이하)의 경우에는 옥탑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옥탑부의 입면을 주동의 입면과 차별화하여 디자인 함 - 물탱크 등의 부속시설 설치 시에는 외부로의 노출을 금지함 - 공동주택에서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을 발코니에 만들어 차폐함 |
| | | 형 태 | |
| | | 색 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3편 [3-6 도시색채]’의 기준을 따름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8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름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그 지정·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한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6미터 이상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함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 중 모퉁이 변에는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함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름. 단,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별표2 (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름 |

<별표 3-1>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 구 분 | | 공동주택용지 | |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RL (연립주택용지) | RM (아파트용지) |
|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
| 해당블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A1~AA6, AA8~AA17, AA19~AA24, AA34~AA35, AB1~AB6, AB9~AB18 |

<별표 3-2>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높이, 분양형태

| 획지번호 | 주택유형 | 획지면적(㎡) | 세대수(호) | 최고층수 | 건폐율(%) | 기준 용적률(%) | 배치구간 | 비 고 |
|--------|---------|----------|--------|----------------------------|--------|--------------|-------------------|--------------|
| AA1 | 소계 | 43,894.0 | 721 | 25 | 50% 이하 | 185% 이하 | 탐상형, 건축물 직각배치 | |
| | 60㎡~85㎡ | 28,566.0 | 503 | | | | | |
| | 85㎡ 초과 | 15,328.0 | 218 | | | | | |
| AA2 | 소계 | 68,818.0 | 1,131 | 25 | 50% 이하 | 185% 이하 | | |
| | 60㎡~85㎡ | 44,784.0 | 789 | | | | | |
| | 85㎡ 초과 | 24,034.0 | 342 | | | | | |
| AA3 | 60㎡~85㎡ | 40,736.0 | 717 | 25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 50% 이하 | 185% 이하 | 저층배치 | |
| AA4 | 소계 | 57,122.0 | 938 | 25 | 50% 이하 | 185% 이하 | 탐상형, 중층배치 | |
| | 60㎡~85㎡ | 37,149.0 | 654 | | | | | |
| | 85㎡ 초과 | 19,973.0 | 284 | | | | | |
| AA5 | 소계 | 32,871.0 | 1,001 | 25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 50% 이하 | 175% 이하 | 탐상형, 중층배치 | 영구임대 국민임대 |
| | 60㎡ 이하 | 6,075.0 | 251 | | | | | |
| | 60㎡ 이하 | 26,796.0 | 750 | | | | | |
| AA6 | 60㎡ 이하 | 40,514.0 | 822 | 15 | 50% 이하 | 175% 이하 | 건축물 직각배치 | |
| AA8 | 소계 | 18,169.0 | 404 | 25 | 50% 이하 | 195% 이하 | 탐상형배치 | |
| | 60㎡ 이하 | 10,899.0 | 269 | | | | | |
| | 60㎡~85㎡ | 7,270.0 | 135 | | | | | |
| AA9 | 60㎡ 이하 | 47,962.0 | 1,971 | 25 | 50% 이하 | 185% 이하 | 탐상형배치 | 행복주택 |
| AA10-1 | 소계 | 82,176.5 | 1,458 | 25 | 50% 이하 | 185% 이하 | 탐상형, 중층배치 | |
| | 60㎡ 이하 | 26,060.4 | 583 | | | | | |
| | 60㎡~85㎡ | 34,637.2 | 583 | | | | | |
| | 85㎡ 초과 | 21,478.9 | 292 | | | | | |
| AA10-2 | 소계 | 38,625.0 | 1,188 | 25 | 50% 이하 | 175% 이하 | 탐상형, 중층배치 | 영구임대 국민임대 |
| | 60㎡ 이하 | 7,160.0 | 298 | | | | | |
| | 60㎡ 이하 | 31,465.0 | 890 | | | | | |
| AA11 | 소계 | 76,618.0 | 1,259 | 25 | 50% 이하 | 185% 이하 | 건축물 직각배치, 중층배치 | |
| | 60㎡~85㎡ | 49,841.0 | 878 | | | | | |
| | 85㎡ 초과 | 26,777.0 | 381 | | | | | |
| AA12-1 | 60㎡~85㎡ | 42,974.0 | 736 | 20 | 50% 이하 | 180% 이하 | 탐상형배치 | |
| AA12-2 | 소계 | 88,622.0 | 1,417 | 20 | 50% 이하 | 180% 이하 | 탐상형배치 | |
| | 60㎡~85㎡ | 57,637.0 | 988 | | | | | |
| | 85㎡ 초과 | 30,985.0 | 429 | | | | | |
| AA13-1 | 60㎡~85㎡ | 42,566.0 | 702 | 25 | 50% 이하 | 174% 이하 | 탐상형, 건축물 직각배치 | |

| 획지번호 | 주택유형 | 획지면적(㎡) | 세대수(호) | 최고층수 | 건폐율(%) | 기준 용적률(%) | 배치구간 | 비 고 |
|--------|---------|----------|--------|----------------------------|--------|--------------|------------------------------------|--------------|
| AA13-2 | 60㎡~85㎡ | 57,531.0 | 964 | 25 | 50% 이하 | 176% 이하 | 탑상형배치 | |
| AA14 | 소계 | 55,091.5 | 905 | 25 | 50% 이하 | 185% 이하 | 탑상형배치 | |
| | 60㎡~85㎡ | 35,829.1 | 631 | | | | | |
| | 85㎡ 초과 | 19,262.4 | 274 | | | | | |
| AA15 | 소계 | 86,478.6 | 1,498 | 25 | 50% 이하 | 195% 이하 | 탑상형, 건축물 직각배치 | |
| | 60㎡~85㎡ | 56,213.1 | 1,044 | | | | | |
| | 85㎡ 초과 | 30,265.5 | 454 | | | | | |
| AA16 | 소계 | 88,632.9 | 1,535 | 25 | 50% 이하 | 195% 이하 | 탑상형, 건축물 직각배치, 중층배치 | |
| | 60㎡~85㎡ | 57,626.8 | 1,070 | | | | | |
| | 85㎡ 초과 | 31,006.1 | 465 | | | | | |
| AA17 | 소계 | 90,892 | 1,574 | 25 | 50% 이하 | 195% 이하 | 탑상형, 건축물 직각배치, 저층배치, 중층배치 | |
| | 60㎡~85㎡ | 59,084 | 1,097 | | | | | |
| | 85㎡ 초과 | 31,808 | 477 | | | | | |
| AA19 | 소계 | 43,201.5 | 1,323 | 20 | 50% 이하 | 175% 이하 | 탑상형배치 | 영구임대 국민임대 |
| | 60㎡ 이하 | 7,990.9 | 332 | | | | | |
| | 60㎡ 이하 | 35,210.6 | 991 | | | | | |
| AA20 | 소계 | 38,059.4 | 846 | 20 (일부 해발고도 89m 미만) | 50% 이하 | 195% 이하 | 탑상형배치 | |
| | 60㎡ 이하 | 22,816.0 | 563 | | | | | |
| | 60㎡~85㎡ | 15,243.4 | 283 | | | | | |
| AA21 | 60㎡~85㎡ | 76,054.9 | 1,224 | 20 (일부 해발고도 89m 미만) | 50% 이하 | 169% 이하 | 건축물 직각배치 | |
| AA22 | 소계 | 64,008.9 | 1,108 | 25 | 50% 이하 | 195% 이하 | 건축물 직각배치, 중층배치 | |
| | 60㎡~85㎡ | 41,595.0 | 772 | | | | | |
| | 85㎡ 초과 | 22,413.9 | 336 | | | | | |
| AA23 | 소계 | 60,564.6 | 1,049 | 25 | 50% 이하 | 195% 이하 | 탑상형배치 | |
| | 60㎡~85㎡ | 39,363.5 | 731 | | | | | |
| | 85㎡ 초과 | 21,201.1 | 318 | | | | | |
| AA24 | 소계 | 62,718.5 | 1,086 | 25 | 50% 이하 | 195% 이하 | 탑상형배치 | |
| | 60㎡~85㎡ | 40,776.9 | 757 | | | | | |
| | 85㎡ 초과 | 21,941.6 | 329 | | | | | |
| AA34 | 60㎡ 이하 | 55,778.0 | 1,746 | 25 | 50% 이하 | 195% 이하 | 건축물 직각배치 | 국민임대 |
| AA35-1 | 60㎡ 이하 | 30,257.0 | 855 | 30 | 50% 이하 | 175% 이하 | 건축물 직각배치, 중층배치 | 행복주택 |
| AA35-2 | 소계 | 42,492.0 | 1,083 | 30 | 50% 이하 | 175% 이하 | 건축물 직각배치, 저층배치, 중층배치 | 국민임대 영구임대 |
| | 60㎡ 이하 | 27,243.0 | 593 | | | | | |
| | 60㎡ 이하 | 15,249.0 | 490 | | | | | |
| AB1 | 소계 | 34,047.0 | 873 | 25 | 50% 이하 | 225% 이하 | 탑상형배치 | |
| | 60㎡ 이하 | 20,412.0 | 581 | | | | | |
| | 60㎡~85㎡ | 13,635.0 | 292 | | | | | |
| AB2 | 소계 | 57,524.0 | 1,073 | 25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 50% 이하 | 210% 이하 | 탑상형, 건축물 직각배치 | |
| | 60㎡~85㎡ | 37,403.0 | 748 | | | | | |
| | 85㎡ 초과 | 20,121.0 | 325 | | | | | |

| 획지번호 | 주택유형 | 획지면적(㎡) | 세대수(호) | 최고층수 | 건폐율(%) | 기준 용적률(%) | 배치구간 | 비 고 |
|--------|---------|-------------|--------|----------------------------|--------|--------------|-------------------|-----|
| AB3-1 | 소계 | 41,342.0 | 789 | 25 (해발고도 105m 미만) | 50% 이하 | 215% 이하 | 건축물 직각배치 | |
| | 60㎡-85㎡ | 26,880.0 | 550 | | | | | |
| | 85㎡ 초과 | 14,462.0 | 239 | | | | | |
| AB3-2 | 소계 | 65,934.0 | 1,229 | 25 (해발고도 105m 미만) | 50% 이하 | 210% 이하 | 건축물 직각배치 | |
| | 60㎡-85㎡ | 42,828.0 | 856 | | | | | |
| | 85㎡ 초과 | 23,106.0 | 373 | | | | | |
| AB4 | 소계 | 69,448.0 | 1,295 | 25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 50% 이하 | 210% 이하 | | |
| | 60㎡-85㎡ | 45,170.0 | 903 | | | | | |
| | 85㎡ 초과 | 24,278.0 | 392 | | | | | |
| AB5 | 60㎡-85㎡ | 44,971.0 | 920 | 30 | 50% 이하 | 215% 이하 | | |
| AB6 | 60㎡-85㎡ | 45,732.0 | 936 | 30 | 50% 이하 | 215% 이하 | 탑상형배치 | |
| AB9 | 소계 | 31,541.0 | 773 | 30 | 50% 이하 | 215% 이하 | 탑상형배치 | |
| | 60㎡ 이하 | 18,934.0 | 515 | | | | | |
| | 60㎡-85㎡ | 12,607.0 | 258 | | | | | |
| AB10 | 소계 | 31,188.0 | 764 | 30 | 50% 이하 | 215% 이하 | 탑상형배치 | |
| | 60㎡ 이하 | 18,722.0 | 509 | | | | | |
| | 60㎡-85㎡ | 12,466.0 | 255 | | | | | |
| AB11 | 소계 | 21,818.0 | 535 | 30 | 50% 이하 | 215% 이하 | 탑상형배치 | |
| | 60㎡ 이하 | 13,122.0 | 357 | | | | | |
| | 60㎡-85㎡ | 8,696.0 | 178 | | | | | |
| AB12 | 소계 | 19,487.0 | 477 | 30 | 50% 이하 | 215% 이하 | 탑상형배치 | |
| | 60㎡ 이하 | 11,663.0 | 317 | | | | | |
| | 60㎡-85㎡ | 7,824.0 | 160 | | | | | |
| AB13 | 소계 | 47,099.0 | 941 | 30 | 50% 이하 | 225% 이하 | 탑상형배치 | |
| | 60㎡-85㎡ | 30,626.0 | 656 | | | | | |
| | 85㎡ 초과 | 16,473.0 | 285 | | | | | |
| AB14 | 60㎡-85㎡ | 74,574.0 | 1,455 | 30 | 50% 이하 | 205% 이하 | 건축물 직각배치 | |
| AB15-1 | 60㎡-85㎡ | 65,087.0 | 1,301 | 30 | 50% 이하 | 210% 이하 | 건축물 직각배치 | |
| AB15-2 | 60㎡-85㎡ | 59,667.0 | 1,193 | 30 | 50% 이하 | 210% 이하 | | |
| AB16 | 소계 | 85,540.0 | 1,557 | 30 | 50% 이하 | 205% 이하 | 건축물 직각배치 | |
| | 60㎡-85㎡ | 55,596.0 | 1,085 | | | | | |
| | 85㎡ 초과 | 29,944.0 | 472 | | | | | |
| AB17 | 60㎡-85㎡ | 46,056.8 | 943 | 30 | 50% 이하 | 215% 이하 | 건축물 직각배치, 중층배치 | |
| AB18 | 소계 | 90,681.2 | 1,813 | 30 | 50% 이하 | 225% 이하 | 건축물 직각배치 | |
| | 60㎡-85㎡ | 58,970.1 | 1,264 | | | | | |
| | 85㎡ 초과 | 31,711.1 | 549 | | | | | |
| 합 | 계 | 2,464,651.3 | 49,306 | - | - | - | | |

<별표 3-3> 공동주택(연립주택)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높이, 분양형태

| 필지번호 | 주택유형 | 획지면적(㎡) | 세대수(호) | 최고층수 | 건폐율(%) | 기준 용적률(%) | 배치구간 | 비 고 |
|------|---------|----------|--------|------|--------|-----------|----------|-----|
| B1 | 60㎡~85㎡ | 15,751.5 | 150 | 4 | 50% 이하 | 100% 이하 | 건축물 직각배치 | |
| 합 | 계 | 15,751.5 | 150 | - | - | - | | |

주1)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주2) 유형별 획지면적과 평균면적은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2-2-2-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도 면 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RC1, RC3, RC4 | RC1, RC3, RC4 | 용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 4-1>에 따르며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공동주택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RC1의 경우 7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RC3, RC4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RC7의 경우 40% 이상 50% 미만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 및 위락기능은 불허용도로 함 - 건축물 용도표시는 AC로 함 주거와 주거의 용도가 수직적으로 복합된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주거외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함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상복합부분의 주택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별표 4-2>참조 전체적인 건축물의 높이는 상업용지와의 조화를 도모토록 함 |
| | | 기준 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주택규모는 <별표 4-2>에 규정된 규모 이하로 하며, 주택건설사업권자(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여된 세대수 범위 내에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음 |
| | | 높 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지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제한은 <별표 4-2>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음. 단 확정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 | 건축기준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항목과 내용은 '시행지침 제1편 [1-2-4-1] 및 [1-2-4-2]'의 규정에 따름 |
| | | 배 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외 용도의 건축물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에 면하여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단, 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 |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25층 이하 1개 주거동 입면적은 3,500제곱미터 이하,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 이하로 함 주동의 지붕형태는 평지붕에 옥상녹화를 권장함 건축물 1층 상업시설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함 담장설치는 불허함. 단 부득이하게 담장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담장의 높이 1.2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투시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
| | | 색 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채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3-6 도시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8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름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대지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 주변지역의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별표 4-1>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 용도

| 구 분 | | 주상복합용지 |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AC2 (준주거지역) |
|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연구소,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주1)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 해당블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1, RC3, RC4 |

주1)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0%에 한하여 설치가능

주2)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

<별표 4-2> 주상복합부분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 필지번호 | 주택유형 | 획지면적 (㎡) | 세대수 (호) | 최고층수 | 건폐율(%) | 기준용적률(%) |
|------|---------|-------------|------------|------|--------|-----------------------------|
| RC1 | 소계 | 19,759.0 | 390 | 35 | 60 | 250% 이하 (공동주택 : 200% 미만) |
| | 60㎡-85㎡ | 14,804.0 | 307 | | | |
| | 85㎡ 초과 | 4,955.0 | 83 | | | |
| RC3 | 소계 | 18,448.0 | 447 | 35 | 60 | 300% 이하 (공동주택 : 270% 미만) |
| | 60㎡-85㎡ | 12,956.0 | 333 | | | |
| | 85㎡ 초과 | 5,492.0 | 114 | | | |
| RC4 | 소계 | 19,958.0 | 483 | 35 | 60 | 300% 이하 (공동주택 : 270% 미만) |
| | 60㎡-85㎡ | 13,980.0 | 359 | | | |
| | 85㎡ 초과 | 5,978.0 | 124 | | | |
| 합 계 | | 58,165.0 | 1,320 | - | - | - |

2-2-2-5 상업용지(변경없음)

| 도 면 번 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C1~17 | C1~17 | 용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 5-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상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권장용도를 확보하며,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단 C9에 한해서는 가구 ①, ②를 통합하여 권장용도 비율 적용 상업시설용지내 광장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은 '판매시설' 및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을 1층 전면권장용도로 지정하며 1층부 전면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1층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권장용도로 확보하여야 함 상업시설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상업시설용지에 건축이 가능한 최대규모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단,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에 의거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함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5-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기준 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5-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높 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5-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건축기준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항목과 내용은 '시행지침 제1편 [1-2-4-1]'의 규정에 따름 |
| | | 배 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가로, 보행자 전용도로, 광장, 공원 순으로 향하도록 함 |
| |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 및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 함 계단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함 건축물의 주전면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평균지반고 이상으로 20센티미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2분의 1이하로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실외기의 설치기준은 '시행지침 제2편 [2-3-4-7]'의 기준을 따름 환기탑의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통행로에 설치하지 않음 -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의 식재 등으로 충분히 차폐될 수 있도록하며 환기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보다 높이 설치함 -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함 -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함 |
| 색 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채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3-6 도시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8 옥외광고물]' 기준을 따름 | | |

| 도 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가로활성화 및 가로 디자인 특화 조치'를 위해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및 벽면지정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지구단위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및 벽면지정선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대지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 주변지역의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용지 중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준을 따름 |

<별표 5-1> 상업용지 건폐율·용적률·높이

| 구 분 | 일반상업지역(C) | | | | |
|-----------|-----------|-----------------------------|----------|------------------------------------|----------|
| | S2(역세권) | S3(간선도로) | | S4(이면도로) | |
| 건폐율 (%) | • 70%이하 | • 70%이하 | | • 70% 이하 | |
| 기준용적률 (%) | • 700%이하 | • 600%이하 | | • 500% 이하 | |
| 최고층수 | - | • 12층 이하 | • 20층 이하 | • 8층 이하 | • 10층 이하 |
| 해당블록 | • C9 | • C3, C5, C8, C12, C15, C16 | • C1 | • C6, C7, C10, C11, C13, C14, C17, | • C2, C4 |

주1) S3~S5의 해당블록별 최고층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별표 5-2> 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 구분 | | 일반상업지역 C | | |
|------------------|-----------|--|--|--|
| | | S2(역세권) | S3(간선도로) | S4(이면도로) |
| 주거 및 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 | × | × |
| | 공동주택 | × | × | × |
| | 업무시설 | ○ | ● | ○ |
|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 제한상영관 제외 | ○ 제한상영관 제외 | ○ 제한상영관 제외 |
| | 종교시설 | ○ 종교집회장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 ○ 종교집회장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 ○ 종교집회장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
| | 운동시설 | ○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 ○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 ○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
| | 수련시설 | × | × | × |
| | 노유자시설 | × | × | × |
| | 관광휴게시설 | ○ | ○ | × |

| 구분 | | 일반상업지역 C | | |
|---------------|-----------------|----------------------|-------------------------|-------------------------|
| | | S2(역세권) | S3(간선도로) | S4(이면도로) |
| 판매시설군 | 판매시설 | ● | ● |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
| | 위락시설 | ○ | ○ (C15-②, C16-②, 불허) | ○ (C13,C14,C17는 불허) |
| | 숙박시설 | ○ | × | ○ (C13,C14,C17는 불허) |
| 교육연구 의료시설군 | 의료시설 | ○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제외) | ○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제외) | ○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제외) |
| | 교육연구시설 | ○ | ○ | ○ |
| 산업시설군 | 공장 | × | × | × |
| | 창고시설 | × | × | × |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 | × |
| 기타 시설군 | 1종 근린생활시설 | ○ | ○ | ● |
| | 2종 근린생활시설 | ○ | ○ | ● |
| | 운수시설 | × | × | × |
| | 자동차 관련 시설 |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 | 교정 및 군사시설 | × | × | × |
| | 방송통신시설 | ○ | ○ | ○ |
| | 발전시설 | × | × | × |

주1) ●권장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X:불허용도

주2)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주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2-2-2-6 업무 및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도 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업무1~6, 업무8~13, 업무16~17 유1~5, 유7, 유11, 초1~8, 중1~4, 중6, 고1~3, 교육1~2, | 업무1~6, 업무8~13, 업무16~17 | 용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표시는 PU(업무용지)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6-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
| | | 건폐율 |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6-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기준용적률 |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6-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높 이 |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6-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건축기준 완화 |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항목과 내용을 '시행지침 제1편 [1-2-4-1]'의 규정에 따름 |

| 도 면 번 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특1 | | 배 치 | • 경사지에 위치한 건축물은 지형을 활용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함 |
| | | 형 태 |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1.2미터 이하의 담장, 대문 설치 가능 |
| | | 색 채 | - |
| | | 건축선 | •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사용자의 안전과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 유1~5, 유7, 유11, 초1~8, 중1~4, 중6, 고1~3, 교육1~2, 특1 | 용 도 | • 건축물 용도표시는 E(교육시설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
| | | 건폐율 |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 | | 기준용적률 |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 | | 높 이 |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 | | 배 치 | • 교육시설의 경우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 • 경사지에 위치한 건축물은 지형을 활용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함 |
| | | 형 태 |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1.2미터 이하의 담장, 대문 설치가능 |
| | | 색 채 | - |
| | | 건축선 | •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사용자의 안전과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교육시설용지 내 지정된 건축한계선은 소음저감을 위한 이격기능으로 경비실 및 담장은 건축한계선 적용을 제외함 |
| | | 기 타 | • 교육시설용지 중 '대1'은 「사적 제202호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7-11호)」 구역에 해당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현상변경 허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등 문화재 관련 법령 및 문화재청에 고시된 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해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

<별표 6-1> 업무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구분 | | 업무용지 | |
|-----------|------|---|---|
| 도면표시 | | PU1 | PU2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시설(주민자치센터, 119안전센터, 순찰지구대, 우체국, 수도사업소)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가, 나, 다목에 한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시설(법원, 검찰청, 지방행정타운(자치행정, 교육청, 보건소, 세무서 등), 소방서, 경찰서)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운동시설 - 방송통신시설 |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
| 건폐율(%) | | • 50% 이하 | • 60% 이하 |
| 기준용적률(%) | | • 200% 이하 | • 500% 이하 |
| 최고층수 | | • 5층 이하 | • 10층 이하 |
| 해당블록 | | • 업무1~2, 업무5~6, 업무8~13 | • 업무3~4, 업무16~17 |

주) 운동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가, 나, 다목에 한함)을 계획하는 경우 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계획한다.

<별표 6-2>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구분 | | 교육시설용지 | | | |
|-----------|------|--|---|---|---|
| 도면표시 | | E1 | E2 | E3 | E4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른 병설유치원에 한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
| 건폐율(%) | | • 50% 이하 | • 50% 이하 | • 50% 이하 | • 50% 이하 |
| 기준용적률(%) | | • 200% 이하 | • 200% 이하 | • 200% 이하 | • 200% 이하 |
| 최고층수 | | • 4층 이하 | • 5층 이하 | • 5층 이하 | • 5층 이하 |
| 해당블록 | | • 유1~5, 유7, 유11 | • 초1~8 | • 중1~4, 중6 | • 고1~3 |

주) 유치원 용지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함

<별표 6-2>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속)

| 구분 | | 교육시설용지 | |
|-----------|------|---|---|
| 도면표시 | | E5 | E6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시설 (학교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시설 중 특수학교 |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
| 건폐율(%) | | • 20% 이하 | • 50% 이하 |
| 용적률(%) | | • 80% 이하 | • 200% 이하 |
| 최고층수 | | • 4층 이하 | • 5층 이하 |
| 해당블록 | | • 교육1~2 | • 특1 |

주) 교육연구시설(교육1~2)은 준치시설로서 준치되는 동안에는 준치결정 당시 설치된 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며, 신축 및 개축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를 적용

2-2-2-7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분 | 계 획 내 용 |
|-----------------------|-----------------------|---------|---|
| 공 통 | 공 통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서로 조화를 고려함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3편 [3-6 도시색채]' 기준을 따름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8 옥외광고물]' 기준을 따름 |
| | | 건축기준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항목과 내용은 '시행지침 제1편 [1-2-4-1]'의 규정에 따름 |
| 종2~6, 종8~10, 종12, 종16 | 종2~6, 종8~10, 종12, 종16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시설용지의 지붕 형태 및 옥탑 등에 관한 사항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 네온, 백열등류의 장식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 |
| | | 용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표시는 RF(종교시설)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기준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높 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색 채 |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 |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용지 중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준을 따름 |
| 가2~가3 | 가2~가3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표시는 Z2(공급처리시설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기준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높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배치 | - |
| | | 색채 |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오1 | 오1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표시는 Z5(공급처리시설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기준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높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배치 | - |
| | | 색채 |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분 | 계 획 내 용 |
|--|--|-------|--|
| 저1~2 | 저1~2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표시는 Z6(공급처리시설용지)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기준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높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배치 | - |
| | | 색채 |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위1, 위5~위6 | 위1, 위5~위6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표시는 주유(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총(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7-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블록내 모든시설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때 부대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계는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40퍼센트 이하로 함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기준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높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배치 | - |
| | | 색채 |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주2~3, 주5~주18, 주20~주23, 주36, 주47, 주53~주54 | 주2~3, 주5~주18, 주20~주23, 주36, 주47, 주53~주54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표시는 P(자동차 관련시설용지)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7-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해 건축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제외)(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함)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기준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높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용적률)의 3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지상 1층부에는 바닥면적의 5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함 |
| | | 색채 |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중 문화재현상변경허가기준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름 |

|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분 | 계 획 내 용 |
|----------|---------------|-------|--|
| 도시14~16 | 도시14~16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표시는 I(도시지원시설용지)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7-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기준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높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배치 | - |
| | | 색채 |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물류1~3 | 물류1~3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표시는 DC(물류유통시설용지)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7-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기준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높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배치 | - |
| | | 색채 |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통1 | 통1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표시는 CF(통신시설용지)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7-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기준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높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배치 | - |
| | | 색채 |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문1 | 문1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표시는 CH(문화재용지)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7-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기준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높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배치 | - |
| | | 색채 |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분 | 계 획 내 용 |
|-------|------------|-------|--|
| 문복1 | 문복1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표시는 CU(문화복합용지)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기준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높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 | | 배치 | - |
| | | 색채 |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별표 7-1> 종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구분 | | 종교시설용지 | |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RF1 | |
|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
| | 기준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
| | 최고층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이하, 해발고도 105m 이하(종1) |
| | 해당블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2~6, 종8~10, 종16, |

주1) 종교시설용지 중 종12(블로동 성당)은 존치시설로서 존치되는 동안에는 존치결정 당시 설치된 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며, 신축 및 개축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를 적용한다.
 주2)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을 계획하는 경우 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계획한다.

<별표 7-2> 공급처리시설 및 하수도, 방재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구분 | | 공급처리시설용지 | |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Z2 | |
|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시설 |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이하 | |
| | 기준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 |
| | 최고층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 |
| | 해당블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2~가3 | |

<별표 7-2> 공급처리시설 및 하수도, 방재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속)

| 구분 | | 공급처리시설용지 | |
|-----------|--------|--------------|--------------|
| 도면표시 | | Z5 | Z6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 오수중계펌프장 | • 저류지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 | 건폐율(%) | • 20% 이하 | • 20% 이하 |
| 기준용적률(%) | | • 80% 이하 | • 80% 이하 |
| 최고층수 | | • 4층 이하 | • 4층 이하 |
| 해당블록 | | • 오1 | • 저1~2 |

<별표 7-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구분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
|-----------|--------|---|---|
| 도면표시 | | 주유 | 총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호에 의한 부대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호에 의한 부대시설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 | 건폐율(%) | • 50% 이하 | • 20% 이하 |
| 기준용적률(%) | | • 100% 이하 | • 80% 이하 |
| 최고층수 | | • 4층 이하 | • 4층 이하 |
| 해당블록 | | • 위5 | • 위1, 위6 |

<별표 7-4>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구분 | | 자동차 관련시설용지 | | |
|-----------|--------|--|--|---|
| 도면표시 | | P1 | P2 | P3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
| | 건폐율(%) | • 80% 이하 | • 80% 이하 | • 80% 이하 |
| 기준용적률(%) | | • 560% 이하 | • 400% 이하 | • 240% 이하 |
| 최고층수 | | • 7층 이하 | • 5층 이하 (주14는 계획지반고에서 20m 이하) | • 3층 이하 |
| 해당블록 | | • 주8, 주10~13 | • 주9, 주14, 주19, 주21, 주23, 주54 | • 주2~3, 주5~7, 주15~18, 주20, 주22, 주36, 주47, 주53 |

주) 주14의 지붕은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별표 7-5>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구분 | | 도시지원시설용지 |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11 |
|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 - 업무시설 - 운동시설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방송통신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아항 •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건폐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
| 기준용적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 이하 |
| 최고층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층 이하 • 10층 이하, 해발고도 105m 미만(도시1),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도시2~3) |
| 해당블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14,16 |

주1)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름
 주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30%와 업무시설로 조성되는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주3) 판매시설 중 상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 7-5>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속)

| 구분 | | 도시지원시설용지 |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13 |
|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 - 업무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아항 |
| | 불허용도 | |

| 구분 | 도시지원시설용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
| 기준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 이하 |
| 최고층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층 이하 • 10층 이하, 해발고도 105m 미만(도시1),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도시2~3) |
| 해당블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15 |

- 주1)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름
 주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30%와 업무시설로 조성되는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주3) 판매시설 중 상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 7-6> 물류유통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구분 | 물류유통시설용지 | |
|-----------|----------|--|
| | 도면표시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DC1</div> <div style="width: 45%;">DC2</div> </div>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유통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물류단지시설 중 참고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대규모점포 - 전문상가단지 - 집배송시설 - 공동집배송센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 창고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물류1-2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물류1-2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p>주) 물류1-1(서측3필지) : 대규모점포, 판매시설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함</p> |
| | 불허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구분 | 물류유통시설용지 | |
|----------|-------------------|-------------------------|
| 건폐율(%) | • 60% 이하 | • 60% 이하 |
| 기준용적률(%) | • 300% 이하 | • 300% 이하 |
| 최고층수 | •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 • 해발고도 105m 미만(물류2에 한함) |
| 해당블록 | • 물류1-1, 물류1-2 | • 물류2,3 |

<별표 7-7> 통신시설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구분 | | 통신시설용지 |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CF1 |
|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통신용 시설 - 방송통신시설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건폐율(%) | | • 50% 이하 |
| 기준용적률(%) | | • 80% 이하 |
| 최고층수 | | • 4층 이하 |
| 해당블록 | | • 통1 |

<별표 7-8> 문화복합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구분 | | 문화복합용지 |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CU1 |
|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 전시장, 동·식물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 판매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 중 소매시장, 상점(일반게임제공업 제외) 주)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상 확보해야 함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건폐율(%) | | • 50% 이하 |
| 기준용적률(%) | | • 200% 이하 |
| 최고층수 | | • 4층 이하(계획지반고에서 20m 미만) ※옥상층 부대시설 높이 포함 |
| 해당블록 | | • 문복1 |

<별표 7-9> 문화재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구분 | | 문화재용지 |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CH1 |
| | 허용용도 |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시설에 한함)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건폐율(%) | | • 20% 이하 |
| 기준용적률(%) | | • 50% 이하 |
| 최고층수 | | • 1층 이하 |
| 해당블록 | | • 문1 |

2-2-3 교통처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2-3-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대지내 차량 진·출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 부설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유주차대수를 확보함.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진·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으로 함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필지 경계부는 담장설치를 불허함. 단, 필지의 구분을 위한 경계석의 표시는 가능 3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공용주차를 위하여 따로 정한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함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

2-2-3-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대지내 차량 진·출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 부설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름 |
| 자전거 보관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가 지정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층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

2-2-3-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대지내 차량 진·출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권장구간 내의 범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함 차량 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급 이상의 도로 및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10미터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단지의 한 면이 생활가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가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함 |
| 대지내 차량 동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함 단지내 부대복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함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에는 단지내 도로의 기존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함 |
| 부설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단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공 |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p>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별표4(주차장 설치기준)의 기준을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지하 주차장은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하며, 단지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상주차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함 |
| 자전거 보관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주동의 경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함 •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규모는 1개소 당 '시행지침 제2편<표2-4-6>자전거 보관소의 1개소 당 설치규모'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함 |

2-2-3-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대지내 차량 진·출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차량 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 대지내 차량 동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 대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함 |
| 부설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도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블록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법적주차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이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의 9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함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를 설치함 |
| 자전거 보관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의 자전거 보관소는 세대당 0.3대의 규모로 각 주동에서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함 • 상업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이때, 1층 전면공지가 지정된 상업시설의 경우 상업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

2-2-3-5 상업용지 (변경없음)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대지내 차량 진·출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차량 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 대지내 차량 동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 대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함 |
| 부설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함 |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도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블록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법적주차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의 9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함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를 설치함 |
| 자전거 보관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동의 자전거 보관소는 세대당 0.3대의 규모로 각 주동에서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함 상업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이때, 1층 전면공지가 지정된 상업시설의 경우 상업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

2-2-3-6 업무 및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대지내 차량진·출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대지내 차량동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 부설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함 |
| 자전거 보관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이때, 1층 전면공지가 지정된 상업시설의 경우 상업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

2-2-3-7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대지내 차량진·출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함.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진·출입구만을 허용함 |
| 부설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 |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p>할 것을 권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단, 전면도로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를 권장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 |
| <p>자전거 보관소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의료복합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도시지원시설, 물류유통시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 자전거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름 |

2-2-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2-4-1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도 면 번 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E1~E2, F1~F3, F15 | E1~E2, F1~F3, F15 | 대지내공지 | - |
| | | 기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지침 [1-1-5-81], [2-1-7] |

2-2-4-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도 면 번 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근생1~8, 근생11~12, 근생24, 근생27 | 근생1~8, 근생11~12, 근생24, 근생27 | 대지내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지침 [1-1-5-39], [1-1-5-40], [2-3-5] |
| | | 기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지침 [1-1-5-81], [2-3-7] |

2-2-4-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도 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B1 AA1~6, AA8~17, AA19~24, AA34~35, AB1~6, AB9~18 | B1 AA1~6, AA8~17, AA19~24, AA34~35, AB1~6, AB9~18 | 대지내공지 | • 시행지침 [1-1-5-39], [1-1-5-40], [1-1-5-41], [1-1-5-42], [2-4-6] |
| | | 기타사항 | • 시행지침 [1-1-5-81], [1-1-5-82], [1-1-5-83], [2-4-8] |

2-2-4-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도 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RC1, RC3, RC4 | RC1, RC3, RC4 | 대지내공지 | • 시행지침 [1-1-5-39], [1-1-5-40], [2-5-6] |
| | | 기타사항 | • 시행지침 [1-1-5-81], [1-1-5-82], [1-1-5-83], [2-5-8] |

2-2-4-5 상업용지 (변경없음)

| 도 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C2~C8, C10~C17 | C2~C8, C10~C17 | 대지내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지침 [1-1-5-39], [1-1-5-40], [2-6-5] •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라스형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등 건축선 후퇴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옥외영업이 가능한 전면공지로 상권 및 가로 활성화 등의 기능을 가지며, 그 위치와 설치 규정은 아래와 같다. • [별표 9]의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규정에 따라 조성 |
| | | 기타사항 | • 시행지침 [1-1-5-81], [1-1-5-82], [1-1-5-83], [2-6-7] |
| C1,C9 | C1,C9 | 대지내공지 | • 시행지침 [1-1-5-39], [1-1-5-40], [2-6-5] |
| | | 기타사항 | • 시행지침 [1-1-5-81], [1-1-5-82], [1-1-5-83], [2-6-7] |

【별표9】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규정

•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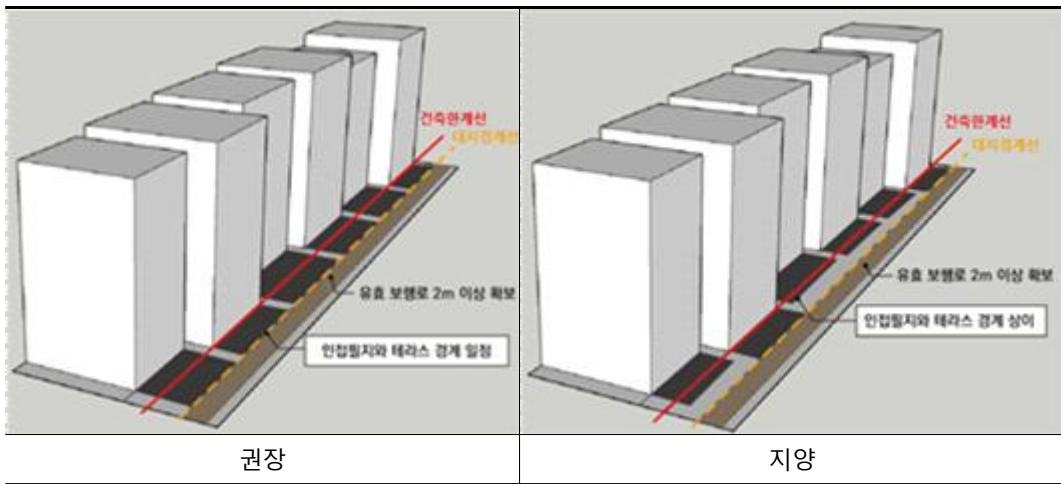
- 테라스형 전면공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보도부속형 및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전면공지에 연결한 도로의 유효 보도폭원이 2m 이상인 경우
- 상업지역, 관광지, 지역명소, 먹자골목·음식특화거리, 가로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경우
- 전면공지 깊이가 2m 이상인 경우

• 전면공지의 테라스 공간 설치 기준

- 전면공지와 접하는 도로(보도)와의 경계에는 연석(경계석)을 설치하여 도로와 전면공지를 구분한다.
- 전면공지의 깊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 테라스 공간은 최대 3m까지 조성할 수 있으며, 인접 필지의 전면공지 깊이와 동일하게 조성한다.
- 전면공지의 깊이가 3m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공간을 테라스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권장하며, 이 경우에도 인접 필지의 테라스 깊이와 동일하게 조성한다.

【 테라스 공간 조성 예시 】



•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허용 업종

• 테라스형 전면공지 시설물 세부사항

- 단차 및 바닥

- 테라스형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등의 경우에는 도로 노면 또는 도로경계석 상단 높이)와 높낮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사지역 등 지형여건에 따라 설치하는 데크 형태의 테라스는 예외로 한다.
- 바닥포장은 연접 도로(보도) 및 인접 필지와 조화를 이루는 내구성 있는 재료로 한다

- 담장(난간)

- 전면공지에는 담장, 기둥, 천막, 바람막이(비투시성) 등을 설치하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데크 형태의 테라스에는 0.9~1.2m의 투시형 난간을 설치할 수 있다,

- 차양(어닝)

- 차양은 방수 기능의 재질 및 접이식 구조(고정식 설치 불가)로 설치하며, 인접 필지의 차양 높이와 일정하게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차양의 프레임은 불연성 소재를 사용한다.

- 의자 및 테이블

- 의자와 테이블은 이동식 및 접이식만 사용한다(고정식 및 일체형 설치 불가)
- 플라스틱 재질로 된 일체형 의자와 테이블은 사용할 수 없다.

- 기타사항

- 테라스형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옥외영업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과 연결 도로(보도)의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테라스형 전면공지 시설물 예시 】



2-2-4-6 업무 및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도 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업무1~6, 업무8~13, 업무16~17 유1~5, 유7, 유11, 초1~8, 중1~4, 중6, 고1~3, 교육1~2, 특1 | 업무1~6, 업무8~13, 업무16~17 유1~5, 유7, 유11, 초1~8, 중1~4, 중6, 고1~3, 교육1~2, 특1 | 대지내공지 | • 시행지침 [1-1-5-39], [1-1-5-40], [1-1-5-41], [2-4-5] |
| | | 기타사항 | • 시행지침 [1-1-5-81], [1-1-5-82], [1-1-5-83], [2-7-7] |

2-2-4-7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도 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중2~6, 중8~10, 중12, 중16,가2~3, 오1, 저1~2, 위1, 위5~6, 주2~3, 주5~18, 주20~23, 주36, 주47, 주53~54, 도시14~16, 물류1~3, 통1, 문1, 문복1 | 중2~6, 중8~10, 중12, 중16,가2~3, 오1, 저1~2, 위1, 위5~6, 주2~3, 주5~18, 주20~23, 주36, 주47, 주53~54, 도시14~16, 물류1~3, 통1, 문1, 문복1 | 대지내공지 | • 시행지침 [1-1-5-39], [1-1-5-40], [1-1-5-41], [2-8-5] |
| | | 기타시설별 | • 시행지침 [2-8-7] |
| | | 도시지원시설 | • 시행지침 [2-8-8] |
| | | 물류유통시설 | • 시행지침 [2-8-9] |
| | | 통신시설 | • 시행지침 [2-8-10] |
| | | 문화복합용지 | • 시행지침 [2-8-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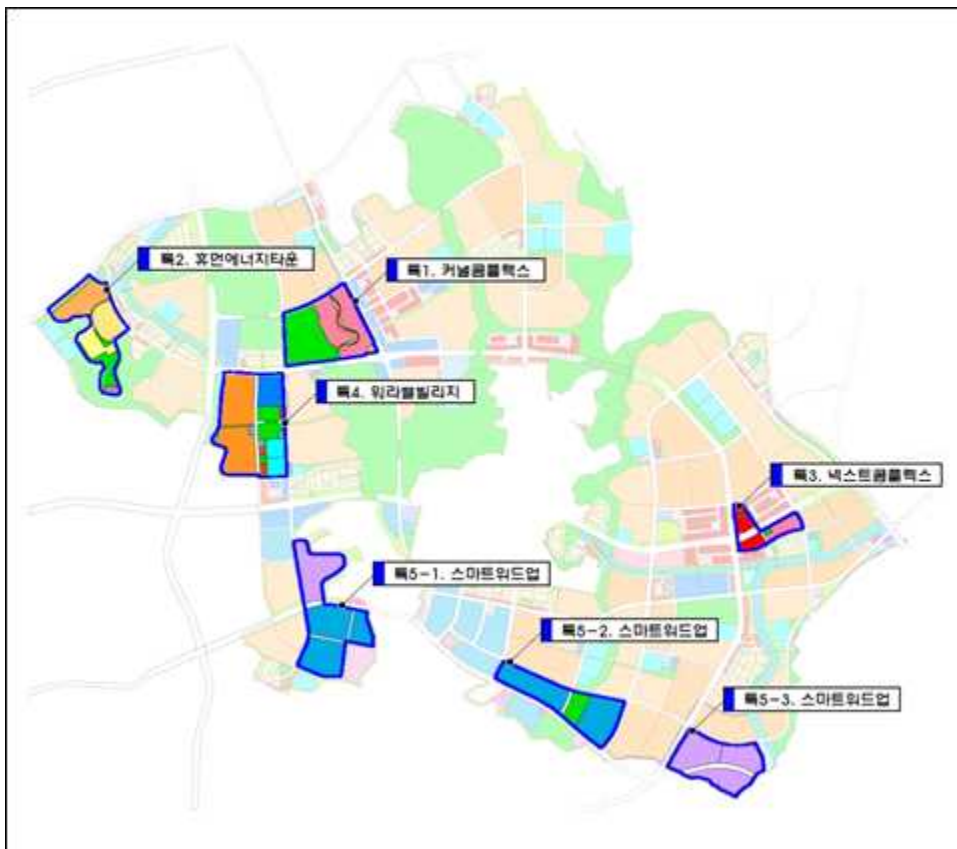
2-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3-1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면 적(㎡) | 위 치 | 비고 |
|---------|---------|-------------------------------------|----|
| 합 계 | 559,073 | - | - |
| 특3 | 59,136 | 1. C1, C9, RC1, 문공1 | - |
| 특5(1~3) | 499,937 | 2. 가1, 근4, 도시1, 도시2, 도시13~15, 물류1~3 | - |

2-3-2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 특3 | • C1, C9, RC1, 문공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양천을 중심으로 상업 및 주거기능의 남부 생활권 중심지 조성 • 상업, 주거, 커뮤니티 등이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친수형 복합단지 조성 | • 특화구역별 도시건축 기본구상안 반영 |
| 특5 | • 가1, 근4, 도시1, 도시2, 도시13~15, 물류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산업 성장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성장지원 클러스터 구축 | |



<그림2> 특별계획구역도

2-3-3 특별계획구역별 지침

2-3-3-1 특별계획구역3 : 넥스트 콤플렉스

① 목적

- 역세권 중심의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개발을 통한 문화도심공간 조성
- 지능형 빌딩시스템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이 접목된 미래지향적 스마트빌딩 건립
- 수직적 기능 융복합 및 창의적 건축물 계획을 통한 남부생활권의 랜드마크 구축

② 개요

- 위치 : 인천검단지구 계양천 북측
- 지정면적 : 59,136.0㎡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토지이용계획



<특별계획구역3 토지이용계획표>

|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 합계 | 59,136.0 | 100.0 | |
| 상업용지 | 27,988.5 | 47.3 | |
| 주상복합 | 19,759.0 | 33.4 | |
| 공원 | 1,791.8 | 3.0 | |
| 도 로 | 9,596.7 | 16.2 | |

- 상업시설 및 주차장 건축계획

<특별계획구역3 건축계획>

| 필지번호 |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최고층수 |
|------|----------|-----|------------------|-----------|--------|
| 합계 | 47,747.5 | - | - | 236,830.0 | - |
| C1 | 12,975.0 | 70% | 600% | 77,850.0 | 20층 이하 |
| C9 | 15,013.5 | 70% | 700% | 105,105.0 | - |
| RC1 | 19,759.0 | 60% | 250% (주거200%) | 53,875.0 | 35층 이하 |

2-3-3-2 특별계획구역5 : 스마트위드업

① 목적

- 검단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산업 성장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 물류·유통·업무기능이 복합된 첨단물류 유통기지 건립

② 개요

- 위치 :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 인근 및 검단지구 남단, 계양천 인근
- 지정면적 : 499,921.4㎡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토지이용계획



<특별계획구역5 토지이용계획표>

|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 합계 | 499,921.4 | 100.0 | |
| 도시지원시설용지 | 253,284.4 | 50.7 | |
| 물류유통시설용지 | 194,053.7 | 38.8 | |
| 가스공급설비 | 25 | 0.0 | |
| 공원 | 20,931 | 4.2 | |
| 기타 용지 | 31,627.3 | 6.3 | 도로 |

- 도시지원시설 및 물류유통시설 계획

<특별계획구역5 도시지원시설 및 물류유통시설 계획>

| 구역 (필지번호) |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최고층수 |
|-------------------|-----------|-----|------|-----------|--|
| 합계 | 447,338.1 | - | - | 1,343,463 | |
| 도시1, 도시2, 도시13~15 | 253,284.4 | 60% | 300% | 758,307 | 10층 이하 해발고도 105m 미만(도시1),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도시2) |
| 물류1-1, 물류1-2 | 91,490.6 | 60% | 300% | 274,449 |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
| 물류2~3 | 102,563.1 | 60% | 300% | 310,707 | 해발고도 105m 미만(물류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115호

도시관리계획(블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블로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476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6.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동 769-3번지 외 2필지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변경없음)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 - | 블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동 일원 | 310,521.8 | |

4.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 합계 | 310,521.8 | 100.0 | |
| 주거지역 | 365,707.4 | 93.6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95,237.3 | 30.7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6,141.4 | 34.2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9,209.7 | 28.7 | |
| 일반상업지역 | 19,933.4 | 6.4 |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① 도로 결정조서

■ 도로 총괄표

| 류별 | 합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합계 | 43 | 7,015.0 (16,397.0) | 74,630.9 (305,458.6) | 4 | 964.0 (1,788.0) | 9,872.7 (30,880.0) | 23 | 4,098.0 (4,398.0) | 40,995.3 (45,510.6) | 16 | 1,817.0 (10,070.0) | 22,643.4 (227,948.5) |
| 대로 | 1 | 257.0 (8,510.0) | 7,444.9 (212,750.0) | - | - | - | - | - | - | 1 | 257.0 (8,510.0) | 7,444.9 (212,750.0) |
| 중로 | 8 | 2,752.0 (3,831.0) | 35,265.9 (60,384.0) | 1 | 476.0 (1,300) | 4,992.7 (26,000) | 4 | 1,156.0 (1,411.0) | 16,811.5 (20,922.3) | 3 | 1,120.0 | 13,461.7 |
| 소로 | 34 | 3,865.0 (3,915.0) | 30,800.6 (31,205.1) | 3 | 488.0 | 4,880.0 | 19 | 2,937.0 (2,987.0) | 24,183.8 (24,588.3) | 12 | 440.0 | 1,736.8 |
| 기타 | - | - | 486.2 | - | - | - | - | - | - | - | - | - |

※ ()는 노선전체에 대한 사항임. 기타는 가각, 현황도로, 버스베이 및 도로부속시설에 의한 면적

■ 도로 결정조서

| 등급 | 규모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대로 | 3 | 58 | 25 | 주간선 도로 | 257 (8510) | 동측지구계 (도시계획 동측구역계) | 서측지구계 (광로3-23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중로 | 1 | 121 | 20 | 보조 간선 도로 | 476 (1300) | 대로3-58호선 | 남측지구계 (중로1-116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중로 | 2 | 171 | 15 ~20 | 집산 도로 | 279 | 대로3-58호선 | 중로3-93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중로 | 2 | 172 | 15 | 집산 도로 | 602 | 중로1-121호선 | 동측지구계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중로 | 2 | 173 | 15 | 집산 도로 | 218 | 중로3-94호선 | 중로3-93호선 | 일반 도로 | | 2009.11.2 | |
| 중로 | 2 | 174 | 9(15) | 집산 도로 | 57 (312) | 소로2-28호선 | 소로2-2호선 | 일반 도로 | | | |
| 중로 | 3 | 90 | 12 | 집산 도로 | 435 | 대로3-58호선 | 중로2-174호선 | 일반 도로 | | | |
| 중로 | 3 | 93 | 12 ~13.5 | 집산 도로 | 791 | 중로1-121호선 | 중로2-172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6 | |
| 중로 | 3 | 94 | 12 | 집산 도로 | 35 | 중로2-173호선 | 중로3-93호선 | 일반 도로 | | 2009.11.2 | |
| 소로 | 1 | 1 | 10 | 국지 도로 | 355 | 중로2-172호선 | 소로1-1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소로 | 1 | 2 | 10 | 국지 도로 | 18 | 중로2-171 | 소로1-1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소로 | 1 | 3 | 10 | 국지 도로 | 115 | 중로2-172호선 | 중로3-93호선 | 일반 도로 | | 2000.6.26 | |
| 소로 | 2 | 5 | 8 | 국지 도로 | 19(69) | 소로2-14호선 | 공동주택9BL | 일반 도로 | | | |

| 등급 | 규모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소로 | 2 | 6 | 8 | 국지 도로 | 94 | 소로2-12호선 | 소로2-23호선 | 일반 도로 | | | |
| 소로 | 2 | 7 | 8 | 국지 도로 | 71 | 소로2-12호선 | 소로2-23호선 | 일반 도로 | | | |
| 소로 | 2 | 8 | 8 | 국지 도로 | 294 | 소로2-14호선 | 소로2-12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소로 | 2 | 9 | 8 | 국지 도로 | 172 | 중로3-90호선 | 소로2-14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소로 | 2 | 10 | 8 | 국지 도로 | 40 | 소로2-11호선 | 소로2-8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소로 | 2 | 11 | 8 | 국지 도로 | 121 | 대로3-58호선 | 중로3-90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소로 | 2 | 12 | 8 | 국지 도로 | 441 | 대로3-58호선 | 중로2-174호선 | 일반 도로 | | | |
| 소로 | 2 | 13 | 8 | 국지 도로 | 123 | 대로3-58호선 | 소로2-9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소로 | 2 | 14 | 8 | 국지 도로 | 429 | 대로3-58호선 | 중로3-90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소로 | 2 | 15 | 8 | 국지 도로 | 255 | 소로2-14호선 | 소로2-14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소로 | 2 | 16 | 8 | 국지 도로 | 281 | 중로2-172호선 | 중로2-172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소로 | 2 | 17 | 8 | 국지 도로 | 71 | 소로2-16호선 | 소로2-16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소로 | 2 | 18 | 8 | 국지 도로 | 73 | 소로2-16호선 | 소로2-16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소로 | 2 | 19 | 8 | 국지 도로 | 73 | 소로1-1호선 | 소로1-1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소로 | 2 | 20 | 8 | 국지 도로 | 125 | 중로3-93호선 | 중로2-172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소로 | 2 | 21 | 8 | 국지 도로 | 116 | 소로2-20호선 | 소로1-3호선 | 일반 도로 | | 1999.6.23 | |
| 소로 | 2 | 22 | 8 | 국지 도로 | 99 | 소로2-20호선 | 소로1-3호선 | 일반 도로 | | 2000.6.26 | |
| 소로 | 2 | 25 | 8 | 국지 도로 | 40 | 중로3-94호선 | 서측지구계 | 일반 도로 | | 2009.11.2 | |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20 | 소로2-13호선 | 15-3BL 13LOT | 일반 도로 | | 2013.11.2 | |
| 소로 | 3 | 3 | 4 | 국지 도로 | 9 | 중로3-93호선 | 동측지구계 | 일반 도로 | | 2000.6.26 | |
| 소로 | 3 | 4 | 4 | 국지 도로 | 15 | 소로3-6호선 | 소로2-15호선 | 일반 도로 | | 2009.11.2 | |
| 소로 | 3 | 6 | 4 | 특수 도로 | 8 | 대로3-58호선 | 소로3-6호선 | 보행자 전용도로 | | 1999.6.23 | |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소로 | 3 | 7 | 4 | 특수 도로 | 15 | 중로1-121호선 | 소로2-16호선 | 보행자 전용도로 | | 1999.6.23 | |
| 소로 | 3 | 8 | 4 | 특수 도로 | 93 | 대로3-58호선 | 제3호 어린이공원 | 보행자 전용도로 | | 1999.6.23 | |
| 소로 | 3 | 9 | 4 | 특수 도로 | 37 | 소로1-1호선 | 소로2-16호선 | 보행자 전용도로 | | 2000.6.26 | |
| 소로 | 3 | 10 | 4 | 특수 도로 | 19 | 대로3-58호선 | 소로1-1호선 | 보행자 전용도로 | | 1999.6.23 | |
| 소로 | 3 | 11 | 4 | 특수 도로 | 18 | 중로2-172호선 | 소로1-1호선 | 보행자 전용도로 | | 1999.6.23 | |
| 소로 | 3 | 18 | 4 | 특수 도로 | 121 | 중로2-172호선 | 중로3-93호선 | 보행자 전용도로 | | 1999.6.23 | |
| 소로 | 3 | 19 | 4 | 특수 도로 | 29 | 중로3-93호선 | 소로2-173호선 | 보행자 전용도로 | | 1999.6.23 | |
| 소로 | 3 | 23 | 3 | 특수 도로 | 56 | 중로2-173호선 | 동측지구계 | 보행자 전용도로 | | 2008.7.7 | 우수 관로 확보 |

※()는 도로 전체 폭원 및 연장임.

② 주차장 결정조서

|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사설명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1 | 주차장 | 블로동 789 | 1,951.5 | - | 1,951.5 | 1999.06.23. | 체육시설2 중복결정 |

2) 공간시설(변경)

① 공원 결정조서(변경)

■ 공원 총괄표

| 구분 | 면적 | | | 구성비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0 | 증) 1 | 11 | 13,488.4 | 증) 1,073.4 | 14,561.8 |
| 어린이공원 | 5 | - | 5 | 10,618.4 | - | 10,618.4 |
| 소공원 | 5 | 증) 1 | 6 | 2,870.0 | 증) 1,073.4 | 3,943.4 |

■ 공원 결정조서

|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 종류 | 위치 | 면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 | | 13,488.4 | 증)1,073.4 | 14,561.8 | | |
| 기정 | 1 | 소나무 공원 | 어린이 공원 | 불로동 766-1 | 2,560.7 | - | 2,560.7 | 1999.6.23 | |
| 기정 | 2 | 느티나무 공원 | 어린이 공원 | 불로동 773-8 | 1,532.9 | - | 1,532.9 | 1999.6.23 | |
| 기정 | 3 | 말피공원 | 어린이 공원 | 불로동 785-10 | 1,513.3 | - | 1,513.3 | 1999.6.23 | |
| 기정 | 4 | 마산공원 | 어린이 공원 | 불로동 793-2 | 2,758.1 | - | 2,758.1 | 1999.6.23 | |
| 기정 | 5 | 불로공원 | 어린이 공원 | 불로동 802-6 | 2,253.4 | - | 2,253.4 | 1999.6.23 | |
| 기정 | 1 | 불로공원 | 소공원 | 불로동 802-5 | 434.4 | - | 434.4 | 2008.7.7 | |
| 기정 | 2 | 사잇공원 | 소공원 | 불로동 801-2 | 512.0 | - | 512.0 | 2009.11.2 | |
| 기정 | 3 | 제향공원 | 소공원 | 불로동 803-5 | 1,010.0 | - | 1,010.0 | 2009.11.2 | |
| 기정 | 4 | 세모공원 | 소공원 | 불로동 839 | 367.9 | - | 367.9 | 2013.11.25 | |
| 기정 | 5 | 담벼락 공원 | 소공원 | 불로동 799-1 | 545.7 | - | 545.7 | 2013.11.25 | |
| 신설 | - | | 소공원 | 불로동 769-3 일원 | - | 증)1,073.4 | 1,073.4 | | |

■ 공원 결정 사유서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 내용 | 결정 사유 |
|-------------|-----|----------------------------|---|
| - | 공원 | ○ 공원 신설 - 면적 : 1,073.4㎡ | ○ 주민들의 휴식 및 운동 등 생활 녹지공간과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한 소공원 신설 |

②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 | | 2,457.6 | - | 2,457.6 | | |
| 기정 | 1 | 녹지 | 경관녹지 | 불로동 803-7 | 694.3 | - | 694.3 | 2009.11.2 | |
| 기정 | 2 | 녹지 | 경관녹지 | 불로동 803-6 | 144.9 | - | 144.9 | 2009.11.2 | |
| 기정 | 3 | 녹지 | 경관녹지 | 불로동 820 | 395.7 | - | 395.7 | 2013.11.25 | |
| 기정 | 4 | 녹지 | 경관녹지 | 불로동 821 | 230.5 | - | 230.5 | 2013.11.25 | |
| 기정 | 7 | 녹지 | 경관녹지 | 불로동 824 | 37.0 | - | 37.0 | 2013.11.25 | |
| 기정 | 8 | 녹지 | 경관녹지 | 불로동 825 | 75.7 | - | 75.7 | 2013.11.25 | |
| 기정 | 9 | 녹지 | 경관녹지 | 불로동 837 일원 | 879.5 | - | 879.5 | 2013.11.25 | |

3) 공공 ·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① 학교 결정조서

|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1 | 학교 | 초등학교 | 불로동 799-2 일원 | 12,002.0 | - | 12,002.0 | 2002.6.23 | |

② 공공청사 결정조서

|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1 | 공공 청사 | 파출소 | 불로동 772-1 | 614.4 | - | 614.4 | 1999.6.23 | |

③ 체육시설 결정조서

|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1 | 체육 시설 | 케이트볼장 | 불로동 785-4 | 507.1 | -- | 507.1 | 2008.7.7 | |
| 기정 | 1 | 체육 시설 | 복합체육관 | 불로동 789 | 1,951.5 | - | 1,951.5 | 2023.2.27 | |

④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가정 | 변경 | 변경후 | | |
| 가정 | 1 | 체육시설 | 게이트볼장 | 불로동 785-4 | 507.1 | -- | 507.1 | 2008.7.7 | |
| 가정 | 1 | 체육시설 | 복합체육관 | 불로동 789 | 1,951.5 | - | 1,951.5 | 2023.2.27 | |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단독주택(A-1)용지(변경)

| 기 정 | | | | | | 변 경 | | | | | | | |
|-------|-------|---------|-----|-----------|-----------|----------|-------|--------|---------|-----|-----------|-----------|----------|
|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A-1 | 1 | 2111.3 | 1 | 275.2 | 275.2 | | A-1 | 1 | 2111.3 | 1 | 275.2 | 275.2 | |
| | | | 2 | 284.7 | 284.7 | | | | | 2 | 284.7 | 284.7 | |
| | | | 3 | 379.6 | 379.6 | | | | | 3 | 379.6 | 379.6 | |
| | | | 4 | 327.0 | 327.0 | | | | | 4 | 327.0 | 327.0 | |
| | | | 5 | 600.6 | | 2필지 분할가능 | | | | 5 | 600.6 | | 2필지 분할가능 |
| | | | 6 | 244.2 | 244.2 | | | | | 6 | 244.2 | 244.2 | |
| A-1 | 2 | 3,170.3 | 1 | 374.1 | 374.1 | | A-1 | 2 | 3,170.3 | 1 | 374.1 | 374.1 | |
| | | | 2-1 | 257.7 | 257.7 | | | | | 2-1 | 257.7 | 257.7 | |
| | | | 2-2 | 257.8 | 257.8 | | | | | 2-2 | 257.8 | 257.8 | |
| | | | 3 | 248.5 | 248.5 | | | | | 3 | 248.5 | 248.5 | |
| | | | 4 | 371.8 | 371.8 | | | | | 4 | 371.8 | 371.8 | |
| | | | 5 | 217.9 | 217.9 | | | | | 5 | 217.9 | 217.9 | |
| | | | 11 | 235.1 | 235.1 | | | | | 11 | 235.1 | 235.1 | |
| | | | 6 | 217.5 | 217.5 | | | | | 6 | 217.5 | 217.5 | |
| | | | 10 | 214.3 | 214.3 | | | | | 10 | 214.3 | 214.3 | |
| | | | 7 | 250.9 | 250.9 | | | | | 7 | 250.9 | 250.9 | |
| | | | 8 | 247.0 | 247.0 | | | | | 8 | 247.0 | 247.0 | |
| 9 | 277.7 | 277.7 | | 9 | 277.7 | 277.7 | | | | | | | |

| 기 정 | | | | | | 변 경 | | | | | | | |
|----------|-----------|------------|-------------|-----------------|-----------------|-------------|-------------|-----------|------------|------|-----------------|-----------------|-------------|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A-1 | 3 | 3,911.4 | 1 | 290.4 | 290.4 | | A-1 | 3 | 3,911.4 | 1 | 290.4 | 290.4 | |
| | | | 2-1 | 242.0 | 242.0 | | | | | 2-1 | 242.0 | 242.0 | |
| | | | 2-2 | 241.3 | 241.3 | | | | | 2-2 | 241.3 | 241.3 | |
| | | | 3 | 344.0 | 344.0 | | | | | 3 | 344.0 | 344.0 | |
| | | | 4 | 386.7 | 386.7 | | | | | 4 | 386.7 | 386.7 | |
| | | | 5 | 456.6 | | 2필지 분할가능 | | | | 5 | 456.6 | | 2필지 분할가능 |
| | | | 6 | 258.2 | 258.2 | | | | | 6 | 258.2 | 258.2 | |
| | | | 7 | 270.7 | 270.7 | | | | | 7 | 270.7 | 270.7 | |
| | | | 8 | 279.7 | 279.7 | | | | | 8 | 279.7 | 279.7 | |
| | | | 11 | 287.6 | 287.6 | | | | | 11 | 287.6 | 287.6 | |
| | | | 9 | 435.9 | 435.9 | 2필지 분할가능 | | | | 9 | 435.9 | 435.9 | 2필지 분할가능 |
| 10 | 418.3 | 418.3 | 2필지 분할가능 | 10 | 418.3 | 418.3 | 2필지 분할가능 | | | | | | |
| A-1 | 6 | 6,021.4 | 1 | 457.7 | | 2필지 분할가능 | A-1 | 6 | 6,021.4 | 1 | 457.7 | | 2필지 분할가능 |
| | | | 2 | 459.1 | 459.1 | | | | | 2 | 459.1 | 459.1 | |
| | | | 3 | 480.7 | 480.7 | | | | | 3 | 480.7 | 480.7 | |
| | | | 4 | 300.4 | 300.4 | | | | | 4 | 300.4 | 300.4 | |
| | | | 5 | 272.3 | 272.3 | | | | | 5 | 272.3 | 272.3 | |
| | | | 6 | 323.0 | 323.0 | | | | | 6 | 323.0 | 323.0 | |
| | | | 7 | 441.6 | 441.6 | | | | | 7 | 441.6 | 441.6 | |
| | | | 8 | 139.2 | 139.2 | | | | | 8 | 139.2 | 139.2 | |
| | | | 9 | 110.1 | 110.1 | | | | | 9 | 110.1 | 110.1 | |
| | | | 10 | 780.9 | | 2필지 분할가능 | | | | 10 | 780.9 | | 2필지 분할가능 |
| | | | 11 | 340.5 | 340.5 | | | | | 11 | 340.5 | 340.5 | |
| | | | 12-1 | 384.3 | 384.3 | | | | | 12-1 | 384.3 | 384.3 | |
| | | | 12-2 | 384.1 | 384.1 | | | | | 12-2 | 384.1 | 384.1 | |
| | | | 13 | 294.8 | 294.8 | | | | | 13 | 294.8 | 294.8 | |
| | | | 14 | 476.5 | | 2필지 분할가능 | | | | 14 | 476.5 | | 2필지 분할가능 |
| 15 | 376.2 | 376.2 | | 15 | 376.2 | 376.2 | | | | | | | |
| A-1 | 7-1 | 2,777.7 | 1 | 339.1 | 339.1 | | A-1 | 7-1 | 2,777.7 | 1 | 339.1 | 339.1 | |
| | | | 2 | 314.6 | 314.6 | | | | | 2 | 314.6 | 314.6 | |
| | | | 3 | 322.3 | 322.3 | | | | | 3 | 322.3 | 322.3 | |
| | | | 10 | 320.5 | 320.5 | | | | | 10 | 320.5 | 320.5 | |
| | | | 4 | 340.4 | 340.4 | | | | | 4 | 340.4 | 340.4 | |
| | | | 5-1 | 311.5 | 311.5 | | | | | 5-1 | 311.5 | 311.5 | |
| | | | 5-2 | 594.6 | | 2필지 분할가능 | | | | 5-2 | 594.6 | | 2필지 분할가능 |
| | | | 6 | 234.7 | 234.7 | | | | | 6 | 234.7 | 234.7 | |

| 기 정 | | | | | | 변 경 | | | | | | | |
|----------|-----------|------------|-----|-----------------|-----------------|-------------|----------|-----------|------------|-----|-----------------|-----------------|-------------|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 | | | 위 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 | 위 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A-1 | 8-1 | 2,583.5 | 1 | 472.6 | 472.6 | | A-1 | 8-1 | 1,510.1 | 1 | 472.6 | 472.6 | |
| | | | 2 | 690.6 | - | 2필지 분할가능 | | | | 2 | - | - | |
| | | | 3 | 382.8 | 382.8 | | | | | 3 | - | - | |
| | | | 4 | 767.4 | - | 2필지 분할가능 | | | | 4 | 767.4 | - | 2필지 분할가능 |
| | | | 5 | 270.1 | 270.1 | | | | | 5 | 270.1 | 270.1 | |
| A-1 | 9 | 1,467.3 | 1 | 790.2 | | 2필지 분할가능 | A-1 | 9 | 1,467.3 | 1 | 790.2 | | 2필지 분할가능 |
| | | | 2 | 443.4 | 443.4 | | | | | 2 | 443.4 | 443.4 | |
| | | | 3 | 233.7 | 233.7 | | | | | 3 | 233.7 | 233.7 | |
| A-1 | 10 | 1,959.0 | 1-1 | 173.6 | 173.6 | | A-1 | 10 | 1,959.0 | 1-1 | 173.6 | 173.6 | |
| | | | 1-2 | 316.0 | 316.0 | | | | | 1-2 | 316.0 | 316.0 | |
| | | | 2 | 544.9 | | 2필지 분할가능 | | | | 2 | 544.9 | | 2필지 분할가능 |
| | | | 3 | 777.5 | | 2필지 분할가능 | | | | 3 | 777.5 | | 2필지 분할가능 |
| | | | 4 | 147.0 | 147.0 | | | | | 4 | 147.0 | 147.0 | |
| A-1 | 11-1 | 4,080.8 | 1 | 898.7 | | 3필지 분할가능 | A-1 | 11-1 | 4,080.8 | 1 | 898.7 | | 3필지 분할가능 |
| | | | 2 | 573.6 | 573.6 | | | | | 2 | 573.6 | 573.6 | |
| | | | 3 | 504.9 | | 2필지 분할가능 | | | | 3 | 504.9 | | 2필지 분할가능 |
| | | | 4 | 709.3 | | 2필지 분할가능 | | | | 4 | 709.3 | | 2필지 분할가능 |
| | | | 5 | 490.9 | | 2필지 분할가능 | | | | 5 | 490.9 | | 2필지 분할가능 |
| | | | 6 | 356.4 | 356.4 | | | | | 6 | 356.4 | 356.4 | |
| | | | 7 | 314.0 | | 2필지 분할가능 | | | | 7 | 314.0 | | 2필지 분할가능 |
| | | | 8 | 233.0 | 233.0 | | | | | 8 | 233.0 | 233.0 | |
| A-1 | 12-1 | 3,586.0 | 1 | 432.3 | 432.3 | | A-1 | 12-1 | 3,586.0 | 1 | 432.3 | 432.3 | |
| | | | 2 | 614.4 | | 2필지 분할가능 | | | | 2 | 614.4 | | 2필지 분할가능 |
| | | | 3 | 600.3 | | 2필지 분할가능 | | | | 3 | 600.3 | | 2필지 분할가능 |
| | | | 4 | 479.4 | | 2필지 분할가능 | | | | 4 | 479.4 | | 2필지 분할가능 |
| A-1 | 12-1 | 3,586.0 | 5 | 494.5 | 494.5 | | A-1 | 12-1 | 3,586.0 | 5 | 494.5 | 494.5 | |
| | | | 6 | 417.1 | 417.1 | | | | | 6 | 417.1 | 417.1 | |
| | | | 7 | 548.0 | 548.0 | | | | | 7 | 548.0 | 548.0 | |
| A-1 | 14-1 | 1,652.2 | 1 | 358.8 | 358.8 | | A-1 | 14-1 | 1,652.2 | 1 | 358.8 | 358.8 | |
| | | | 2 | 280.7 | 280.7 | | | | | 2 | 280.7 | 280.7 | |
| | | | 3 | 335.1 | 335.1 | | | | | 3 | 335.1 | 335.1 | |
| | | | 4 | 279.1 | 279.1 | | | | | 4 | 279.1 | 279.1 | |
| | | | 5 | 398.5 | 398.5 | | | | | 5 | 398.5 | 398.5 | |

| 기 정 | | | | | | 변 경 | | | | | | | |
|----------|-----------|------------|-----|------------------|------------------|-------------|----------|-----------|------------|-----|------------------|------------------|-------------|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 | | | 위 치 | 대 지 면적 (㎡) | 획 지 면적 (㎡) | | | | | 위 치 | 대 지 면적 (㎡) | 획 지 면적 (㎡) | |
| A-1 | 15-3 | 3,300.5 | 6 | 202.2 | 202.2 | | A-1 | 15-3 | 3,300.5 | 6 | 202.2 | 202.2 | |
| | | | 7 | 202.0 | 202.0 | | | | | 7 | 202.0 | 202.0 | |
| | | | 8 | 202.1 | 202.1 | | | | | 8 | 202.1 | 202.1 | |
| | | | 9 | 207.9 | 207.9 | | | | | 9 | 207.9 | 207.9 | |
| | | | 10 | 231.4 | 231.4 | | | | | 10 | 231.4 | 231.4 | |
| | | | 11 | 743.3 | | 2필지 분할가능 | | | | 11 | 743.3 | | 2필지 분할가능 |
| | | | 12 | 755.9 | | 2필지 분할가능 | | | | 12 | 755.9 | | 2필지 분할가능 |
| | | | 13 | 755.7 | | 2필지 분할가능 | | | | 13 | 755.7 | | 2필지 분할가능 |
| A-1 | 17 | 3,983.8 | 1 | 482.1 | | 2필지 분할가능 | A-1 | 17 | 3,983.8 | 1 | 482.1 | | 2필지 분할가능 |
| | | | 2 | 329.5 | 329.5 | | | | | 2 | 329.5 | 329.5 | |
| | | | 3 | 350.1 | 350.1 | | | | | 3 | 350.1 | 350.1 | |
| | | | 4 | 347.1 | 347.1 | | | | | 4 | 347.1 | 347.1 | |
| | | | 11 | 344.3 | 344.3 | | | | | 11 | 344.3 | 344.3 | |
| | | | 5 | 236.0 | 236.0 | | | | | 5 | 236.0 | 236.0 | |
| | | | 6 | 354.3 | 354.3 | | | | | 6 | 354.3 | 354.3 | |
| | | | 7 | 534.2 | | 2필지 분할가능 | | | | 7 | 534.2 | | 2필지 분할가능 |
| | | | 8 | 534.3 | | 2필지 분할가능 | | | | 8 | 534.3 | | 2필지 분할가능 |
| | | | 9 | 270.2 | 270.2 | | | | | 9 | 270.2 | 270.2 | |
| 10 | 201.7 | 201.7 | | 10 | 201.7 | 201.7 | | | | | | | |
| A-1 | 19-1 | 372.2 | 1 | 372.2 | | 2필지 분할가능 | A-1 | 19-1 | 372.2 | 1 | 372.2 | | 2필지 분할가능 |
| A-1 | 21 | 1,776.5 | 1 | 319.4 | 319.4 | | A-1 | 21 | 1,776.5 | 1 | 319.4 | 319.4 | |
| | | | 2-1 | 221.3 | 221.3 | | | | | 2-1 | 221.3 | 221.3 | |
| | | | 2-2 | 190.6 | 190.6 | | | | | 2-2 | 190.6 | 190.6 | |
| | | | 3 | 347.1 | | 2필지 분할가능 | | | | 3 | 347.1 | | 2필지 분할가능 |
| | | | 4 | 268.4 | 268.4 | | | | | 4 | 268.4 | 268.4 | |
| | | | 5-1 | 222.6 | 222.6 | | | | | 5-1 | 222.6 | 222.6 | |
| | | | 5-2 | 207.1 | 207.1 | | | | | 5-2 | 207.1 | 207.1 | |
| A-1 | 22 | 2,203.6 | 1 | 269.1 | 269.1 | | A-1 | 22 | 2,203.6 | 1 | 269.1 | 269.1 | |
| | | | 2 | 160.2 | 160.2 | | | | | 2 | 160.2 | 160.2 | |
| | | | 3 | 210.0 | 210.0 | | | | | 3 | 210.0 | 210.0 | |
| A-1 | 22 | 2,203.6 | 4 | 160.0 | 160.0 | | A-1 | 22 | 2,203.6 | 4 | 160.0 | 160.0 | |
| | | | 5 | 249.7 | 249.7 | | | | | 5 | 249.7 | 249.7 | |
| | | | 6 | 249.9 | 249.9 | | | | | 6 | 249.9 | 249.9 | |
| | | | 7 | 668.3 | | 2필지 분할가능 | | | | 7 | 668.3 | | 2필지 분할가능 |
| | | | 8 | 236.4 | 236.4 | | | | | 8 | 236.4 | 236.4 | |

| 기 정 | | | | | | 변 경 | | | | | | |
|----------|-----------|------------|-----|-----------------|-------|----------|-----------|------------|-----------------|-------|-------|-----------------|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비 고 |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 | | | 획지 면적 (㎡) | 위치 | | 대지 면적 (㎡) |
| A-1 | 23 | 2,266.4 | 1 | 280.8 | 280.8 | A-1 | 23 | 2,266.4 | 1 | 280.8 | 280.8 | 2필지 분할가능 |
| | | | 2 | 392.4 | | | | | 2 | 392.4 | | |
| | | | 3 | 159.8 | 159.8 | | | | 3 | 159.8 | 159.8 | |
| | | | 4 | 305.3 | 305.3 | | | | 4 | 305.3 | 305.3 | |
| | | | 5 | 198.9 | 198.9 | | | | 5 | 198.9 | 198.9 | |
| | | | 6-1 | 213.1 | 213.1 | | | | 6-1 | 213.1 | 213.1 | |
| | | | 6-2 | 213.2 | 213.2 | | | | 6-2 | 213.2 | 213.2 | |
| | | | 6-3 | 213.2 | 213.2 | | | | 6-3 | 213.2 | 213.2 | |
| A-1 | 24 | 1,293.6 | 1 | 345.7 | 345.7 | A-1 | 24 | 1,293.6 | 1 | 345.7 | 345.7 | |
| | | | 2-1 | 247.1 | 247.1 | | | | 2-1 | 247.1 | 247.1 | |
| | | | 2-2 | 247.1 | 247.1 | | | | 2-2 | 247.1 | 247.1 | |
| | | | 3-1 | 225.5 | 225.5 | | | | 3-1 | 225.5 | 225.5 | |
| | | | 3-2 | 228.2 | 228.2 | | | | 3-2 | 228.2 | 228.2 | |
| A-1 | 25 | 578.6 | 1 | 336.1 | 336.1 | A-1 | 25 | 578.6 | 1 | 336.1 | 336.1 | |
| | | | 2 | 242.5 | 242.5 | | | | 2 | 242.5 | 242.5 | |
| A-1 | 35-2 | 1,519.9 | 5-1 | 228.7 | 228.7 | A-1 | 35-2 | 1,519.9 | 5-1 | 228.7 | 228.7 | |
| | | | 5-2 | 234.4 | 234.4 | | | | 5-2 | 234.4 | 234.4 | |
| | | | 6 | 211.5 | 211.5 | | | | 6 | 211.5 | 211.5 | |
| | | | 7 | 265.7 | 265.7 | | | | 7 | 265.7 | 265.7 | |
| | | | 8 | 149.0 | 149.0 | | | | 8 | 149.0 | 149.0 | |
| | | | 9-1 | 212.3 | 212.3 | | | | 9-1 | 212.3 | 212.3 | |
| A-1 | 36 | 4,597.5 | 1 | 238.1 | 238.1 | A-1 | 36 | 4,597.5 | 1 | 238.1 | 238.1 | |
| | | | 2 | 273.4 | 273.4 | | | | 2 | 273.4 | 273.4 | |
| | | | 3 | 365.3 | 365.3 | | | | 3 | 365.3 | 365.3 | |
| | | | 4 | 394.5 | 394.5 | | | | 4 | 394.5 | 394.5 | |
| | | | 5 | 381.8 | 381.8 | | | | 5 | 381.8 | 381.8 | |
| | | | 6 | 548.2 | | | | | 6 | 548.2 | | |
| | | | 7 | 652.5 | | | | | 7 | 652.5 | | |
| | | | 8 | 563.1 | | | | | 8 | 563.1 | | |
| | | | 9 | 305.6 | 305.6 | | | | 9 | 305.6 | 305.6 | |
| | | | 10 | 240.4 | 240.4 | | | | 10 | 240.4 | 240.4 | |
| | | | 11 | 263.7 | 263.7 | | | | 11 | 263.7 | 263.7 | |
| | | | 12 | 370.9 | 370.9 | | | | 12 | 370.9 | 370.9 | |
| A-1 | 37 | 3,047.6 | 1 | 293.0 | 293.0 | A-1 | 37 | 3,047.6 | 1 | 293.0 | 293.0 | |

| 기 정 | | | | | | 변 경 | | | | | | | |
|-------|-------|---------|-----|-----------|-----------|-----|-------|--------|---------|-------|-----------|-----------|-----|
|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A-1 | 37 | 3,047.6 | 2 | 283.2 | 283.2 | | A-1 | 37 | 3,047.6 | 2 | 283.2 | 283.2 | |
| | | | 3 | 139.8 | 139.8 | | | | | 3 | 139.8 | 139.8 | |
| | | | 4 | 139.8 | 139.8 | | | | | 4 | 139.8 | 139.8 | |
| | | | 5 | 279.5 | 279.5 | | | | | 5 | 279.5 | 279.5 | |
| | | | 6 | 264.2 | 264.2 | | | | | 6 | 264.2 | 264.2 | |
| | | | 7 | 268.6 | 268.6 | | | | | 7 | 268.6 | 268.6 | |
| | | | 8 | 294.8 | 294.8 | | | | | 8 | 294.8 | 294.8 | |
| | | | 9 | 293.0 | 293.0 | | | | | 9 | 293.0 | 293.0 | |
| | | | 10 | 279.1 | 279.1 | | | | | 10 | 279.1 | 279.1 | |
| | | | 11 | 222.2 | 222.2 | | | | | 11 | 222.2 | 222.2 | |
| | | | 12 | 160.0 | 160.0 | | | | | 12 | 160.0 | 160.0 | |
| | | | 13 | 190.7 | 190.7 | | | | | 13 | 190.7 | 190.7 | |
| | | | 14 | 299.7 | 299.7 | | | | | 14 | 299.7 | 299.7 | |
| | | | A-1 | 38-2 | 3,016.1 | 3 | | | | 190.2 | 190.2 | | A-1 |
| 4 | 319.1 | 319.1 | | | | | 4 | 319.1 | 319.1 | | | | |
| 5 | 229.4 | 229.4 | | | | | 5 | 229.4 | 229.4 | | | | |
| 6 | 180.3 | 180.3 | | | | | 6 | 180.3 | 180.3 | | | | |
| 7 | 168.1 | 168.1 | | | | | 7 | 168.1 | 168.1 | | | | |
| 8 | 200.6 | 200.6 | | | | | 8 | 200.6 | 200.6 | | | | |
| 9 | 218.0 | 218.0 | | | | | 9 | 218.0 | 218.0 | | | | |
| 10 | 352.4 | 352.4 | | | | | 10 | 352.4 | 352.4 | | | | |
| 11 | 139.5 | 139.5 | | | | | 11 | 139.5 | 139.5 | | | | |
| 12-1 | 231.4 | 231.4 | | | | | 12-1 | 231.4 | 231.4 | | | | |
| 12-2 | 184.9 | 184.9 | | | | | 12-2 | 184.9 | 184.9 | | | | |
| 13 | 203.3 | 203.3 | | | | | 13 | 203.3 | 203.3 | | | | |
| 14 | 140.6 | 140.6 | | | | | 14 | 140.6 | 140.6 | | | | |
| 15 | 258.3 | 258.3 | | | | | 15 | 258.3 | 258.3 | | | | |

- 변경 사항

| 가구 번호 | 기정 | | 변경 | | 변경 사항 |
|-------|----|-------|----|------|--------------------------------|
| | 위치 | 대지면적 | 위치 | 대지면적 | |
| 8-1 | 2 | 690.6 | 2 | - | - 소공원 결정으로 단독주택용지를 소공원 용지로 변경함 |
| | 3 | 382.8 | 3 | - | |

② 단독주택(A-2)용지(변경없음)

| 기 정 | | | | | | | 변 경 | | | | | | | | |
|----------|-----------|------------|-----|------------------|------------------|-------------|----------|-----------|------------|-------------|------------------|------------------|-------------|--|-------------|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 |
| | | | 위 치 | 대 지 면적 (㎡) | 획 지 면적 (㎡) | | | | | 위 치 | 대 지 면적 (㎡) | 획 지 면적 (㎡) | | | |
| A-2 | 7-3 | 751.6 | 8 | 375.9 | 375.9 | | A-2 | 7-3 | 751.6 | 8 | 375.9 | 375.9 | | | |
| | | | 9 | 375.7 | 375.7 | | | | | 9 | 375.7 | 375.7 | | | |
| A-2 | 8-3 | 363.3 | 7 | 363.3 | 363.3 | | A-2 | 8-3 | 363.3 | 7 | 363.3 | 363.3 | | | |
| A-2 | 11-2 | 2,208.1 | 9 | 2,208.1 | | 5필지 분할가능 | A-2 | 11-2 | 2,208.1 | 9 | 2,208.1 | | 5필지 분할가능 | | |
| A-2 | 13-2 | 2,309.2 | 2 | 2,309.2 | | 5필지 분할가능 | A-2 | 13-2 | 2,309.2 | 2 | 2,309.2 | | 5필지 분할가능 | | |
| A-2 | 14-2 | 2,195.2 | 6 | 258.3 | 258.3 | | A-2 | 14-2 | 2,195.2 | 6 | 258.3 | 258.3 | | | |
| | | | 7 | 633.8 | 633.8 | | | | | 7 | 633.8 | 633.8 | | | |
| | | | 8 | 562.2 | 562.2 | | | | | 8 | 562.2 | 562.2 | | | |
| | | | 9 | 330.8 | 330.8 | | | | | 9 | 330.8 | 330.8 | | | |
| | | | 10 | 410.1 | 410.1 | | | | | 10 | 410.1 | 410.1 | | | |
| A-2 | 15-1 | 738.8 | 1 | 300.0 | 300.0 | | A-2 | 15-1 | 738.8 | 1 | 300.0 | 300.0 | | | |
| | | | 2 | 238.4 | 238.4 | | | | | 2 | 238.4 | 238.4 | | | |
| | | | 4 | 200.4 | 200.4 | | | | | 4 | 200.4 | 200.4 | | | |
| A-2 | 15-4 | 2,004.2 | 14 | 711.4 | | 2필지 분할가능 | A-2 | 15-4 | 2,004.2 | 14 | 711.4 | | 2필지 분할가능 | | |
| | | | 15 | 1,292.8 | | 2필지 분할가능 | | | | 15 | 1,292.8 | | 2필지 분할가능 | | |
| A-2 | 18 | 2,253.2 | 1 | 391.7 | 391.7 | | A-2 | 18 | 2,253.2 | 1 | 391.7 | 391.7 | | | |
| | | | 2 | 411.9 | 411.9 | | | | | 2 | 411.9 | 411.9 | | | |
| | | | 3 | 522.6 | | | | | | 2필지 분할가능 | 3 | 522.6 | | | 2필지 분할가능 |
| | | | 4 | 464.0 | 464.0 | | | | | 4 | 464.0 | 464.0 | | | |
| | | | 5 | 463.0 | 463.0 | | | | | 5 | 463.0 | 463.0 | | | |
| A-2 | 19-2 | 533.3 | - | 40.0 | 40.0 | 3롯데 진입로 | A-2 | 19-2 | 533.3 | - | 40.0 | 40.0 | 3롯데 진입로 | | |
| | | | 2 | 166.2 | 166.2 | 2 | | | | 166.2 | 166.2 | | | | |
| | | | 3 | 327.1 | 327.1 | 3 | | | | 327.1 | 327.1 | | | | |
| A-2 | 20 | 2,305.7 | 1 | 402.2 | 402.2 | | A-2 | 20 | 2,305.7 | 1 | 402.2 | 402.2 | | | |
| | | | 2 | 786.6 | | | | | | 2필지 분할가능 | 2 | 786.6 | | | 2필지 분할가능 |
| | | | 3 | 199.3 | 199.3 | | | | | 3 | 199.3 | 199.3 | | | |
| | | | 4 | 524.6 | | | | | | 2필지 분할가능 | 4 | 524.6 | | | 2필지 분할가능 |
| | | | 5 | 393.0 | 393.0 | | | | | 5 | 393.0 | 393.0 | | | |
| A-2 | 26 | 1,350.1 | 1 | 342.6 | 342.6 | | A-2 | 26 | 1,350.1 | 1 | 342.6 | 342.6 | | | |
| | | | 2 | 221.4 | 221.4 | | | | | 2 | 221.4 | 221.4 | | | |
| | | | 3 | 321.2 | 321.2 | | | | | 3 | 321.2 | 321.2 | | | |
| | | | 4 | 464.9 | | | | | | 2필지 분할가능 | 4 | 464.9 | | | 2필지 분할가능 |

| 기 정 | | | | | | | 변 경 | | | | | | | | | | |
|-------|--------|---------|-----|-----------|-----------|----------|-------|--------|---------|-------|-----------|-----------|----------|-------|---|-------|-------|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 | |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 | |
| A-2 | 35-1 | 1,499.9 | 1 | 457.8 | | 2필지 분할가능 | A-2 | 35-1 | 1,499.9 | 1 | 457.8 | | 2필지 분할가능 | | | | |
| | | | 2 | 352.6 | 352.6 | | | | | 2 | 352.6 | 352.6 | | | | | |
| | | | 3 | 278.5 | 278.5 | | | | | 3 | 278.5 | 278.5 | | | | | |
| | | | 4 | 411.0 | | 2필지 분할가능 | | | | 4 | 411.0 | | 2필지 분할가능 | | | | |
| A-2 | 38-1 | 439.9 | 1 | 217.4 | 217.4 | A-2 | 38-1 | 439.9 | 1 | 217.4 | 217.4 | A-2 | 38-1 | 439.9 | 2 | 222.5 | 222.5 |
| | | | 2 | 222.5 | 222.5 | | | | 2 | 222.5 | 222.5 | | | | | | |

③ 공동주택(B-1)용지(변경없음)

| 기 정 | | | | | | | 변 경 | | | | | | | | | | |
|-------|--------|---------|-----|-----------|-----------|-----------|-------|---------|----------|---------|-----------|-----------|-----------|---------|---------|----------|---------|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 | |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 | |
| B-1 | 41 | 2,924.5 | 1 | 603.6 | 603.6 | 공동개발 (권장) | B-1 | 41 | 2,924.5 | 1 | 603.6 | 603.6 | 공동개발 (권장) | | | | |
| | | | 2 | 649.2 | 649.2 | | | | | 2 | 649.2 | 649.2 | | | | | |
| | | | 3 | 902.6 | 902.6 | | | | | 3 | 902.6 | 902.6 | | | | | |
| | | | 4 | 769.1 | 769.1 | | | | | 4 | 769.1 | 769.1 | | | | | |
| B-1 | 42 | 1,942.0 | 1 | 689.2 | 689.2 | 공동개발 (권장) | B-1 | 42 | 1,942.0 | 1 | 689.2 | 689.2 | 공동개발 (권장) | | | | |
| | | | 2 | 626.6 | 626.6 | | | | | 2 | 626.6 | 626.6 | | | | | |
| | | | 3 | 626.2 | 626.2 | | | | | 3 | 626.2 | 626.2 | | | | | |
| B-1 | 47 | 5,118.3 | 1 | 940.2 | 940.2 | B-1 | 47 | 5,118.3 | 1 | 940.2 | 940.2 | B-1 | 47 | 5,118.3 | 1 | 940.2 | 940.2 |
| | | | 2 | 1,972.7 | 1,972.7 | | | | 2 | 1,972.7 | 1,972.7 | | | | | | |
| | | | 3 | 888.4 | 888.4 | | | | 3 | 888.4 | 888.4 | | | | | | |
| | | | 4 | 1,317.0 | 1,317.0 | | | | 2필지 분할가능 | 4 | 1,317.0 | | | | 1,317.0 | 2필지 분할가능 | |
| B-1 | 50-1 | 1,203.0 | 1 | 1,203.0 | 1,203.0 | B-1 | 50-1 | 1,203.0 | 1 | 1,203.0 | 1,203.0 | B-1 | 50-1 | 1,203.0 | 1 | 1,203.0 | 1,203.0 |

④ 공동주택(B-2)용지(변경없음)

| 기 정 | | | | | | | 변 경 | | | | | | | | | | |
|-------|--------|---------|-----|-----------|-----------|-----------|-------|---------|---------|---------|-----------|-----------|-----------|---------|---|---------|---------|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 | |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 | |
| B-2 | 7-2 | 1,200.6 | 7 | 1,200.6 | 1,200.6 | B-2 | 7-2 | 1,200.6 | 7 | 1,200.6 | 1,200.6 | B-2 | 7-2 | 1,200.6 | 7 | 1,200.6 | 1,200.6 |
| B-2 | 8-2 | 2,383.4 | 6 | 2,383.4 | 2,383.4 | B-2 | 8-2 | 2,383.4 | 6 | 2,383.4 | 2,383.4 | B-2 | 8-2 | 2,383.4 | 6 | 2,383.4 | 2,383.4 |
| B-2 | 15-2 | 1,769.1 | 3 | 175.6 | 175.6 | 공동개발 (권장) | B-2 | 15-2 | 1,769.1 | 3 | 175.6 | 175.6 | 공동개발 (권장) | | | | |
| | | | 5 | 1,593.5 | 1,593.5 | | | | | 5 | 1,593.5 | 1,593.5 | | | | | |

⑤ 공동주택(B-3)용지(변경없음)

| 기 정 | | | | | | 변 경 | | | | | | | |
|-------|---------|----------|-----|-----------|----------|-----------|--------|---------|-----------|----|----------|-----------|-----------|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비 고 | |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 | | | 획지 면적 (㎡) | 위치 |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B-3 | 16 | 4,809.6 | 1 | 4,809.6 | 4,809.6 | | B-3 | 16 | 4,809.6 | 1 | 4,809.6 | 4,809.6 | |
| B-3 | 34 | 19,664.4 | 1 | 5,398.4 | 5,398.4 | 공동개발 (지정) | B-3 | 34 | 19,664.4 | 1 | 5,398.4 | 5,398.4 | 공동개발 (지정) |
| | | | 2 | 14,266.0 | 14,266.0 | | | | | 2 | 14,266.0 | 14,266.0 | |
| B-3 | 39 | 20,181.7 | 1 | 1,385.4 | 1,385.4 | 공동개발 (지정) | B-3 | 39 | 20,181.7 | 1 | 1,385.4 | 1,385.4 | 공동개발 (지정) |
| | | | 2 | 5,115.3 | 5,115.3 | | | | | 2 | 5,115.3 | 5,115.3 | |
| | | | 3 | 3,511.0 | 3,511.0 | | | | | 3 | 3,511.0 | 3,511.0 | |
| | | | 4 | 1,563.2 | 1,563.2 | | | | | 4 | 1,563.2 | 1,563.2 | |
| | | | 5 | 5,892.9 | 5,892.9 | | | | | 5 | 5,892.9 | 5,892.9 | |
| 6 | 2,713.9 | 2,713.9 | 6 | 2,713.9 | 2,713.9 | | | | | | | | |
| B-3 | 51-1 | 26,687.0 | 1 | 6,721.3 | 6,721.3 | 공동개발 (지정) | B-3 | 51-1 | 26,687.0 | 1 | 6,721.3 | 6,721.3 | 공동개발 (지정) |
| | | | 2 | 19,965.7 | 19,965.7 | | | | | 2 | 19,965.7 | 19,965.7 | |

⑥ 공동주택(B-4)용지(변경없음)

| 기 정 | | | | | | 변 경 | | | | | | | |
|-------|--------|----------|-----|-----------|----------|-------|--------|---------|-----------|----|----------|-----------|-----------|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비 고 | |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 | | | 획지 면적 (㎡) | 위치 |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B-4 | 44-1 | 27,301.1 | 1 | 27,301.1 | 27,301.1 | | B-4 | 44-1 | 27,301.1 | 1 | 27,301.1 | 27,301.1 | |

⑦ 일반상업(C-1)용지(변경없음)

| 기 정 | | | | | | 변 경 | | | | | | | |
|-------|--------|---------|-----|-----------|-------|-------|--------|---------|-----------|----|-------|-----------|-----------|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비 고 | |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 | | | 획지 면적 (㎡) | 위치 |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C-1 | 28 | 1,977.6 | 1 | 401.8 | 401.8 | | C-1 | 28 | 1,977.6 | 1 | 401.8 | 401.8 | |
| | | | 2 | 407.7 | 407.7 | | | | | 2 | 407.7 | 407.7 | |
| | | | 3 | 492.8 | 492.8 | | | | | 3 | 492.8 | 492.8 | |
| | | | 4 | 346.4 | 346.4 | | | | | 4 | 346.4 | 346.4 | |
| | | | 5 | 328.9 | 328.9 | | | | | 5 | 328.9 | 328.9 | |

| 기 정 | | | | | | 변 경 | | | | | | | |
|-------|--------|---------|-----|-----------|-----------|-----|-------|--------|---------|-----|-----------|-----------|-----|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C-1 | 29 | 2842.1 | 1 | 300.9 | 300.9 | | C-1 | 29 | 2842.1 | 1 | 300.9 | 300.9 | |
| | | | 2 | 336.7 | 336.7 | | | | | 2 | 336.7 | 336.7 | |
| | | | 8 | 344.6 | 344.6 | | | | | 8 | 344.6 | 344.6 | |
| | | | 3 | 503.1 | 503.1 | | | | | 3 | 503.1 | 503.1 | |
| | | | 4 | 397.4 | 397.4 | | | | | 4 | 397.4 | 397.4 | |
| | | | 5 | 326.5 | 326.5 | | | | | 5 | 326.5 | 326.5 | |
| | | | 6 | 321.7 | 321.7 | | | | | 6 | 321.7 | 321.7 | |
| C-1 | 31 | 1656.5 | 1 | 368.1 | 368.1 | | C-1 | 31 | 1656.5 | 1 | 368.1 | 368.1 | |
| | | | 2 | 200.0 | 200.0 | | | | | 2 | 200.0 | 200.0 | |
| | | | 3 | 261.3 | 261.3 | | | | | 3 | 261.3 | 261.3 | |
| | | | 4 | 305.9 | 305.9 | | | | | 4 | 305.9 | 305.9 | |
| | | | 5 | 279.5 | 279.5 | | | | | 5 | 279.5 | 279.5 | |
| | | | 6 | 241.7 | 241.7 | | | | | 6 | 241.7 | 241.7 | |
| C-1 | 32 | 1125.5 | 1 | 451.0 | 451.0 | | C-1 | 32 | 1125.5 | 1 | 451.0 | 451.0 | |
| | | | 2 | 458.5 | 458.5 | | | | | 2 | 458.5 | 458.5 | |
| | | | 3 | 216.0 | 216.0 | | | | | 3 | 216.0 | 216.0 | |
| C-1 | 33 | 1038.9 | 1 | 331.8 | 331.8 | | C-1 | 33 | 1038.9 | 1 | 331.8 | 331.8 | |
| | | | 2 | 348.9 | 348.9 | | | | | 2 | 348.9 | 348.9 | |
| | | | 3 | 358.2 | 358.2 | | | | | 3 | 358.2 | 358.2 | |

⑧ 학교(D-1)용지(변경없음)

| 기 정 | | | | | | 변 경 | | | | | | | |
|-------|--------|----------|-----|-----------|-----------|-----|-------|--------|----------|-----|-----------|-----------|-----|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D-1 | 40-1 | 12,002.0 | 1 | 968.0 | 968.0 | | D-1 | 40-1 | 12,002.0 | 1 | 968.0 | 968.0 | |
| | | | 2 | 11,034.0 | 11,034.0 | | | | | 2 | 11,034.0 | 11,034.0 | |

⑨ 공공청사(D-2)용지(변경없음)

| 기 정 | | | | | | 변 경 | | | | | | | |
|-------|--------|---------|-----|-----------|-----------|-----|-------|--------|---------|-----|-----------|-----------|-----|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D-2 | 13-1 | 614.4 | 1 | 614.4 | 614.4 | | D-2 | 13-1 | 614.4 | 1 | 614.4 | 614.4 | |

⑩ 체육시설(D-3)용지(변경없음)

| 구분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위치 |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
|----|------|------|---------|-----|---------|---------|----------------------|
| 기정 | D-3 | 25 | 507.1 | 3-1 | 507.1 | 507.1 | 게이트볼장 |
| 기정 | D-3 | 30 | 1,951.5 | 1 | 1,951.5 | 1,951.5 | 복합체육관 (주차장1 중복결정) |

⑪ 사회복지시설(D-4)용지(변경없음)

| 기 정 | | | | | | | 변 경 | | | | | | |
|----------|----------|------------|-----|-----------------|-----------------|--------------|----------|-----------|------------|-----|-----------------|-----------------|--------------|
|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도면 표시 | 가 구 번호 | 면 적 (㎡) | 면 적 | | | 비 고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 | 위치 | 대지 면적 (㎡) | 획지 면적 (㎡) | |
| D-4 | 25 | 242.7 | 3-2 | 242.7 | 242.7 | 노인여가 복지시설 | D-4 | 25 | 242.7 | 3-2 | 242.7 | 242.7 | 노인여가 복지시설 |

⑫ 주차장(D-5)용지(변경없음)

| 구분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위치 |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
|----|------|------|---------|----|---------|---------|---------------|
| 기정 | D-5 | 30 | 1,951.5 | 1 | 1,951.5 | 1,951.5 | 체육시설2 중복결정 |

⑬ 획지의 합병 및 분할(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 에서 결정한 대지를 기본단위로 개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구단위계획상 필지분할가능선이 있는 대지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이며, 변경기준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소 분할가능면적 이상으로 함

| 용도지역 | 상업지역 | 주거지역 |
|-------------------|------|------|
| 불로지구 최소 분할가능면적 | 250㎡ | 110㎡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① 단독주택(A-1)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
| A-1 | 1~3, 6, 7-1, 8-1, 9~10, 11-1, 12-1, 14-1, 15-3, 17, 19-1, 21~25, 35-2, 36~37, 38-2 | 용도 | 허용용도 | · 별표1의 A-1의 허용용도 |
| | | | 불허용도 | · 별표1의 A-1의 불허용도 |
| | | 건 폐 율 | · 60% 이하 | |
| | | 용 적 률 | · 150% 이하 | |
| | | 높 이 | · 3층 이하 | |
| | | 형 태 | · 별표2의 A-1 | |
| | | 배 치 | · 별표3의 A-1 | |
| | | 색 채 | · 별표4의 A-1 | |
| | | 건 축 선 | · 중로3-90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6(10~15), 10(1-1~4), 11(4~8) · 중로3-93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37(8-14), 38-2(9~10) · 중로2-171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38-2(3~9) · 중로2-172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24(1~3-2), 21(5-2) · 중로1-121호선변 → 건축한계선 : 2m - 가구번호: 21(1~5-2) | |

주) ()는 획지번호임

② 단독주택(A-2)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
| A-2 | 7-3, 8-3, 11-2, 13-2, 14-2, 15-1, 15-4, 18, 19-2, 20, 26, 35-1, 38-1 | 용도 | 허용용도 | · 별표1의 A-2의 허용용도 |
| | | | 불허용도 | · 별표1의 A-2의 불허용도 |
| | | 건 폐 율 | · 60% 이하 | |
| | | 용 적 률 | · 150% 이하 | |
| | | 높 이 | · 5층 이하 | |
| | | 형 태 | · 별표2의 A-2 | |
| | | 배 치 | · 별표3의 A-2 | |
| | | 색 채 | · 별표4의 A-2 | |
| | | 건 축 선 | · 중로1-121호선변 → 건축한계선 : 2m - 가구번호: 20(1) · 중로2-171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38-1(1) · 중로2-172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35-1(1~4), 38-1(1~2) · 중로3-90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13-2(2) · 중로3-58호선변 → 건축한계선 : 2m - 가구번호: 13-2(2), 14-2(6~8), 15-4(14~15), 18(1-5), 19-2(3), 20(1~5) | |

주) ()는 획지번호임.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③ 공동주택(B-1)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
| B-1 | 41, 42, 47, 50-1 | 용도 | 허용용도 | · 별표1의 B-1의 허용용도 |
| | | | 불허용도 | · 별표1의 B-1의 불허용도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용 적 륜 | · 200% 이하 | |
| | | 높 이 | · 4층 이하 | |
| | | 형 태 | · 별표2의 B-1 | |
| | | 배 치 | · 별표3의 B-1 | |
| | | 색 채 | · 별표4의 B-1 | |
| | | 건 축 선 | · 중로2-172호선변 → 건축한계선 : 2m - 가구번호: 41(1) · 중로3-93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41(1~4), 42(1~3), 47(1~3), 50(1) | |

주) ()는 획지번호임.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④ 공동주택(B-2)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
| B-2 | 7-2, 8-2, 15-2 | 용도 | 허용용도 | · 별표1의 B-2의 허용용도 |
| | | | 불허용도 | · 별표1의 B-2의 불허용도 |
| | | 건 폐 율 | · 30% 이하 | |
| | | 용 적 륜 | · 190% 이하 (단, 15-2BL은 공동개발 이행시 200% 이하) | |
| | | 높 이 | · 10층 이하 | |
| | | 형 태 | · 별표2의 B-2 | |
| | | 배 치 | · 별표3의 B-2 | |
| | | 색 채 | · 별표4의 B-2 | |
| | | 건 축 선 | - | |

주) ()는 획지번호임.

⑤ 공동주택(B-3)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
| B-3 | 16, 34, 39, 51-1 | 용도 | 허용용도 | · 별표1의 B-3의 허용용도 |
| | | | 불허용도 | · 별표1의 B-3의 불허용도 |
| | | 건 폐 율 | · 50% 이하 | |
| | | 용 적 륜 | · 250% 이하(단, 16, 39BL은 220% 이하) | |
| | | 높 이 | · 20층 이하(단, 16, 39BL은 15층 이하) | |
| | | 형 태 | · 별표2의 B-3 | |
| | | 배 치 | · 별표3의 B-3 | |
| | | 색 채 | · 별표4의 B-3 | |
| | | 건 축 선 | · 중로1-121호선변 → 건축한계선 : 2m - 가구번호: 34(1), 51-1(1~2) · 중로2-171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39(1, 6) · 중로2-172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34(1~2), 39(1~3) · 중로3-93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34(1~2), 39(4~6), 51-1(1) · 대로3-58호선변 → 건축한계선 : 2m - 가구번호: 16(1) | |

주) ()는 획지번호임.

⑥ 공동주택(B-4)용지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
| B-4 | 44-1 | 용도 | 허용용도 | • 별표1의 B-4의 허용용도 |
| | | | 불허용도 | • 별표1의 B-4의 불허용도 |
| | | 건 폐 율 | • 15% 이하 | |
|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 | | 높 이 | • 27층 이하 | |
| | | 형 태 | • 별표2의 B-4 | |
| | | 배 치 | • 별표3의 B-4 | |
| | | 색 채 | • 별표4의 B-4 | |
| | | 건 축 선 | • 중로2-173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44-1(1-1~1-4) | |

주) ()는 획지번호임.

⑦ 일반상업(C-1)용지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C-1 | 28, 29, 31, 32, 33 | 용도 | 허용용도 | • 별표1의 C-1의 허용용도 |
| | | | 불허용도 | • 별표1의 C-1의 불허용도 |
| | | 건 폐 율 | • 70%이하 | |
| | | 용 적 율 | • 350%이하 | |
| | | 높 이 | • 5층 이하 | |
| | | 형 태 | • 별표2의 C-1 | |
| | | 배 치 | • 별표3의 C-1 | |
| | | 색 채 | • 별표4의 C-1 | |
| | | 건 축 선 | • 대로3-58호선변 → 건축한계선 : 2m - 가구번호 : 28(1~5), 32(1) • 중로2-171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32(1~3), 33(1~3) • 중로2-172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31(1~6) | |

주) ()는 획지번호임

⑧ 학교(D-1)용지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D-1 | 40-1 | 용도 | 허용용도 | •별표1의 D-1의 허용용도 |
| | | | 불허용도 | •별표1의 D-1의 불허용도 |
| | | 건 폐 율 | •20%이하 | |
| | | 용 적 율 | •100%이하 | |
| | | 높 이 | •5층이하 | |
| | | 형 태 | - | |
| | | 배 치 | - | |
| | | 색 채 | - | |
| | | 건축선 | •중로3-93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40-1(1~2) | |

주) ()는 획지번호임

⑨ 공공청사(D-2)용지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D-2 | 13-1 | 용도 | 허용용도 | •별표1의 D-2의 허용용도 |
| | | | 불허용도 | •별표1의 D-2의 불허용도 |
| | | 건 폐 율 | •50%이하 | |
| | | 용 적 율 | •200%이하 | |
| | | 높 이 | •4층이하 | |
| | | 형 태 | •별표2의 D-2 | |
| | | 배 치 | •별표3의 D-2 | |
| | | 색 채 | - | |
| | | 건축선 | •중로3-90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13-1(1) | |

주) ()는 획지번호임

⑩ 체육시설(D-3)용지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D-3 | 25(3-1), 30(1) | 용도 | 허용용도 | •별표1의 D-3의 허용용도 |
| | | | 불허용도 | •별표1의 D-3의 불허용도 |
| | | 건 폐 율 | •60%이하. (30(1)은 70%이하) | |
| | | 용 적 율 | •150%이하. (30(1)은 350%이하) | |
| | | 높 이 | •3층이하. (30(1)은 5층이하) | |
| | | 형 태 | •별표2의 D-3 | |
| | | 배 치 | - | |
| | | 색 채 | - | |
| | | 건 축 선 | - | |

주) ()는 획지번호임

⑪ 사회복지시설(D-4)용지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D-4 | 25(3-2) | 용도 | 허용용도 | •별표1의 D-4의 허용용도 |
| | | | 불허용도 | •별표1의 D-4의 불허용도 |
| | | 건 폐 율 | •60%이하 | |
| | | 용 적 율 | •150%이하 | |
| | | 높 이 | •3층이하 | |
| | | 형 태 | •별표2의 D-4 | |
| | | 배 치 | - | |
| | | 색 채 | - | |
| | | 건 축 선 | - | |

주) ()는 획지번호임

⑫ 주차장(D-5)용지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D-5 | 30(1) | 용도 | 허용용도 | •별표1의 D-5의 허용용도 |
| | | | 불허용도 | •별표1의 D-5의 불허용도 |
| | | 건 폐 율 | •70%이하 | |
| | | 용 적 율 | •350%이하 | |
| | | 높 이 | •5층이하 | |
| | | 형 태 | •별표2의 D-5 | |
| | | 배 치 | - | |
| | | 색 채 | - | |
| | | 건 축 선 | - | |

주) ()는 획지번호임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 A-1 A-2 | 1~3, 6, 7-1, 8-1, 9~10, 11-1, 12-1, 14-1, 15-3, 17, 19-1, 21~25, 35-2, 36~37, 38-2, 7-3, 8-3, 11-2, 13-2, 14-2, 15-1, 15-4, 18, 19-2, 20, 26, 35-1, 38-1 | •별표5의 A-1, A-2,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 |
| B-1 B-2 B-3 B-4 | 7-2, 8-2, 15-2, 16, 34, 39, 41, 42, 44-1, 47, 50-1, 51-1 | •별표5의 B-1, B-2, B-3, B-4 전면공지, 단지내 조경 | |
| C-1 | 28, 29, 31, 32, 33 | •별표5의 C-1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 |

② 차량 및 주차계획

|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 A-1 A-2 | 1~3, 6, 7-1, 8-1, 9~10, 11-1, 12-1, 14-1, 15-3, 17, 19-1, 21~25, 35-2, 36~37, 38-2, 7-3, 8-3, 11-2, 13-2, 14-2, 15-1, 15-4, 18, 19-2, 20, 26, 35-1, 38-1 | •별표6의 A-1, A-2 차량동선, 주차시설 | |
| B-1 B-2 B-3 B-4 | 7-2, 8-2, 15-2, 16, 34, 39, 41, 42, 44-1, 47, 50-1, 51-1 | •별표6의 B-1, B-2, B-3, B-4 차량동선, 주차시설 | |
| C-1 | 28, 29, 31, 32, 33 | •별표6의 C-1 차량동선, 주차시설 | |
| D-3, D-5 | 30(1) | •별표6의 D-5 차량동선, 주차시설 | |

③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 A-1 A-2 | 1~3, 6, 7-1, 8-1, 9~10, 11-1, 12-1, 14-1, 15-3, 17, 19-1, 21~25, 35-2, 36~37, 38-2, 7-3, 8-3, 11-2, 13-2, 14-2, 15-1, 15-4, 18, 19-2, 20, 26, 35-1, 38-1 | •별표7의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 용도로, 보차혼용도로 | |
| B-1 B-2 B-3 B-4 | 7-2, 8-2, 15-2, 16, 34, 39, 41, 42, 44-1, 47, 50-1, 51-1, | •별표7의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 용도로, 보차혼용도로 | |
| C-1 | 28, 29, 31, 32, 33 | •별표7의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 용도로, 보차혼용도로 | |

④ 단지내 시설물 배치 계획

|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 - | 블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단지내시설물 | •별표8의 가로시설물, 식재, 포장, 조명시설, 간 판 및 광고물, 기타사항 | |

⑤ 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계획

|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공 원 | 공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의 특성과 계절감을 고려한 수목 선정 •공간기능, 다양한 디자인의 옥외시설물을 조화롭게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에 기여하며, 주민의 다양한 정서수용을 위한 경 관 조성 •대상지 전역에 걸쳐 보행체계망을 구축하며, 이용권을 고려한 충분한 공원녹지 조성 •다양한 공간조성을 통하여 운동, 놀이, 휴식활동을 수용하며, 공원안의 조경은 총면적의 50%이상 이 되도록 조경면적 확보 •공원내 도로, 광장, 관리시설은 반드시 설치도록 함(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부지면적 : 60%이하(어린이공원) - 건폐율 : 5%이하 설치 | - |
| |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부속시설부지에는 각종 공해(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고, 재해의 방지와 경관의 시각적 효과를 살리며, 집중적인 녹화계획으로 녹음수, 화초류 등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성활엽교목과 침엽교목을 밀식하여 풍부한 수림대 조성 •소음차단 및 시각차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식재밀도를 높여 경관성 제 고 및 차폐성 강조 | |

⑥ 기타사항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군부대 협의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
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
된 것을 준용함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계획(변경없음)

| 구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 A-1 | • 단독주택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60 | 150 | 3층이하 |
| A-2 | • 단독주택 • 1, 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 유자시설 중 아동관련·노인 복지시설 | • 제1, 2종근린생활시설 중 변 전소, 정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등 주거환경 침해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 (정화구역에 한함) • 지하층 주거용도 | 60 | 200 | 5층이하 |
| B-1 | • 연립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50 | 200 | 4층이하 |
| B-2 | • 중층APT 및 부대 복리시설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30 | 190 | 10층이하 |
| B-3 | • 고층APT 및 부대 복리시설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30 | 220 | 15층이하 |
| | | | | 250 | 20층이하 |
| B-4 | • 고층APT 및 부대 복리시설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15 | 200 | 27층이하 |

주) B-1, B-2, B-3, B-4의 용도는 주택법을 적용하며, A-1, A-2, C-1, D-1, D-2, D-3, D-4, D-5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적용함

주) 1층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함

주) 12종 근린생활시설

주) A-2의 용도 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노인복지시설은 층별 제한 없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다, 라, 마 항목

가.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나. 휴게 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

다.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세탁소는 제외)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바, 자, 타 항목

가. 일반음식점, 기원

라.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타. 노래연습장

| 구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 | | 전층 불허용도 | 1층 불허용도 | | | |
| C-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단, 주택연면적이 8/10 이하로 타용도 복합시 가능)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시설 중 발전소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1층전면 입면처리 불량업종 (건축자재, 세탁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 의약품 도매업, 자동차 영업소 등) •숙박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사업 등 ※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 | 70 | 350 | 5층이하 |
| D-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와 그 부속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20 | 100 | 5층이하 |
| D-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이 요하는 시설과 그 부속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50 | 200 | 4층이하 |
| D-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 중 게이트볼장, 운동시설(3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60 70(30(1)) | 150 350(30(1)) | 3층이하, 5층이하 (30(1)) |
| D-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 1층지정용도: 관리소 - 2층지정용도: 노인여가복지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60 | 150 | 3층이하 |
| D-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에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지평식 설치시 허용용도 -관리사무소, 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허용용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80%이상이어야 함 -1, 2층 권장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외의 용도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종교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운동장, 오피스텔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70 | 350 | 5층이하 |

주) B-1, B-2, B-3, B-4의 용도는 주택법을 적용하며, A-1, A-2, C-1, D-1, D-2, D-3, D-4, D-5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적용함

[별표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계획 (변경없음)

| 용도 | 도면표시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
| 단독주택용지 | A-1 A-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설치토록 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경사지붕의 설치시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물탱크를 FRP조로 설치할 경우 조적 등으로 구획하여 보이지 않게 할 것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를 사용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근린생활시설의 1층 서터는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권장사항) |
| 공동주택용지 | B-1 B-2 B-3 B-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를 80m 이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 ㄴ”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 디자인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경사지붕의 설치시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옥상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녹화 및 주민에게 쉼터제공을 위해 수목 등 조경시설 설치(권장사항) |
| 상업용지 | C-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대지내의 건축물은 입면형태가 주변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1층전면의 서터는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마감 높이와 도로마감높이와의 차이는 15cm이하로 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제고 |
| 공공청사 | D-2 | |
| 체육시설 | D-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용도층의 외벽은 차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자연적으로 배출되도록 밀폐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 주변 가로망과 일관된 통경축이 형성되도록 하여 건축물 입지로 인한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사회복지시설 | D-4 | |
|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D-5 | |

[별표 3] 건축물 배치계획 (변경없음)

| 용도 | 도면표시 | 건축물의 배치 |
|--------|--------------------------|---|
| 단독주택용지 | A-1 A-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향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하여 배치(단, 기존건축물이 있는 블록의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 거리 적용할 수 있음)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12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m이상도로변(건축한계선 : 1m), 20m이상도로변(건축한계선 : 2m) •중로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 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담장 설치시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토록 함 •각각에 접한 대지내에서는 모든 도로에서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
| 공동주택용지 | B-1 B-2 B-3 B-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향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하여 배치(단, 기존건축물이 있는 블록의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 거리 적용할 수 있음) •광로변 교통소음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직각 배치 권장 •12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m이상도로변(건축한계선 : 1m), 20m이상도로변(건축한계선 : 2m)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형태로 배치토록 권장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장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 •중로이상 도로변에 교통소음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 설치 (5m 이상 : 환경영향평가 수용) •B-3(51-1블럭)의 건설사업 계획 수립시 인접산지와 스카이라인이 고려된 단지계획 수립토록 권장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시 조건부 동의 사항에 해당되는 C지역(39), D지역(34, 51)은 군부대 지정장소에 2개소대분(36동)의 전투진지를 구축방어력 보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부대 협의결과에 따른다 |
| 상업용지 | C-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2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 전면의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할 것 •20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이상도로변(건축한계선 : 2m)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 각 필지경계선으로부터 벽면한계선을 2m 지정하여 건축물 배치 |
| 공공청사 | D-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하며, 주차장 및 차량출입구 등 옥외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권장 •20m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 확보(건축한계선 : 2m) |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 시에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반영

[별표 4] 건축물 색채계획 (변경없음)

| 용도 | 도면표시 | 건축물의 색채 |
|--------------------|--------------------------|---|
| 단독주택용지 | A-1 A-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량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단 강조색은 가능) •옥탑 및 기타 부속 건축물은 녹색계통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색채 사용 권장 |
| 공동주택용지 | B-1 B-2 B-3 B-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 •주변의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베이지, 연한연두, 연한노랑 등의 부담없고 친근한 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 또는 구색인 하늘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옥탑 및 기타 부속 건축물 녹색계통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색채 사용 권장 |
| 상업용지 | C-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강조색은 가능)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
| 공공청사 | D-2 | - |
|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 공동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

※ 색채의 분류

-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 : 주조색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30%를 차지
 - 강조색 :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별표 5]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용도 | 도면표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
|--------|--------------------------|---------------|---|
| 단독주택용지 | A-1 A-2 | 전면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토록 유도 •전면공지에는 대지내로의 차량출입을 제외한 차량용시설(주차시설 등)과 보행 접근성을 저해하는 지하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전면공지(보도)에는 보행통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식수, 벤치 등의 휴게시설과 조명, 장식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 •전면공지의 포장은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장식포장, 인접한 보도 및 보행전용공간과 유사한 높이 및 재질을 유지하고 고저차 없이 연결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
| | | 대지안의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기준을 준용하여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서구의 구화인 국화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 |
| 공동주택용지 | B-1 B-2 B-3 B-4 | 전면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토록 유도 •전면공지에는 대지내로의 차량출입을 제외한 차량용시설(주차시설 등)과 보행 접근성을 저해하는 지하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전면공지(보도)에는 보행통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식수, 벤치 등의 휴게시설과 조명, 장식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 •전면공지의 포장은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장식포장, 인접한 보도 및 보행전용공간과 유사한 높이 및 재질을 유지하고 고저차 없이 연결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
| | | 단지내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아파트단지의 녹지면적은 30%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서구의 구화인 국화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 |
| 상업용지 | C-1 | 전면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토록 유도 •전면공지에는 대지내로의 차량출입을 제외한 차량용시설(주차시설 등)과 보행 접근성을 저해하는 지하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전면공지(보도)에는 보행통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식수, 벤치 등의 휴게시설과 조명, 장식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 •전면공지의 포장은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장식포장, 인접한 보도 및 보행전용공간과 유사한 높이 및 재질을 유지하고 고저차 없이 연결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
| | | 대지안의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기준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서구의 구화인 국화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 |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별표 6]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용도 | 도면표시 |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
|--------------|--------------------------|----------------|---|
| 단독주택용지 | A-1 A-2 | 차량동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측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등으로부터 10m이내 구간 (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 | | 주차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1면이상 확보) • 중로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획지 2개소당 1개소의 공동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며, 획지당 최소 3m이상 확보 • 대상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폭이 좁은 도로에 주차통로 설치 • 지하층에 가급적 주택용도를 건축하지 않도록하고 1층 주차 활용토록 권장함 |
| 공동주택용지 | B-1 B-2 B-3 B-4 | 차량동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차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행자 동선과의 상충 최소화 •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되도록 하며, 교차부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교차부의 30m 이내구간은 차량의 출입을 금지토록 함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T형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출입구가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와 30m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유도 |
| | | 주차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아파트 경비실은 출입자의 통행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유도 • 주차장 진출입구에는 야간에 인식도를 높이기 위하여 접지형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권장 |
| 상업용지 | C-1 | 차량동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주차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주차통로 설치(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이상 확보) • 20m폭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가각부의 경우 각 10m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통로주차램프 및 카엘리베이터의 시작부분은 도로와 접하는 건축선에서 최소 3m이상 이격 시켜서 대기주차에 의한 보행장해 방지 |
| | | 주차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 • 300㎡이하의 대지가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개 대지별로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출입구의 개소 축소 |
| 노외주차장 및 체육시설 | D-3 D-5 | 차량동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은 가각부로부터 4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 | | 주차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용도를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용도 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의 용도 부설주차장을 주차면면적의 6%이상 확보하여야 함 |

[별표 7]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도면표시 |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
|---|-------------|---|
| | 공공보행통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지간의 단차 및 경계선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통로개설 유도 • 공공보행통로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담장, 계단, 화단, 환기구 등 보행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구조물은 설치 금지 • 공동주택용지 도로변의 공공보행통로는 전면인도 및 전면공지와 동일하게 조성하고 인접대지의 공개공지나 공원이 있는 경우 연계 조성을 권장 • 공동주택용지내 보행동선은 대상지 전체의 동선체계와 연계되는 보행동선을 계획하며, 최소 폭원 이상의 보행동선을 유지하여 안전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함(폭 1.5m 이상) •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제공되는 면적에 대해 조정면적으로 인정 • 벽면한계선에 의해 지정된 공공보행통로의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
| A-1 A-2 B-1 B-2 B-3 B-4 C-1 | 보행자전용도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통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도로로서 독특한 장식, 포장패턴이나 상징적인 환경장치물 설치를 유도하여 장소성과 활동성을 제고 • 녹지조성보다는 포장 및 시설물 위주로 설치하고, 인접대지 내 공지 및 전면공지와 연계 조성 |
| | 보차혼용도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상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해 있는 획지에 차량진입을 위해 지정 • 보행자전용도로와 일체형으로 조성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도로단지내 도로, 공원 및 녹지계획에서 보도, 접근로의 기울기, 재질과 마감등은 편의시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전체가 연결되도록 조성 • 장애인, 노인의 사용빈도가 높은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단차는 1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함 |

[별표 8]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변경없음)

| 구 분 |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
|-----------|---|
| 가 로 시설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활동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토록 유도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여러 기능을 갖도록 설계 •형태 상호간에 통일성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하여 가로를 장식할 수 있도록 설계 |
| 식 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내의 미려한 가로경관을 위해 지역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별, 가로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및 도로용지 중 불용지 부분에 조경시설 설치 •인천시의 시목인 목백합 또는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떨어져 식재 •가로수의 식재간격 6~8m를 기준으로 함 •도로 교차점 주변은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를 위해 좌우 20m의 구간내에 수목의 식재 금지 |
| 포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보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 포장구획을 소단위로 하여 친근감 유지 - 재료는 소형고압블럭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 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것은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연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
| 조 명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조절 •보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 |
| 간 판 및 광고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에서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 가능한 건물의 1층 출입구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가로의 미관을 보호할 것을 적극 권장 •건물 상단부의 벽면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공공정보, 건물명 등 1개에 한하여 허용 •대상지 내의 건축물에는 옥상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의 목적 등이 인정되고 가로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 기 타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 관련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주변도로변에서 설비배관(도시가스)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권장함 |

| 구 분 | |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
|---------------------------------|--|---|
| 옥 외 광 고 물 계 획 | 표시 (설치)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밖으로 돌출금지 및 이동간판 사용금지 •옥상간판 부착금지, 돌출간판 부착금지 •가로형 간판은 건물정면 2층이하에 설치하되 1개의 업소에 1개의 간판만 허용 (곡각 지점에는 2개허용) •간판 재질 중 후렉스의 사용을 제한한다. (단, 로고 및 픽토그램에 한하여 허용) •가로형 간판의 경우 한 건물 내 같은 층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단, 입체형, 조각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건물정면에 부착하는 판류형 가로형 간판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폭의 80% 이내로 한다. (다만, 층간 벽면 높이가 1m미만인 경우엔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80cm 이하로 한다.) •창문이용광고물 및 세로형 간판부착금지 (다만, 세로형 간판의 경우에는 건물정면의 주 출입구 기둥양측 1곳에 한하여 건물명이나 비영리단체의 명칭에 한하여 비조명으로 설치하는 것만 허용) •개별지주이용 광고물 설치를 금하고, 1개 건물당 1개의 지주를 이용한 종합지주이용광고물 허용(종합사인보드) •현수막, 벽보부착은 일체금지 (다만, 지정 벽보판 게시대 설치만 허용)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네온 및 전광류 사용허용 •선전탑 아취 광고물은 사안에 따라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공연간판은 공연 등을 위한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하되 상업지역, 간선도로변 건축물 정면에 1개소만 추가로 허용 •공공시설 이용광고는 허용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방향에 접하는 쪽으로 광고물 표시금지 |
| | 색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의 색채중 적색류와 흑색류의 표시면적은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 |
| | 치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관 리조례에 따름 |
| | 수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소당 1개이하로 설치(곡각지점은 2개소 허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 |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대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 (단, 필지분할가능선이 있는 대지의 경우) |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9호)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 |
| •대지내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 |
| •통로의 성격·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 |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단, 공동개발 등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주1)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따름

주2)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5.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고시내용: 총 16건(건물번호 폐지 12건, 부여 4건)

| 연번 | 구분 | 위치 (변경전) | 도로명주소(변경후) | 고시일 | 부여(폐지) 사유 | 도로명 부여사유 |
|-------|----|-------------|------------|-----|--------------|----------|
| 붙임 참조 | |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하시거나 서구청 홈페이지(<https://www.seo.incheon.kr>)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6. 1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붙임 고시목록 1부.

| 연번 | 업무구분명 |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고시일자 | 이동사유 | 도로명 부여사유 |
|----|---------|-------------------------------------|----------------------------|----------|-----------------|--|
| 1 | 건물번호 폐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722번길 29 (연희동) | - | 20260615 | 멸실 | 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2 | 건물번호 폐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722번길 78 (연희동) | - | 20260615 | 멸실 | 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3 | 건물번호 폐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722번길 5-5 (연희동) | - | 20260615 | 멸실 | 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4 | 건물번호 폐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722번길 5 (연희동) | - | 20260615 | 멸실 | 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5 | 건물번호 폐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742 (연희동) | - | 20260615 | 멸실 |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헌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
| 6 | 건물번호 폐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752 (연희동) | - | 20260615 | 멸실 |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헌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
| 7 | 건물번호 폐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722번길 25 (연희동) | - | 20260615 | 멸실 | 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8 | 건물번호 폐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722번길 9 (연희동) | - | 20260615 | 멸실 | 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9 | 건물번호 폐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722번길 36 (연희동) | - | 20260615 | 멸실 | 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10 | 건물번호 폐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722번길 37 (연희동) | - | 20260615 | 멸실 | 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11 | 건물번호 폐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722번길 43 (연희동) | - | 20260615 | 멸실 | 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12 | 건물번호 폐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722번길 46 (연희동) | - | 20260615 | 멸실 | 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13 | 건물번호 부여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13, 212, 213-3, 213-4 |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216번길 52 (오류동) | 20260615 | 신축 |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14 | 건물번호 부여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991-22 | 인천광역시 서구 목지로 7 (불로동) | 20260615 | 신축 | 목지마을의 자연지명을 반영 |
| 15 | 건물번호 부여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B23블럭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7로 36 (불로동) | 20260615 | 신축 (건설현장사무소) | 신도시와 구도심, 환경과 사람의 이음에서 착안하여 명명 |
| 16 | 건물번호 부여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B22블럭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7로 8 (불로동) | 20260615 | 신축 (건설현장사무소) | 신도시와 구도심, 환경과 사람의 이음에서 착안하여 명명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경과조치 고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조례·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의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단구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해당 지역에서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관계 법령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2.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442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2. 개정이유

구정 운영의 연속성과 행정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사무 및 업무의 인계·인수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사무인계서 작성 및 업무 인계·인수 절차 마련 (안 제3조 ~ 안 제7조)
- 인계·인수 절차의 적정성 확보 (안 제8조 ~ 안 제11조)
- 조직개편 및 사후관리 규정 (안 제12조 ~ 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7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할곳 : 감사실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제2청사 13층 감사실
- 전 화 : ☎ (032)560-4074, FAX (032)560-2705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5.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나. 의견제출서(서식)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구정 운영의 연속성과 행정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사무 및 업무의 인계·인수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사무인계서 작성 및 업무 인계·인수 절차 마련 (안 제3조 ~ 안 제7조)
- 다. 인계·인수 절차의 적정성 확보 (안 제8조 ~ 안 제11조)
- 라. 조직개편 및 사후관리 규정 (안 제12조 ~ 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2.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② 이 규칙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사실상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사무의 인계 등)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국·소 및 소속기관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별표에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무인계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에 관한 각종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인계자는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같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인계·인수 사항)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속 추진 중인 업무의 진행상황
2. 주요 민원 및 분쟁 사항
3. 예산 집행 현황
4. 계약 및 협약 사항
5. 중요 기록물 및 전산자료
6.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직위별 인계사항) ① 실·국·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주요 현안 및 종합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 및 팀장은 소관 업무 전반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공무원은 담당 개별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실·국·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국·소에서 총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국·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

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무과에서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서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제10조(전산자료 및 기록물 인계) ① 인계자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전산자료, 행정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기록물을 정리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 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시정 또는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수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 등의 사무인계) ① 행정기구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전반에 대해

여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내에서 행정기구의 통폐합, 관장 업무의 변경 또는 관할 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관련 부서별로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업무의 성질상 이 규칙에서 정한 항목 또는 서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항목 및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확인 및 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사무인계인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구 청 장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 항 목 |
|---|
| 1. 사무인계인수서(표지) |
| 2. 주요사업추진현황 |
| 3. 주요지시사항목록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등) |
| 4. 보유기록물 목록 |
| 5. 재산조서 |
| 6. 물품내역 |
| 6-1. 관사비품 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 6-2. 사무용비품 목록 |
| 6-3. 도서 목록 |
| 7. 장비내역 |
| 7-1 행정장비목록 |
| 7-2 건설 기타장비목록 |
| 8. 차량 현황 |
| 9. 채권, 채무조서 |
| 9-1. 채권조서 |
| 9-2 채무조서 |
| 10. 세입세출예산현계표 |
| 10-1 세입예산현계표 |
| 10-2 세출예산현계표 |
| 10-3 일상경비현계표 |
| 10-4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 11.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
| 12.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
| 13. 적립금 조서 |
| 14.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
| 15. 보조금 수지현계표 |
| 1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별지 제1호 서식>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인천광역시 서구

○ ○ ○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 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 명 (인)

○ 인수자 : 직 위 성 명 (인)

○ 입회자 :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주요사업 추진현황

| 구 분 | 건 명 | 사업내용(개요) | 추진현황 | 추진부서 |
|-----|-----|----------|------|------|
| | | | | |

※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을 포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지시사항 목록

| 지 시 사 항 | | | 추진상황 | 주관부서 |
|--|-----|----------|------|------|
| 지시구분 (지 시 자) | 일 자 | 지시내용(요약) |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함. | | | | |
|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 | | |

<별지 제4호 서식>

보유기록물 목록

1. 총괄현황

| 부서별 | 합 계 | 영구 | 준영구 | 30년 | 10년 | 5년 | 3년 | 1년 |
|-----|-----|----|-----|-----|-----|----|----|----|
| 계 | | | | | | | | |
| | | | | | | | | |

1. 세부 현황

| 부서명 | 생산연도 | 종료연도 | 기록물철 제목 | 기록물건 제목 | 쪽수 | 기록물형태 | 보존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재 산 조 서

| 구 분 | | 토 지(천㎡) | | 건 물(천㎡) | | 기 타 | |
|----------|----------|---------|----|---------|----|-----|--|
| | | 필지 | 면적 | 동수 | 면적 | | |
| 합 계 | | | | | | | |
| 공유 재산 | 소 계 | | | | | | |
| | 행정 재산 | 계 | | | | | |
| | | 공용재산 | | | | | |
| | | 공공용재산 | | | | | |
| | | 기업용재산 | | | | | |
| | | 보존용재산 | | | | | |
| | 일 반 재 산 | | | | | | |
| 국유 재산 | 소 계 | | | | | | |
| | 행정 재산 | 계 | | | | | |
| | | 공용재산 | | | | | |
| | | 공공용재산 | | | | | |
| | | 기업용재산 | | | | | |
| | | 보존용재산 | | | | | |
| | 일 반 재 산 | | | | | | |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물 품 내 역

1. 관사비품 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2. 사무용비품 목록

* 별도 부서별 물품보유현황과 같음.

3. 도서 목록

| 소관별 | 총수량 | 비고 |
|-----|-----|----|
| 계 | | |
| | | |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장 비 내 역

1. 행정장비 목록

| 장비명 | 단위 | 규격 | 수량 | 상 태 | | | 비고 |
|-----|----|----|----|-----|----|------|----|
| | | | | 신품 | 중고 | 사용불가 | |
| | | | | | | | |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물품보유현황(장비대장)과 같음.

2. 건설 기타장비 목록

| 장비명 | 단위 | 규격 | 수량 | 상 태 | | | 비고 |
|-----|----|----|----|-----|----|------|----|
| | | | | 신품 | 중고 | 사용불가 | |
| | | | | | | | |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물품보유현황(장비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차 량 현 황

| 부서별 | 차 종 | 차량번호 | 취득일자 | 사용연료 | 사용자 | 비 고 |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채 권 · 채 무 조 서

1. 채권조서

| 부 서 별 | 건 명 | 채 권 | | | | 채 무 자 |
|-------|-----|-----|-------|------|------------|-------|
| | | 금 액 | 발 생 일 | 소멸일자 | 목적또는사유(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2. 채무조서

| 일자별 | 건 명 | 목 적 또 는 용 도 | 기 채 | | | 기상환액 (이자/ 원금) | 잔 액 (이자/ 원금) | 채 권자 | 주 관부서 |
|-----|-----|-------------------|-----|-------------|------|---------------------|--------------------|------|-------|
| | | | 금 액 | 이율 및 조 건 | 상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1. 세입예산현계표

| 회 계 별 | 세입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과오반납액 | 불납결손액 | 비 고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2. 세출예산현계표

| 회 계 별 | 예산현액 | 수 입 액 (교부액) ① | 지출액 ② | 잔 액 ① - 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잔고증명 별첨

3. 일상경비현계표

| 교부액 ① | 지출액 ② | 잔 액 ① - ② | 비 고 |
|-------|----------|--------------|-----|
| | | | |
| | | | |

※ 잔고증명 별첨

4.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소 관 별 | 회 계 별 | 예산배정액 | 자금교부액 | 지 출 액 | 예산잔액 | 자금잔액 | 비 고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구 분 | 수 입 | 지 출 | 잔 액 | 예금종류 | 비 고 |
|-----|-----|-----|-----|------|-----|
| 계 | | | | | |
| | | | | | |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 예 산 과 목 | | | 예 산 액 | 교 부 | | 집 행 | | 비 고 |
|---------|----|---|-------|-----|------|-----|-----|-----|
| 항 | 세항 | 목 | | 금액 | 미수령액 | 금 액 | 잔 액 | |
|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 서식>

적립금조사서

| 종 별 | 금 액 | 기 간 | 이 율 | 통장번호 | 예 금 주 | 예치은행 | 관리부서 |
|-----|-----|-----|-----|------|-------|------|------|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 권 종 별 | 수 입 | | 불 출 | | 잔 고 | | 수입목적 | 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
|-------|-----|-----|-----|-----|-----|-----|------|----------------|
| | 매 수 | 금 액 | 매 수 | 금 액 | 매 수 | 금 액 | | |
| | | | | | | | | |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단위 : 백만원)

| 보조 부서별 | 건명 (내역) | 예산액 | 교부액 | 미수령액 | 집행액 (보조액) | 잔액 | 정산액 | 비고 |
|-----------|------------|-----|-----|------|--------------|----|-----|----|
|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 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사무인계) ① 법 제119조에 따라 퇴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 1.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
- 2.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사무를 인계 받은 경우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4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에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 등 재산 목록
- 3. 예산·회계의 수지현재표(收支現計表: 수입·지출의 현재 상태를 계산한 표) 및 잔액증명
- 4. 기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66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4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제67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5조 각 호의 사항 중 사무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또는 대장으로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제68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분류시스템의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

| 제출자 | 규칙 개정안 | 찬·반 여부 및 사유 의견제출 |
|-----|-------------|---------------------|
| ○○○ | ○ ○ ○ | ○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491호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공람공고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경미한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6. 15. ~ 2026. 6. 29. (14일간)
2. 공람장소: 서구청 주택과(서구 서곶로 323, 3층),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서구 서달로123번안길 19, 2층)
3. 공람내용: 조합설립인가(경미한 변경) 관계서류
4. 의견제출: 공람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신청내용
 - (1) 사업명칭: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4-2번지 외 30필지
 - (3) 구역면적: 8,052.1m²
 -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 (5) 조합원수: 276명

(6) 사업시행자: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대웅)

(7) 변경내용: 조합장의 주소 이전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49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의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 6.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가. 공람기간: 2026. 6. 15. ~ 2026. 6. 29. (14일간)
- 나. 공람사유: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 다. 공람장소: 서구청 주택과(서구 서곶로 323, 3층)
- 라. 공람내용: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 리. 기타사항: 본 공람공고에서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 관계도서: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 사. 의견제출: 공람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 또는 E-mail(dhrhdns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람 내용은 최종 결정 사항이 아니며, 심의 등 절차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1. 관리계획(안) 1부.
- 2. 관련도면 1부.
-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서 1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1.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구분 | 관리지역 명칭 | 위 치 | 면적(m ²) |
|----|-------------------------------|------------------|---------------------|
| 기정 |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 | 36,689 |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변경)

1) 토지이용 기본계획(안)

-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규모(2만m² 미만)를 기준으로 사업구역을 구획하고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통합계획(4만m² 미만)

2) 정비기반시설 설치 기본계획(안)

| 구분 | 계 획 | 비고 |
|--------|--|------------------------|
| 정비기반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로3-1호선(L=23m, B=5) ◦ 소로3-A호선(L=90m, B=6) | ◦ 변경없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공원(A=4,200m²) → 어린이공원(A=6,000m²) 신설 | ◦ 계획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원면적 확보 |

3) 교통처리 기본계획(안)

- 변경없음

4)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기본계획

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구분 | 면 적(m ²) | | | 구성비 | 비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36,689 | - | 36,689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6,689 | 감)36,689 | - | - | - |
| 준주거지역 | - | 증)36,689 | 36,689 | 100.0 | |

○ 변경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 면적 (㎡)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 | | 기정 | 변경 | | | |
| - |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준주거 지역 | 36,689 | 500%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로 인한 용도지역 상향 |

나)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기본계획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름

다)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안)

- 공공임대주택 총 537호 공급 예정

| 구분 | 사업구역 | 위치 | 전체세대수 | 임대주택 세대수 |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 비고 |
|----|--------------------------------|---------------|-------|-------------|------------------|--------|
| 기정 |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가로주택 정비사업) | 가정동 5-92번지 일원 | 1,396 | 232 | LH(한국토지 주택공사) | 16.62% |
| 변경 |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가로주택 정비사업) | 가정동 5-92번지 일원 | 1,946 | 537 | LH(한국토지 주택공사) | 27.60% |

※ 상기의 임대주택 관련 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관리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며, 전체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붙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서

| | | | |
|--------|-----------------|-----|--|
| 성 명 | (인) | 연락처 | |
| 거주지 주소 | | | |
| 의 건 | | | |
| 제출일 | 2026년 월 일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49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6.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녹청자 박물관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은 박물관 직원에 대해 공무원 인사 및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운영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위탁 운영 현실에 맞게 인사 및 복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박물관 직원 직급 상한이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장기근속 직원의 승진 기회가 부족한 문제가 있어, 직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조직의 사기 진작 및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그 밖에 경미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정비(안 제4조)

- 박물관 직원 인사·복무 준용규정 정비(안 제10조, 안 제15조)
- 박물관 직원 직급 상한 상향 조정 및 사무원 보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5935,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녹청자 박물관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은 박물관 직원에 대해 공무원 인사 및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운영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위탁 운영 현실에 맞게 인사 및 복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박물관 직원 직급 상한이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장기근속 직원의 승진 기회가 부족한 문제가 있어, 직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조직의 사기 진작 및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그 밖에 경미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정비(안 제4조)
- 박물관 직원 인사·복무 준용규정 정비(안 제10조, 안 제15조)
- 박물관 직원 직급 상한 상향 조정 및 사무원 보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직원의 인사)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제1항 중 “지급일로 한다”를 “지급일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7급부터 6급”을 “6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급”을 “6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급”을 “7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원의 보수는 수탁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직원의 복무)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 3. (생략)</p> <p>4. <u>박물관 직원의 인사(승진 및 승급)등에 관한 사항</u></p> <p>5. (생략)</p> | <p>제4조(운영위원회 기능)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4. (현행 제5호와 같음)</p> |
| <p>제10조(직원의 임용, 승진, 승급 등) ① <u>직원은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u></p> <p>② <u>직원은 수탁자의 장이 구청장의 승인 거쳐 임용, 승진, 승급한다.</u></p> <p>③ <u>박물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u></p> | <p>제10조(직원의 인사) 「<u>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p> |
| <p>제14조(보수) ① <u>박물관 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u></p> <p>② <u>박물관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직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년 1호봉</u></p> | <p>제14조(보수) ① ----- ----- <u>지급일을 준용한다.</u></p> <p>② ----- ----- ----- -----</p> |

| | |
|--|---|
| <p>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학예연구실장 : <u>7급부터 6급</u> 3. 학예연구사 : 8급부터 <u>7급</u>까지 4. 선임사무원 : 9급부터 <u>8급</u>까지 5. 사 무 원 : <u>공무직</u> <p>③ (생 략) <u><신 설></u></p> <p>④ (생 략) <u>제15조(복무) 박물관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정치적 행위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u></p> |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6급</u> 3. ----- <u>6급</u>----- 4. ----- <u>7급</u>----- 5. ----- <u>무기계약직</u>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원의 보수는 수탁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u></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제15조(직원의 복무)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u></p> |
|--|---|